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2호

BUDGET AND POLICY

# 일본의 지역 중심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2009. 4

박인화 · 김봉주
서세욱 · 조혜정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2호

# 일본의 지역 중심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2009. 4

박인화 김봉주
서세욱 조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발 간 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2009년 4월 21일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 목 차

**요 약 / 1**

**I. 총론 및 시사점 / 9**

1. 분석 배경 및 목적 ····· 9
2. 「일자리 추경안」의 핵심 과제 ····· 11
3. 일본의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 14

**II. 우리나라의 일자리대책 현황 / 19**

1. 재정 현황 : 2009년도 제1회 추경안 ····· 19
   가. 총 괄 ····· 19
   나. 회계별 편성내역 ····· 21
   다. 노동부 소관 추경안 ····· 23
2. 「희망근로 프로젝트」 개요와 과제 ····· 25

**III. 일본의 고용대책과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 / 29**

1. 일본의 경제위기 대책 ····· 29
2. 일본의 고용대책 현황 ····· 31
3.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의 설치 ····· 34

**IV. 일본의 고용대책사업 주요사례 / 39**

1. 수발·육아·의료 ····· 39
2. 농림 수산업 ····· 54
3. 환경 저탄소 ····· 67
4. 교육 청년 지원 ····· 82
5. 관광진흥 지역산업 ····· 93
6. 방송정보통신 ····· 105
7. 정주외국인에 대한 일상지원 ····· 111
8. 방범 방화 ····· 118
9. 문서전자화 조사 등 행정사무, 정보제공 ····· 119
10. 기 타 ····· 133

부 록 : 일본의 고용대책 사례(206개 전체목록) / 137

참고문헌 / 141

# 일본의 고용대책 사업사례 목차


**1. 수발·육아·의료 / 39**

1 플렉시블 지원센터 ····· 39

2 지역의 다양한 육아지원 촉진사업 ····· 42

3 장애인 지역취로 촉진사업 ····· 44

4 병원 안내업무 등 의료서비스 및 환자서비스 향상사업 ····· 45

5 IC태그 활용 고령자 안전확보 ····· 46

6 지역육아 지원 고용촉진사업 ····· 47

7 재취업 희망 여성 취직지원사업 ····· 48

8 모자가정의 취업지원 강화사업 ····· 50

9 장애인 지역생활 지원사업 ····· 51

10 특정 건강진료 및 특정 보건지도 종사자 확대사업 ····· 53

**2. 농림 수산업 / 54**

1 도농교류 추진관련 신규고용 창출사업 ····· 54

2 바이오매스 유효활용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간벌재 수집·이용체제 정비사업 ····· 55

3 수출촉진 컨설팅 ····· 56

4 중소식품소매업자의 산지공동조달사업 ····· 57

5 사료용 쌀 생산 및 유통사업 지원사업 ····· 58

6 농상공(農商工) 연계 설비정비사업 ····· 59

7 국산원재료 공급력 강화 대책사업 ····· 60

8 신토불이 모델타운 사업 ····· 62

9 지역농산물 직판장 활용사업 ····· 63

10 친환경 모델타운 지원사업 ····· 64

11 농촌체험형 숙박시설 및 농가 레스토랑 ····· 65

## 3. 환경 저탄소 / 67


1 표류 및 표착 쓰레기 지역대책 지원사업 ····· 67
2 자연공원 청소사업 ····· 68
3 저탄소도시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 70
4 탄소상쇄 추진지원사업 ····· 72
5 숲 경관 재생사업 ····· 74
6 음식물쓰레기 에탄올화 모델사업 ····· 75
7 야생동물의 생활환경피해대책 ····· 76
8 외래종 방재를 통한 환경개선 ····· 78
9 생물다양성 온난화영향 조사사업 ····· 79
10 쓰레기 투기 감시 및 방치쓰레기 수거사업 ····· 80
11 환경보전사업자 투자촉진 사업 ····· 81


## 4. 교육 청년 지원 / 82


1 학교 서포터 ····· 82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 84
3 직업교육의 외부인재활용사업 ····· 85
4 대학의 지역공헌 및 교육기능 충실위한 업무지원사업 ····· 86
5 대학의 지역공헌사업 ····· 88
6 지역산학연계 직업교육지원 사업추진계획 ····· 89
7 자연체험환경 학습사업 ····· 91
8 차세대 폐기물처리작업원 육성사업 ····· 92


## 5. 관광진흥 지역산업 / 93


1 매력 있는 관광지개발사업 ····· 93
2 지역산업 판로확대 및 경쟁력강화 ····· 96
3 IC태그를 활용한 농산물 브랜드화 ····· 97
4 IC카드를 활용한 지역교류 촉진사업 ····· 98
5 웹 통신기술을 활용한 예술활동 촉진사업 ····· 99

6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사업 ····· 101
7 중소식품소매업자 출장형 판매 촉진 ····· 103
8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신상품 안테나샵 개설 ····· 104

**6. 방송정보통신 / 105**

1 지상디지털방송 대응 촉진사업 ····· 105
2 정보처리기술 관련 취업지원사업 ····· 106
3 학교교무 정보화를 통한 고용창출 ····· 108
4 제조업 종사노동자 및 실직자의 정보통신 업종전환지원 ····· 109

**7. 정주외국인에 대한 일상지원 / 111**

1 정주 외국인 자녀에 대한 일본어교육 등 지원 ····· 111
2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대학생활지원 보조사업 ····· 112
3 정주 외국인 자녀에 대한 일본어교육 등 지원 ····· 113
4 의료통역자 양성 및 확보사업 ····· 114
5 일본계 외국인 고용기업의 자녀교육지원 ····· 115
6 일본계 외국인 일본어 교육지원사업 ····· 116
7 일본계 외국인 일본어 교육 및 직업훈련지원사업 ····· 117

**8. 방범 방화 / 118**

1 통학로 등 방범활동 ····· 118

**9. 문서전자화 조사 등 행정사무, 정보제공 / 119**

1 건강질병대책 보급개발 및 상담사업 ····· 119
2 지자체의 아웃소싱 관련 고용취업 창출사업 ····· 121
3 공문서 기록관·도서관·박물관 소장문서 등 전자화 ····· 122
4 유적 출토품 역사적 자료·민속 문화재 정리 및 공개를 통한 지역문화 진흥사업 ····· 124
5 지자체 식품위생관련 업무 임시강화사업 ····· 126
6 장애인 시설보급 개발사업 ····· 127

7 지역정보정비사업 ····· 128
8 지리공간정보의 전자화 ····· 130
9 전국중소하천의 생태맵 작성사업 ····· 132

**10. 기 타 / 133**

1 위법광고물 제거 긴급지원 ····· 133
2 역주변 공터 등을 활용한 자전거 주차장 정비사업 ····· 134
3 농업용 저수지 긴급점검 ····· 135
4 농촌마을 배수시설 유지관리 및 감시업무 ····· 136

# 표 목차

[표 1] 2009년도 일자리 및 실업급여사업 추경안 ····· 20
[표 2] 2009년도 노동부 소관 추경안 ····· 23
[표 3] 지출 분야 및 재원별 추경안 ····· 24
[표 4]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개요 ····· 25
[표 5] 고용대책 내용 ····· 32
[표 6] 2008년도「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교부지역과 사업내역 ····· 36

# 그림 목차

[그림 1] 일본「3단계 경기위기 대책」개요 ····· 30
[그림 2] 사업집행 개요 ····· 34

# 요 약

## 1. 분석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2009□□ □□□□ □□□□□□□, □□□□□ □□□□□□□□ □□□ □□□□ □□□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 □□(2009. 3)□□□

○ 추경안은 세입결손 보전 11.2조원, 세출증액 17.7조원이 반영(변동 총액 28.9조원)되었으며, 총지출은 본예산대비 6.3% 증액된 302.3조원 규모

❑ □□□□□ □□□□ **실업급여 확대 및 일자리 예산 증액분**□ □□□□□ □□ □□ 2.2□□, □□□□ □□□ □□ □□□□ 5,100□□, □□□□ □□□□ 2.8□□(□□□ □□□□□ □□□ 2.6□□, □□□□□□□ 1,800□□), □□·□□□ 1,600□□□□ **총 5조 6,600억원** □□□□

❑ □□□□□ □□□□ □□□□□ □□□□ □□□ □□□□ **'희망근로 프로젝트'(국비와 지방비 총 2.6조원)**□□, □□□□□□□□ □□□□□ **공공근로사업 종류**□□ □□□ □□□ '□□□□ □□□' □□□ □□, □□□□ □□□□□ □□□□ **기초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 □□□ □□□□ □□□□ □□□

❑ □□□ □□□□□ □□ □□□□□ □□, **2009년도 제1회 추경안의 일자리사업** □ □□□□□ □□, **일본 고용대책**□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 □□□ □□ □ □□□□ □□, □□ **「고용대책 사례」** □ □□□□ □□ □□ □□ **73개 사례를 가려 뽑아 사업내용, 운영방식 등의 정보를 소개**□□□□, □□□□□ □□□□ **일자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사점**□ □□□□ □□

## 2. 「일자리 추경안」의 핵심 과제

❑ **첫째**, □□□□ □□□□ □□□(5□□ 6,600□□)□ □□□□□ **예산 3.0조원, 기금(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기금) 2.6조원**□□, □□□□□□□ 54□46□□□ □□

- ○ **예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일자리 만들기에 지출
- ○ **기금: 실업급여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사업

❑ **둘째,** □□□□□□□□ **'희망근로 프로젝트'**□ □□ 1□ 9,950□□, □□□□ 5,655□□□□ □□□□, □□□□ □□□□□□□□□□ 6□□□□ □□□□□□□□ □□□□□□,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 □□□□ □□□□□ □□□□□□ □□ □□□□ □□□□□□

① 기초자치단체별로 **어떤 종류의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사회에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또한 이 사업이 일회성의 소모적 지출에 그치지 않고 **'괜찮은 일자리'로 이어져 주민생활에 기여**할 것인가?

- 외환위기 시 도입되었던 '공공근로사업'은 총 6조원을 소요하면서 5년간(1998~2002) 지속되었고, 이후 2004년경에 도입된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등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산림청 등 다수부처에서 계속사업으로 자리 잡음

② **취업애로계층이 밀집 거주하며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대적으로 큰 사업수요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을 원활히 조달하여 추경편성 취지를 구현하자면, 사전진단을 통해 특·광역시의 일부 자치구 등을 **'민생안정특구'(가칭)로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 국고보조율 적용** 필요

-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추경안에 도입된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부담총액의 30%를 차지하는 매우 비중 있는 사업
- 경기침체와 추경편성에 따라 악화되는 지방재정을 규모로 보면, 지방세수 감소 6.8조원, 지방교부세 감액 2.2조원,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부담 1.9조원으로 총 10.9조원 규모인데, 이 중 3조원만 중앙에서 지방채 인수로 보완
- '민생안정특구'는 노동부 추경안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과 유사한 접근임

③ 공공근로의 대가를 **현금과 소비쿠폰으로 반반씩 지급**하는데 따른 적법성과 효용성, 소비쿠폰 유통에 따른 비용의 적정성 및 소비쿠폰 할인방지 등의 비효율성 제거가 담보될 수 있는가?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09. 3. 24):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는 실업자에 대해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셋째,** □□□□ □□□ □□□ □□□□ □□□□□□ **사회서비스일자리**□□ □□□□ □□□□ □□□□ **2,879억원, 3.3만명 규모**□□, □□□ □□□□□ □□□□ '□□□ □□□□ □□□□' □□□□(2.6□□) □□□ 11.5%, □□□□□(55□□) □□□ 6.0%□□ □□□, **'단기 일자리'라도 시급한 현 여건이 과소 반영**□□ □□□ □□□

❑ □□□□□□□□□□ □□□□□□ □□□□□□ □□□ □□□□ □□□□, □□□ □□□□ □□□ □□□□□ □□□□□ □□□ □□□□□□ □□□□□□ □□□□□□ □□□□,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경안 규모가 불충분하다는 우려 제기**

-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13.8%에 불과**(2007년)하여, 일본 17.0%, 스웨덴 32.5%보다 낮으며, **OECD 평균(21.3%)보다 7.5%p 낮은 수준**
- **일본**의 고용대책사업 사례에서는 **수발, 의료, 고령자에 대한 보살핌 등의 사회서비스일자리**가 가장 우선순위 높은 고용창출 영역임
- 2005년 기준 **취업유발계수**(소비·투자 10억원 증가 시 전산업 취업자 증가수)를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29.9, 교육서비스 22.8**로 나타나, **전산업 평균(14.7)에 비해 1.5~2배 정도로 높음**

❑ □□□ **취업자 수 감소가 현저한 여성 특히, 20~30대 여성층 실업자**□□ □□ □□ □□□□ □□□□□□□□□□ □□□□ □□□ □□ □□□□□ □□□ □□

- 「2009. 3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19.5만명)의 76%(14.9만명)가 여성이며, 특히 20대와 30대 여성 취업자수 감소 심각

○ 20~30대 여성에게 적합한 보육·교육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육아지원촉진사업, 학교교육 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 개발을 통해 양적인 일자리 확대와 다양성 확보 필요

– 교육과학기술부 추경안의 「학습보조인턴교사」(신규, 478억원) 등에 반영된 인턴교사와 강사 수는 학교당 평균 1.4명에 불과(2008. 4월 기준, 11,222교)

❑ **넷째, 고용보험기금□□ □□□ □□□□ □□ □□□□ □□□□ □□□□(□□□□) □□ □□□□□ 2.1□□□□ □□ □□□□□, 2009□□□ 실업급여계정□□ 당기수지적자가 2.4조원□□ □□□ □□ □□□□, 2009년 말 누적적립금은 2.7조원(동 계정 2009 지출예상액의 51% 수준)으로 축소□□ □□□□**

○ 경기침체 지속 시에는 보험료 수입은 감소되는 반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임의가입이 허용될 경우 급여비 지출은 더욱 늘어나게 됨

○ 2009년 2월의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40만명, 지급액은 3103억원으로, 고용보험제도에 따라 실업급여가 도입(1996. 7)된 이래 월별통계로 가장 높음

## 3. 일본의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 □□□□□ □□□□□ □□□□ □□□ □□□□ □□□□□□ □□□ **「긴급고용·경제대책본부」**□ □□□□□ □□(2008. 12)□□,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여, 고용안정화를 도모한다"**□□ □□□□□ □□ □□□□□ □□

○ **후생노동성**의 「**새로운 고용대책**」(2008. 12)에서는 향후 3년간 고용안정화 대책 실시를 위해 예산 1조엔, 고용보험 1조엔의 재원확보 계획을 밝힘

○ 일본 정부가 경제위기대책으로 4. 10일 발표한 2009년도 추경안에서도 지난 3. 23일 결정된 「고용안정·창출 실현을 위한 노사정 합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고용대책에 1.9조엔(한화 26조원)의 예산 추가 편성[1)]

1) 기준 환율은 100엔당 1,347원 적용.

❑ □□□ □□□□□□□□ □□□□□ □□□□ □□□ **첫째, □□□□□□ □□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참고**□□ □□ □□□, 206□□ □□□□ □□□□ □□□□□ **「긴급고용대책 참고사례」**□□ □□□□□□ □□□

**둘째, □□□□□□□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을 설치(2008년 말, 2500억엔, 한화 3.4조원)**□□ **한시적으로 3년간(2009~2011년)** □□□ □□□□□□□□ □□□ **지원**□□ □□ **총 9,000억엔의 대책비 마련**

○ 광역자치단체는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고용창출사업 실시를 실효성 있게 지원

**셋째, 「고용보험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 □□□4. 1□□□□ □□□**가입조건의 완화**(1□□ □□□□□ 6□□□ □□), □□□□ □□□□□ □□ **실업급여일수 연장**(60□□),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인하**(1.2%□□□ 0.8%)□□ □□□□

[사업집행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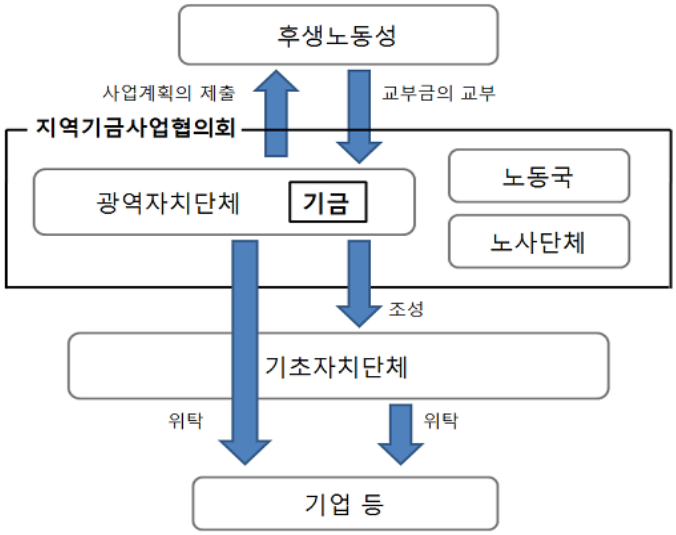


❑ **구체적으로 고용대책사업례**□□ □□□□□(□□)· □□· □료, 환□· □탄□□ □□ 10□ □야□□□ □□□□□□□□□ □□□□□□□□ □□□□□□□206□□□ □□□ □□

❑ **다음으로**, □□□□□□□ □□□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 **중앙정부**□□ □□□□□□□ □□□□□ □□□□□, **지방정부**□□ □□□□□□□ □□□ □□□□□□□ □□ □□ □□□□□□ □□□□□□□□□□□□ □□□ □□□□□□ □□□□□□□ □립□□□□ □□

○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 확충** 등: 취업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지역실정과 사업개발에 따라 지역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추진 지원

○ **「긴급고용창출사업」 창설**: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을 기본재원으로 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근로자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시적 고용 및 취업기회 창출

❑ □□□□□□□□변□□동□□□ □□, □□□□ □□□□□□ **적극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 **공공사업 등을 통한 직접적인 취업 창출 중심**□□□ 변□□□, □□□□□□□ □□□GDP□□1.1%(□□5.5□엔)□□ □□□□□□□ □□□□□□□ □

❑ **우리나라**□□□□ □□□□□□ □□문□□□ □□□□, **추경안**□□□ **일자리 및 고용 관련 대책(실업급여 등)으로 약 5조 6,600억원이 증액 편성**□□□□, □□□ □□□□, □□□□□□ □□□□□ □□□□□문□, □□□□□□ □□□□ 거□□□ □□□□ □□□ □□□□□ □□□ □□□ □□□ □□□ □□□□□ □루□□야□ □□ □□

❑ □□□□ **추경안의 국회 심의와 지역 중심의 일자리사업**□□ □□□□, □□□□ □□□□□ 현□, **저출산 고령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 미래□□, □□□ □□□ □□□□□ □□□□ □□□□□, □□□ □□□□□ □□□□□ □□□□□ □□□□□□ □□ □□□ □□

❑ **첫째,** □□□□ □□□□□ □□, □□□□ □□□□□□□□□□ □□□ **의료·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보육·수발·지역복지사업 등의 고용촉진책**□□ □□□□□□□ 강□

○ 보육·고령자서비스는 미래에도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 분야인데, 일본 정부는 206개 모델사업 중에서도 '개호 및 육아서비스'를 최우선 분야로 선정

○ '플렉시블(flexible) 지원센터' 설립: 매우 주목되는 사례로 고령자 수발과 아동보육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복지시설이며, 돌봄이 필요한 모든 연령층 이용

하며 지역의 수요에 맞게 각종 서비스 탄력적으로 제공

- 사업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며,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기업 등에 사업을 위탁하고 지역의 간호시설, 전문직양성학교가 하나가 되어 전체적으로 대응

○ 이 외, 육아지원 촉진사업, 의료 및 환자서비스 향상사업, 특정 건강진료 및 특정 보건지도종사자 확대사업 등

❑ **둘째,** □□□□ □□□□□□ 감□□□□□ □□□□□ □□□□ □□□ 낙후□□ □□□□□, □□□□□□ □□□ □양□□ □□□□□□ □□ □□□□□□□□□ □□□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강□

○ 학교서포터(기업퇴직자, 지역기술자 등을 수업실시나 교직원 보조로 활용), 중·고등학교 커리어교육지원(다양한 경력을 지닌 사회인을 교육보조자로 배치), 직업교육 보조교사로 외부인 활용(커리어컨설팅 등의 경력자를 보조교사로 활용), 대학의 지역공헌 업무지원(대학 도서관, 실험시설을 주민과 민간기업에 야간개방 등),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 **셋째, 녹색성장(green growth)** □□ □□□□동□□ □충□□ □□□ □탄□□□□ □□, □□□□□□□ **녹색일자리로 연계**□키□□ □□□ □□□ □□□ □□□□ □□□□

○ 저탄소도시 추진을 위한 녹색일자리(저탄소도시 추진위원회 가입도시에서 에코하우스 보급, 저탄소사회 만들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코투어, 산림정비 등), 탄소상쇄 추진사업지원(탄소배출 삭감 크레딧 구입, 주민과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삭감활동 지원), 숲 경관재생사업, 자연공원청소사업 등

❑ **넷째,** □□□□□□ **주민생활 안전, 지역산업 진흥** □□□ □□□ □무□ □□ □□□□ □□□□□ 강□□□

○ 지자체 식품위생업무 임시강화사업, 역주변 공터에 자전거주차장 정비사업, 전국 중소하천 생태맵 작성사업, 통학로 방범활동, 민속문화재 정리 등 지역문화 진흥사업, 지역개발 신상품 안테나샵 개설(지역상점가에 새롭게 고객을 모으는 장소), 매력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 도농 교류(green tourism)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사업 등

# I. 총론 및 시사점

## 1. 분석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양□□ □□□□ □□□□ □□□□ □□□□□□□ □□□□□ □□

○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들은 경제위기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면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 □□□□□ □□□□ 2009□□ □□□□ □□□□□□ □□□ □□□ □□□□□□ □□□□ □□□□□□□ □□□□ □□(2008. 11. 7)□□□ 2009□□□ □□□□ □□ · □□(2008. 12. 13)□□□□, □□□□□□□ □□□ □□□□□□ □□□ □□ 감□□□□□ 3□□□□ □□□ **'민생안정을 위한 2009년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2]□□ □□□□ □□□□□

○ 추경안은 세입결손 보전 11.2조원, 세출증액 17.7조원이 반영(변동 총액 28.9조원)되어 총지출 규모가 302.3조원[3]임

❑ □□□□□ □□□□□□ □□ 55□□□ □□□□□ □□□□□ □□(□□ 2.8□□)□□ □□□□□ □□□, □□□□□□ □□□□□ □□□□□□ '□□□□□ 120% □□□ □□능□□□'□□ □□□□□□□□ □□□□□ □□ 83□□□□ □□□□□(현□□ □□쿠폰)□□ 받□□ **'희망근로 프로젝트'(국비 2조원, 지방비 5,700억원, 40만개 일자리)**□□

---

2) 기획재정부, 「민생안정을 위한 28.9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보도자료, 2009. 3. 23.

3) 2009년도 본예산은 총지출 284.5조원임.

○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에 대한 결정을 기초자치단체(230개)[4]에 위임하고 있음

❑ □□□□□□ □□□□ □□□□ '**희망근로 프로젝트**'□□ □□□□ □□□□ □□□□□ **첫째**, "**어떤 종류의 공공근로사업을 시행**□□□ □□□□ □□□(decent jobs)□□ □□□□ □□□" **둘째**, "**재정력이 취약하며 취업애로계층이 밀집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조달**□□ □□□" □□□ □□□

○ 지난 외환위기 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도입(1998~2002년까지) 되었던 공공근로사업은 단순 취로사업에 편중되는 시행착오를 겪음[5]

○ 특·광역시는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참여자가 많을 것이며, 이들은 재정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밀집 거주하여 자치구 부담 가중

❑ □□□□ □□□□ □□,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고용·경제대책본부」**(□□□'□□□□□□□□')□□**내각부에 설치**(2008. 12. 24)□□□ □□□□□□ □□□

❑ □□□□ □□□□□□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여 고용안정화를 도모**□□□□ □□□□□□□ □□, □□□□□□□□□ □□□□ □□ □□□**「긴급고용대책 참고사례」 제공**(200□□□ □□, 2009. 2. 6)□□,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을 설치**□□□ □□ □□□□□□□ □질□□□□ □□□□□□ □□□ □□□□□□□

❑ □□□□ □□□□□□ □□ □□□□□□ □□, **2009년도 제1회 추경안의 일자리사업**□□ □□□□□□ □□, **일본 고용대책**□□**「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 □□□ □□□□ □□□□□□ □□, □□ **「고용대책 사례」** □□ □□□□□ □□ □□ □□ **73개 사례를 가려 뽑아 사업내용, 운영방식 등의 정보를 소개**□□□□, □□□□□□ □□□□□**일자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사점**□□ □□□□□ □□□

○ 특히, 신규 편성된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근로사업 개발 및 사업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

---

4) 2개 시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는 230개에 포함되지 않음.

5) 고영선 외, 「경제위기 10년: 평가와 과제」, 2007. 12.

## 2. 「일자리 추경안」의 핵심 과제

❑ 2009□ □□ □1□ □□□□□ □□ □□(17.7□□)□ □□ ‘□□득□ □□□□’ 4.2□□, ‘□□□□ □□ □□ □□□□’ 3.5□□, ‘□□□□□ □□ □□’ 4.5□□, ‘□□□□□ □□□’ 3.0□□, ‘녹색□□ □□ 미래□□ □□’ 2.5□□□□5□ □야□ 걸쳐 □□

❑ □ □□□□ **‘고용취약계층 지원 및 일자리 만들기와 직결되는 예산안’**(□□ ‘□□□□ □□□’)□ ‘□□득□ □□□□’ □ ‘□□□□ □□□ □□ □□□□’□ 2□ □야 □□□ □□□□ **총 5.7조원(국비 및 기금)으로 증액 편성됨**

- 실업급여 및 생업자금지원(2.2조원 증),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5,100억원 증), 일자리 만들기(2.8조원 증), 교육·훈련(1,600억원 증)

❑ **첫째**, □□□□ □□□□ □□□□□ □□□□□ □□, **예산 3.0조원, 기금(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기금) 2.6조원**□□, □□□□□□□ □□54□46□ □□□

- **예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일자리 만들기에 지출
- **기금: 실업급여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사업

❑ **둘째,** □□□□□□□□ **‘희망근로 프로젝트’**□ □□ 1□ 9,950□□, □□□□ 5,655□□□□ □□□□, □□□□ □□□□□□□□□ 6□□□□ □□□□□□□□ □□□□□□,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 □□□□ □□□□□ □□□□□□ □□□ □□□□ □□□□□□

- 기초자치단체별로 **어떤 종류의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사회에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또한 이 사업이 일회성의 소모적 지출에 그치지 않고 향후 **괜찮은 일자리로 이어져 주민생활에 기여**할 것인가?
  - 외환위기 시 도입되었던 공공근로사업은 총 6조원을 소요하면서 5년간(1998~2002) 지속되었고, 이후 2004년경에 도입된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등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산림청 등 다수부처에서 계속사업으로 자리 잡음

○ **취업애로계층이 밀집 거주하며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대적으로 큰 사업수요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을 원활히 조달하여 민생안정과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안의 취지를 구현하자면, 철저한 사전진단을 통해 특·광역시의 일부 자치구 등을 **'민생안정특구'(가칭)로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 국고보조율 적용** 필요

– 추경안에 도입된 총 4.5조원의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대응지방비는 1.9조원인데,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부담총액의 30%를 차지

– 경기침체와 추경편성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여건을 보면, 지방세수 감소 6.8조원, 지방교부세 감액 2.2조원[6],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1.9조원으로 총 10.9조원 규모인데, 이 중 3조원만 중앙에서 지방채 인수로 보완하므로 지방재정 여건이 보다 악화됨[7]

– '민생안정특구'는 노동부 추경안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과 유사한 접근임

○ 공공근로의 대가를 **현금과 소비쿠폰으로 반반씩 지급**하는데 따른 적법성과 효용성, 소비쿠폰 유통에 따른 비용의 적정성 및 소비쿠폰 할인방지 등의 비효율성 제거가 담보될 수 있겠는가?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09. 3. 24):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는 실업자에 대해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셋째,** □□□□ □□□ □□□ □□□□ □□□□□□**사회서비스일자리**□□ □□□□ □□□□ □□□□ **2,879억원, 3.3만명 규모**□□, □□□ □□□□□ □□□□ '□□□ □□□□ □□□□' □□□□(2.6□□) □□□ 11.5%, □□□□□(55□□) □□□ 6.0%□□ □□□□, **'단기 일자리'라도 시급한 현 여건이 과소 반영**□□ □□□ □□□

○ 추경안 반영 시 2009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은 총 1.5조원, 16만명 규모

---

6) 중앙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하여 3조원 규모(기존 0.6조원 → 3.6조원: 지방교부세 감액분 2.2조원, 지방재정 보완조치분 0.8조원)의 지방채를 추가 인수할 예정이지만, 향후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와 이자상환부담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7)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쟁점분석」, 2009. 4.

- □□□□□□□□□ □□□□□ □□□□□ □□□ □□□ □□□□, □□□ □□□□ □□ □□□□ □□□□ □□ □□□□□ □□□□□ □□□□□ □□□□,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경안 규모가 불충분하다는 우려 제기**[8)]

  -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13.8%에 불과**(2007년)하여, 일본 17.0%, 스웨덴 32.5%보다 낮으며, **OECD 평균(21.3%)보다 7.5%p 낮은 수준**

  - **일본**의 고용대책사업 사례에서는 **수발, 의료, 고령자에 대한 보살핌 등의 사회서비스일자리**가 가장 우선순위 높은 고용창출 영역임

  - 2005년 기준 **취업유발계수**(소비·투자 10억원 증가 시 전산업 취업자 증가수)[9)]를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29.9, 교육서비스 22.8**로 나타나, **전산업 평균(14.7)에 비해 1.5~2배 정도로 높음**

    - 특히, 사회복지·교육서비스는 서비스업 전체평균(10.1)에 비해 취업유발계수가 매우 높음

- □□ **취업자 수 감소가 현저한 여성 특히, 20~30대 여성층 실업자**□ □□ □ □□ □□□□□□□□ □□ □ □ □□□□ □□ □□

  - 2009. 3월 고용동향(통계청)에 의하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 19.5만명 중 76%인 14.9만명이 여성이며, 이 중에서도 20대 및 30대 여성 취업자수 감소가 각각 8.9만명, 14.1만명임

  - 20~30대 여성에게 적합한 보육·교육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육아지원촉진사업, 학교교육 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 개발을 통해 양적인 일자리 확대와 다양성 확보 필요

    - 교육과학기술부 추경안의 「학습보조인턴교사」(신규, 478억원) 등에 반영된 인턴교사와 강사 수는 학교당 평균 1.4명에 불과(2008. 4월 기준, 11,222교)

---

8) 국회예산정책처, 「전게서」.

9)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넷째, 고용보험기금□□ □□□ □□□□ □□ □□□□ □□□□ □□□□(□□□□) □□ □□□□□ 2.1□□□□□ □□□ □□□□□, 2009□□□□ 실업급여계정□□□ 당기수지적자가 2.4조원□□□ □□□□ □□□ □□□□, 2009년 말 누적적립금은 2.7조원(동 계정 2009 지출예상액의 51% 수준)으로 축소□□ □□□□**

○ 경기침체 지속 시에는 보험료 수입은 감소되는 반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 등이 이루어질 경우 급여비 지출은 더욱 늘어나, 당기수지는 더욱 악화 우려

○ 실업급여계정 당기수지 적자는 2007년에 1,069억원 규모로 처음 발생

○ 2009년 2월의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40만명, 지급액은 3103억원으로, 고용보험제도에 따라 실업급여가 도입(1996. 7)된 이래 월별통계로 가장 높음

## 3. 일본의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 □□□□□□ □□□□ □□□□□□□ □□□□□□ □□□□ □□□□ □□□□□□□ □□□ **「긴급고용·경제대책본부」**□ □□□□□□ □□(2008. 12. 24)□□,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여, 고용안정화를 도모한다"**□□ □□□□□□ □□□ □양□□ □□□□□□□ □□□

○ **후생노동성**이 2008. 12월 발표한 「**새로운 고용대책**」에서 향후 3년간 고용안정화 대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 1조엔, 고용보험 1조엔으로 총 2조엔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일본 정부가 경제위기대책으로 4. 10일 발표한 2009년도 추경안에서도 지난 3. 23일 결정된 「고용안정·창출 실현을 위한 노사정 합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고용대책에 1.9조엔(한화 26조원)의 예산 추가 편성[10]

10) 기준 환율은 100엔당 1,347원 적용.

❑ □□□□ □□□□□□□□ □□□□□□ □□□□ □□□ **첫째**, □□□□□□ □□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참고**□□ □□ □□□□, 206□□ □□□□□ □□□□□ □□□□ □□ **「긴급고용대책 참고사례」**□□ □□□□□□ □□□□

**둘째**, □□□□□□□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 설치(2500억엔, 한화 3.4조원) 등 9,000억엔의 대책비를 마련**□□, **광역자치단체**□□ □□□□□□□□ □□□□□ **기금을 조성**□□□□ □□□ □□□□□□□□ □□□□□□□ □□□□ □□□□ □□□ □□□[11]

**셋째, 「고용보험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 □□□4. 1□□□□ □□□**가입조건의 완화**(1□□ □□□□□ 6□□□ □□), □□□□ □□□□□ □□ **실업급여일수 연장**(60□□),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인하**(1.2%□□□ 0.8%)□□ □□□□

❑ □□□□ □□□□□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고용대책사업례**□□ □□□□□(□□)·□□·□료, □림□□□, 환□·□탄□□ □□ 10□ □야□□□ □□ □□□□□□□□ □□□□□□□ □□□□□□□ □□□ □□□□ □□□□

- ○ 고용대책사업례에는 **고령자 수발과 아동보육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복지시설인 '플렉시블 지원센터'**의 설립, 전통공예품의 후계자 육성지원 등과 같이 복지와 지역진흥 등 지방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시책 포함
- ○ 그러나 고용형태가 임시직에 머물러 정규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고, 자연공원과 해안 쓰레기 줍기, 풀베기 등 계속적 고용이 힘든 일시적 시책도 포함되어 보다 신중한 고용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 □□□□□ □□□□□□□□ □□□ □□□ □□ □□□□□□□ □□□□□ □□, **중앙정부**□□ □□□□ □□□□ □□□□□, **지방정부**□□ □□□□□□□ □□□□ □□□□□□□ □□ □□□ □□ □□□□□□□□□ □□□ □□□□□□□ □□□□□ □□□□□ □□□□

11) 김명중, "최근 일본기업의 고용조정과 정부대책에 대하여", 「국제노동브리프」, 제7권 제2호, 2009. 2.

○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의 확충** 등: 지역의 안정적 고용기회 창출을 위하여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생활대책 2,500억엔)을 설치함과 동시에 고용여건 및 사업실시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충할 방침

○ **「긴급고용창출사업」의 창설**: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을 기본적인 재원으로 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근로자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시적인 고용 및 취업기회를 창출하도록 함[12]

❑ □□□ □□□□ 변□ 동□□ □□, □□□ □□□□ **적극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 **공공사업 등을 통한 직접적인 취업 창출 중심**□□ 변□□□, □□□□□ □□ GDP □ 1.1%(□ 5.5□엔)□ □□□□□ □□□□□ □[13]

○ 일본은 세 차례의 긴급경제대책에서 **고용·생활대책을 주요대책으로 설정**

❑ **우리나라**□□□ □□□□ □□문□□ □□□□, **추경안**□□ **일자리 및 고용 관련 대책(실업급여 등)으로 약 5조 6,600억원이 증액 편성**□□□□, □□□ □□□□, □□□□ □□□ □□□□문□, □□□□ □□□ 거□□ □□□ □□ □□□□ □□ □□ □□ □□ □□□ □루□□야 □□ □□

❑ □□□ **추경안의 국회 심의와 향후 지역 중심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 □□□, □□□□□ □□ 당□ 현□, □□□ **저출산 고령사회의 진전, 저탄소 녹색성장** □ 미래□□□ □□ 변□, □□□ □□□□ □□ □□ □□□□□ □□□□, □□ □□□ □□□ □□□ □□□□ □ □□□ □□ □□□

❑ **첫째,** □□□ □□□ □□, □□□ □□□□□□□ □□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보육·수발·지역복지사업 등의 고용촉진책**□ □□□□□ 강□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보육 및 고령자 간호서비스는 미래에도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 분야인데, 일본 정부는 고용대책의 조기추진을 위해 200여개 모델사업을 권장하면서도 '개호 및 육아서비스'를 최우선 분야로 선정

12) 김명중, 「전게서」.
13) 이하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일본 고용대책의 변화와 시사점」(2009, 3)을 참고함.

- 단, 보육 및 고령자 간호서비스 부문은 중고령자와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크지만, 타 업종에 비해 저임금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여 근로자의 이동을 저해하는 고용 불일치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

○ '플렉시블(flexible) 지원센터' 설립: 매우 주목되는 사례로 고령자 수발과 아동보육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복지시설이며, 돌봄이 필요한 모든 연령층 이용하며 지역의 수요에 맞게 각종 서비스 탄력적으로 제공

- 사업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며,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기업 등에 사업을 위탁하고 지역의 간호시설, 전문직양성학교가 하나가 되어 전체적으로 대응

○ 이 외, 육아지원 촉진사업, 의료 및 환자서비스 향상사업, 특정 건강진료 및 특정 보건지도종사자 확대사업, 재취업희망여성 지원사업 등

❑ **둘째,** □□□□ □□□□□□□감□□□□□ □□□□□ □□□□ □□□낙후□□ □□□□□, □□□□□□□ □□□ □양□□ □□□□□□ □□ □□□□□□□□□□□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강□

○ 학교서포터(기업퇴직자, 지역기술자, 퇴직교원 등을 활용하여 수업실시나 교직원 보조), 중·고등학교 커리어교육 지원(다양한 경력을 지닌 사회인을 커리어교육 보조자로 지역교육위원회 등에 배치), 직업교육 보조교사로 외부인 활용(커리어컨설팅 등의 경력자를 보조교사로 학교에서 활용), 대학의 지역공헌 업무 지원(대학의 도서관, 실험시설을 주민과 민간기업에 야간개방 등),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 **셋째, 녹색성장(green growth)** □□ □□□□동□□ □충□□ □□□ □탄□□□□ □□, □□□□□□□□**녹색일자리로 연계**□키□□ □□□ □□□ □□□ □□□□ □□□□

○ 저탄소도시 추진을 위한 녹색일자리(저탄소도시 추진위원회 가입도시에서 에코하우스 보급, 저탄소사회 만들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코투어, 산림정비 등), 탄소상쇄 추진사업지원(탄소배출 삭감 크레딧 구입, 주민과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삭감활동 지원), 숲 경관재생사업, 자연공원청소사업 등

❑ **넷째, □□□□□□주민생활 안전, 지역산업 진흥 □□□□□무□□□□□□□□□강□□**

○ 지자체 식품위생업무 임시강화사업, 역주변 공터에 자전거주차장 정비사업, 전국 중소하천 생태맵 작성사업, 통학로 방범활동, 민속문화재 정리 등 지역문화 진흥사업, 지역개발 신상품 안테나샵 개설(지역상점가에 새롭게 고객을 모우는 장소), 매력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 도농 교류(green tourism)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사업, 농촌마을 배수시설 유지관리사업 등

# II. 우리나라의 일자리대책 현황

## 1. 재정 현황: 2009년도 제1회 추경안

### 가. 총 괄

❑ 2009□ □□ □1□□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 □□□□□ □□ □□ □□□ 휴·폐□□□ □□□□ 잃□□ **고용 취약계층**□ □득감□□ □□ □□ □□□□□□ □□□□□ □□ **빈곤층을 지원**□□ □□ □□□ 2□ □문□□ **총 7.7조원** □□□ □□□

○ 저소득층 생활안정(민생안정, 4.2조원 증액):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및 긴급생계보호(1.0조원, 85만가구) ▸ 주거·복지시설 개량 및 대출(6,500억원) ▸ **실업급여 증액(1.6조원, 38만명),** 생활안정자금 융자(5,700억원) ▸ 대학생 장학금 지원(2,700억원)

○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일자리, 3.5조원 증액)**:

▸ 고용유지지원금 확충(3,100억원, 14.3만명), 휴업근로자 및 교대제 지원(1,300억원, 8.4만명) 등 ▸ **희망근로 프로젝트(신규) 사회서비스일자리, 청년인턴제 등 일자리 만들기 사업(2.8조원, 55만명),** ▸ 실직자 및 대졸 미취업자 등 교육·훈련 사업(1,600억원, 33만명)

❑ □□□ 2□ □문(□□□□, □□□) □□□□ □□□□, □□□□ 휴·폐□□ □□ □□ □□□□ □□, □□·□□, □□□□□ □□□ □□ □□□ **고용문제와 직결되는 주요 사업비 증액분은 총 5.6조원** □□□□, □□ □□ **직접적인 일자리사업은 6개월간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 1] □□)

▸ □□□□□ □(2.2□□□ □) ▸ □□□□ □□□ □□ □□□□(5□□□□ □) ▸ □□□□ □□□(2.8□□□ □) ▸ □□·□□(1,600□□□ □)

[표 1] 2009년도 일자리 및 실업급여사업 추경안

(단위: 억원, 천명, %)

| | 2009 본예산 | | 추경안 | | 증가 | | 증가율 | |
|---|---|---|---|---|---|---|---|---|
| | 예산 | 인원 | 예산안 | 인원 | 예산 | 인원 | 예산 | 인원 |
| **합 계 (A+B)** | | | | | **56,563** | **1,500** | | |
| **A. 고용유지 취업기회 확대(소계)** | | | | | **34,899** | **1,108** | | |
| **1. 취업기회 확대** | | | | | **28,159** | **552** | | |
| • 직접 일자리 제공 | | | | | 26,350 | 552 | | |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 190 | 6 | 374 | 10 | 183 | 4 | 96.3 | 66.7 |
| **희망근로 프로젝트** | **-** | **-** | **19,950** | **400** | **19,950** | **400** | **순증** | **순증** |
| 사회서비스일자리 | 12,366 | 129 | 15,245 | 161 | 2,879 | 33 | 23.3 | 25.6 |
| 학습보조 인턴교사 | - | - | 478 | 25 | 478 | 25 | 순증 | 순증 |
| 조교 등 학내채용 지원 | | | 323 | 7 | 323 | 7 | 순증 | 순증 |
| 노인일자리 | 1,155 | 160 | 1,432 | 196 | 277 | 36 | 24.0 | 22.5 |
| 자활사업 | 2,899 | 48 | 3,359 | 58 | 460 | 10 | 15.9 | 20.8 |
| • 간접 고용유발 | | | | | 1,809 | - | | |
| 소하천 정비 | 1,564 | - | 1,901 | - | 337 | - | 21.6 | - |
| 재해위험지구 정비 | 2,887 | - | 3,293 | - | 406 | - | 14.1 | - |
| **2. 교육 및 훈련** | | | | | **1,621** | **328** | | |
| 대졸 미취업자 학내교육 | - | - | 150 | 75 | 150 | 75 | 순증 | 순증 |
| 청년층 뉴스타트 | 84 | 5 | 176 | 10 | 93 | 5 | 110.7 | 100.0 |
| 일용근로자 훈련 | - | - | 100 | 100 | 100 | 100 | 순증 | 순증 |
|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 985 | 8 | 1,199 | 16 | 213 | 8 | 21.6 | 100.0 |
| **3.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 | | | | **5,119** | **228** | | |
| 고용유지지원금 | 583 | 65 | 3,653 | 208 | 3,070 | 143 | 526.6 | 220.0 |
| 무급휴업근로자 지원 | - | - | 992 | 61 | 992 | 61 | 순증 | 순증 |
| 고용유지 교대제전환 | - | - | 182 | 17 | 182 | 17 | 순증 | 순증 |
| 취업장려수당 | - | - | 111 | 6 | 111 | 6 | 순증 | 순증 |
| 지역고용촉진지원 | - | - | 30 | 0.6 | 30 | 0.6 | 순증 | 순증 |
| **B. 실업급여생업자금지원(소계)** | | | | | **21,664** | **380** | | |
| **1. 실업급여사업** | **33,265** | **-** | **48,648** | **-** | **15,383** | **-** | **46.2** | |
| 실업급여(구직급여) | 29,272 | 1,023 | 37,922 | 1,326 | 8,656 | 303 | 29.6 | - |
| 연장급여 | 17 | - | 6,745 | 72 | 6,727 | - | 38,885.7 | - |
| 취업촉진수당 | 3,976 | - | 3,976 | - | - | - | - | |
| **2. 생업자금지원** | | | | | **5,664** | **-** | **390.1** | |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356 | - | 414 | - | 58 | - | 16.3 | - |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 270 | - | 3,000 | - | 2,730 | - | 1,000.1 | - |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 300 | - | 2,300 | - | 2,000 | - | 666.7 | - |
| 신규실업자 훈련 생계비 대부 | 240 | - | 308 | - | 68 | - | 28.3 | - |
|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 130 | - | 330 | - | 200 | - | 153.8 | - |

주: 세부사업은 주요사업이며, 일부사업의 예산과 인원은 파악되지 않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 나. 회계별 편성내역

### ❑ 일반회계□□ □□□□□ □□□ □□

○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산림청,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 **'희망근로 프로젝트'(신규, 소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명**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공익형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신규사업 2조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제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 **5.5조원→8.3조원(2.8조원 증), 55만개 증**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숲가꾸기, 아이돌보미 등 1.2조원→1.5조원(3천억원 증), 12.9만명→16.1만명(3.2만명 증)**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청년인턴 채용시 6개월간 임금의 70%까지 지원 985억원→1,629억원(644억원 증), 2.5만명→3.7만명(1.2만명 증)
- **취업장려수당**(신규):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자와 기업 간 희망임금 차액지원[14] 사업(111억원, 6천명)
- **학습보조 인턴교사**(신규, 478억원, 2.5만명), 대졸 미취업자 조교 채용(신규, 323억원, 7천명)
- **노인일자리** 확대 1,155억원→1,432억원(277억원 증), 16만명→19.5만명(3.5만명 증)

○ **교육·훈련**: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일용근로자 직무능력개발, 영세자영업자 및 신규 실업자 훈련,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976억원 규모 증액**[15]

14) 월 30만원, 12개월.

15) 교육·훈련사업은 일반회계 외에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645억원이 증액되어, 총 증액규모는 1,621억원임.

-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84억원→176억원, 5천명 증), 일용근로자 직무능력개발사업(신규 100억원), 영세자영업자 및 신규실업자 훈련(213억원 증), 대졸 미취업자 대학내 교육프로그램 개설 지원(203억원 증) 등

### ❑ 고용보험기금과 근로복지기금□□ □□□□ □□□ □□

○ 소관 부처: 노동부

○ 신청자 증가추세를 반영한 **실업급여(구직급여) 확대**: 2.9조원 → 4.6조원 (**1.7조원 증, 고용보험기금**), 102만명 → 140만명(**38만명 증**)

- 한편, 대량실업사태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6개월 내에서 실업급여 60일분 연장급여 지급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300억원→2,300억원(2,000억원 증, 근로복지기금),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 356억원→485억원(129억원 증,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기금)

○ **재직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1,734억원 → 6,852억원 (5,118억원 증, 고용보험기금), 22만개[16]**

- 근로자 고용유지 기업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17]**하여 **14.3만개 일자리 유지**: 583억원→3,653억원(3,070억원 증), 6.5만명→20.8만명
- **휴업근로자**에 평균임금의 40%까지 지급[18](992억원, 신규 6.1만명)
-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교대제 전환 시**, 감소된 임금 분담[19](182억원, 1.7만명 신규)

○ **교육·훈련**: 전직실업자 직업훈련, 고용유지 컨소시엄 훈련, 근로자능력개발 지원금 등 3,122억원→3,767억원(645억원 증, 고용보험기금)

---

16) 이 중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자와 기업 간 희망임금 차액지원사업(111억원, 6천명)은 일반회계임.

17) 근로자 감원 대신 휴업·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일부 지원 (1/2~2/3 → 2/3~3/4으로 상향 조정)

18) 평균임금의 40%와 실제 지급받는 휴업수당의 차액 지급.

19) 노·사·정 각각 1/3씩.

## 다. 노동부 소관 추경안

❑ □□□□□□ □□□□□□□ 노동□, □□□□□□, □□□□□□족□, □□□□□□술□, 환□□, 문□□□□□광□, □림청□ □□ □□□□□ □□□□□□□□ □□□□□□, □□□□□□ □□□□□□ □무□□□□ 노동□□□ □□ □□□□□

❑ □□□□□ □□□□ 노동□□ □□□□□[20] □□ □□□ 1□□ 3,768□□, 5□□ □□□ 13□□ 2,398□□□□□ □□ 14□□ 6,166□□□□ □□□, '□□□□□□'□□ □□□□□ □□ '9□91'□

○ 2009년 본예산 기준 시, 예산 : 기금은 10 : 90이므로, 추경안에서는 기금 사업비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짐

– 본예산: 예산 1조 1,369억원, 기금 10조 6,178억원, 총 11조 7,547억원

[표 2] 2009년도 노동부 소관 추경안

(단위: 억원)

| | 2009년 본예산(a) | 추경 증액분 (b) | 추경안 (a+b) | 증감(%) b/a |
|---|---|---|---|---|
| 합 계(일반지출 기준) | 117,547 | 28,619 | 146,166 | 24.3 |
| • 예산 | 11,369 | 2,399 | 13,768 | 21.1 |
| • 기금 | 106,178 | 26,220 | 132,398 | 24.7 |
| – 고용보험기금 | 56,562 | 21,157 | 77,719 | 37.4 |
| – 산재보험기금 | 43,728 | - | 43,728 | - |
| – 임금채권기금 | 2,257 | - | 2,257 | - |
|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 2,286 | - | 2,286 | - |
| – 근로복지기금 | 1,345 | 5,063 | 6,408 | 376.4 |

20)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은 제외.

❑ 노동□□ □□□ □□□□ □□□□□□ □□, □□□2,399□□, □□□2□□6,220□□ □□□ □□2□□8,616□□(□□□□ □□□24.3% □□)□□, □□□□ □□□□□□ □□□11□□ □□□□□

○ 기금사업비 증액: 고용보험 2조 1,157억원, 근로복지기금 5,063억원

❑ 2009□□□ 노동□□ □□□ □□□□ □□□□□ □문□□□ □□, □□□□ □□□□ □□ 4,892□□(17.1%), 청□□□□ 촉□□ 902□□(3.1%), □□□□□ □□□□ □□ □□ □□촉□□ 1,569□□(5.5%), □□□□□ □□□2□□239□□(70.7%), □타□ □□□□□ □□1,017□□(3.6%)□□□ □□□

○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증액 등 생활안정 지원이 노동부 추경안 총 증액분의 70.7% 차지

❑ □□□□□, 노동□□ □□□□□□ □□□□□□□ □□□ □□□□□□□□ □□□□ □□□□□□□□ □□□ □□□□ 노동□□□□□□ □□□□□□ 볼□ □□ □□□□, □□□ □□□□□□ □□□ □□□□ □□ □□□ □□□□ □□□□ □□□ □□□□□ □□□□ □□□□ □격히□ □□날□ □□□ □□□□ □□□□□□ □□□□야□ □□ □□□□

○ 실직자 수 증가로 인하여 고용보험기금 증액분이 2.1조원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기금의 실업급여계정에서는 당기수지적자가 2.4조원 규모로 급증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09년 말 누적적립금은 2.7조원(2009년 동 계정 지출예상액의 51%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표 3] 지출 분야 및 재원별 추경안**

(단위: 억원)

| 부 문 별 | 추경안 증액분 | | |
|---|---|---|---|
| | 일반회계 | 기 금 | 합 계 |
| 합 계 | 2,398 | 26,221 | 28,619 ( 17.1) |
| 일자리나누기 지원 | 30 | 4,862 | 4,892 ( 3.1) |
| 청년고용촉진 | 902 | - | 902 ( 5.5) |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취업촉진 | 779 | 790 | 1,569 ( 70.7) |
| 생활안정지원 | - | 20,239 | 20,239 ( 3.6) |
| 기타: 시설개선 등 | 687 | 330 | 1,017 (100.0) |

자료: 노동부.

## 2.「희망근로 프로젝트」 개요와 과제

### 가. 사업 개요

❑ □□□□□ □□□□ □□ □□ □□□□□ □□□□□□□□ ‘□□□□□ □□□□’(□□)□□, □□ 1□ 9,950□□, □□□□□ 5,655□□□ □□ 2□ 5,605□□□ □□□□, □□□□ □□ □□□□□□□□ □□□□ □□□□ □□□□□□□, □ 40□□(6□□□)□ □□□□□ □□□□□□□ □□□□

[표 4]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개요

| | |
|---|---|
| 예산규모 | 국고 1조 9,950억원, 지방비 5,655억원<br>⇒ 총 2조 5,605억원(인건비 2조 484억원, 재료비 5,091억원)<br>(국고보조율: 서울시 40~60%, 지방 70~90%, 평균 보조율 78%) |
| 지원대상 |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월 133만원)의 120%이고,<br>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근로능력층 40만가구 |
| 지원조건 | 각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br>(6개월간 한시적) |
| 급 여 | 월평균 83만~86만원(3.2만원[1] × 26~27일):<br>현금 50%, 전통시장 소비쿠폰 등 50% |
|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

주: 소비쿠폰 인센티브 800원 미포함.
자료: 행정안전부.

❑ □□□□□ □□□□□□ □□능□□ □□ □□□□□□ □□□□□ □□, □□□□ □□□□□ □□□□ □□□□□ ‘□□□□ □춤 □□’ □□□□

- ○ 대상: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월 133만원)의 120%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근로능력층 40만가구
- ○ 급여: 6개월간 월 83만원(현금 50%, 전통시장 소비쿠폰 등 50%)

○ 시행방법: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230개[21] 기초자치단체가 상향식(bottom-up)으로 사업계획을 수립(3~4월)하면, 행정안전부가 보조금 교부결정(5월)을 내리고, 이후 참가자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6~11월)하며, 12월에 정산

## 나. 주요 과제

❑ □□□□□ □□□□□□ □□□□□ □□□□ □□□□ □□□ □□□□□□□ □□움□□ 겪□□ □□□□□□□ □□□□□ □□□□□□, □□□□□□□□□ □움□□ □□□□ □□□□ 절□□□ □□□□□ 쿠폰□□□ □□□□□ □□□□□□□□ □□□□ □□넣□□□ □□□ □□□□, □□□□ 거□□□ □□□□□ 무엇□□□ 먼□□ □□□□□□□□□ □□□ □□□ □□□□□□□□ □□□□느냐□□ □□□□

❑ □□□□□ □□□□ 현□□□□□ □□□□□ □□□□ □□□□□□ 미□□□ □황□□, 동□ □□□□□□ □□□□□□ □□□□□□ □□□□ □□□ □□□□ □□□, □□□□ □□□□, □탄□□ 녹색□□□ □□ □□□□□□□ □□□ 변□□□ 감□□□ □□□□ □□□□ □□□□□□ □□□□□야□ □□ □□□□

○ 동 사업은 추경안 제출 시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기초자치단체(230개 시·군·구)에 위임하고 있음

❑ IMF 외환□□□ □, '□□문□□ □□□□ □□□ □□□□'(1988)□□□ '□□□□□□'□□ □□□□□던□ □□□□ □□, 1998 ~ 2002□까□□ 5□□□ □□ 6□□(□□□□ □□)□□ □□□□ □□□□였□□, □□□□ □순□□□□□□ □□□□□, 3D□□ □□□□□□ 동□ □□□□□ □□□□ 문□□□ □□□□□ □□□ □□□ □□□□□ 평□□□□ 못□였□□

21)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

❑ □□□□ □□□□ □□□, □□ □□□□□□□□ □□□□□□□ □속□□□ □□□□ □□□□□ □□□□ □□□□ □□□□ □□ □□□□ □□ □□□□□□ 20% □□ □료□ □□ □□[22](외환□□□ □□ □□□□□□□□□ 10%)□였□□, □□□□ □□□□□□□ □□□□□□ 거□□□□ □□□□□□□ □□□□ □□□□□ □□□□□□□□ □□□□□□□ □□□ □□□ □□□□□

❑ □히, □□ □□□□ □□□□□□□ □□□'□□□□ □춤□□'□□□ 6□□□□ □□□□□, □□□□□□ 걸□□ □□□□□ □거□ □□□□□□□□□ □□□□ 볼□ 때□ □□□ □능□□ □□□□ □□없□□, □□ □□□ □□평□□ □□□ □□□□□□□□ □□□□ □□□□ '□□□□ □□□'(decent job)□ □□·노동□야□ □□□□□□□ □□□□ □□□□ 검□□□□ □□□ □□□□□ □□□□□ □□□ 권□□ □□ □□□

❑ □□ 외□□, □□□□□ □□□□□□□ □□□□ □□□ □□□□ □□□ □□□□ □담(5,655□□)[23], □□□□□□ □□□□ □□쿠폰□ □□□□□ 문□ □□□ □□□□□, □□□ □□□□ □□□□ □□□□□□□□□ □□□□□□□ □□[24]□ □□□□□□□

○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대개 실직자와 휴폐업자 등 취업애로계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빈곤층이 밀집한 특·광역시의 재정력 취약 자치구에서는 사업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임

○ 시도별 실업률(2009. 3월 기준)[25]에 의하면, 인천, 서울, 광주, 대구, 울산, 부산[26]의 6개 특·광역시와 경기도에서는 실업률[27]이 전국 평균(4.0%)보다 최소 0.2%p에서 최대 1.0%p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2) 80%는 인건비임.

23) 2009년도 제1회 추경안의 국고보조사업 편성으로 인하여 늘어난 총 지방비 부담액 1.9조원의 약 30%를 차지함.

24) 이진우 김성은 김대철 외, "고용유지 및 일자리지원사업",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9. 4.

25) 통계청, 「2009년 3월 고용동향」, 2009. 4. 15.

26) 지역 순서는 실업률이 높은 순서임.

27)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

○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지만(2009. 3. 24),「근로기준법」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illegible]감[illegible]때, [illegible]·광[illegible]황[illegible]검[illegible]충족[illegible]킬[illegible], [illegible]‘[illegible]견’[illegible]동[illegible]차[illegible]율[illegible]야[illegible]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많이 발생하여 일자리사업 등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난 지역은 ‘민생안정특구’(가칭)로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 도입

- 노동부 소관 추경안에서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지역고용촉진지원금, 30억원, 신규)[28]인데, '민생안정특구'도 이와 유사한 접근임

28) 노동부,「2009년도 노동부 소관 추경안 설명자료」, 2009. 3.

# III. 일본의 고용대책과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

## 1. 일본의 경제위기 대책

❑ 미□□□ □융□□□□ □□□ □□□□ □□□□□□ 2008□ □□□□ □후□ □□□□ □□□ □□□□□□ □□□였□□, □□□□□□(IMF)□ □료[29]□ □□□□ 2009□□ □□□□□□□ 마□너□ 5.8%□ □□

❑ □□□□□ □□□□□ □□□□ 2009□□ □□□□ □□□□「3□□ □□□□□ □□」□ □립□였□□, □□ 75□엔□ □□□□□ □□([□림 1] □□)

- 「경제긴급종합대책」은 2008. 10. 16일에 성립된 2008년도 제1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대책
- 「생활대책」은 2009. 1. 27일에 성립된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대책
-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은 2009. 3. 27일 성립된 2009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대책
- 2008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서 11.5조엔,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서 27조엔, 그리고 2009년도 예산 37조엔 등 3단계에 걸쳐 총 75조엔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

29) 2009년 3월 13일 발표함.

[그림 1] 일본「3단계 경기위기 대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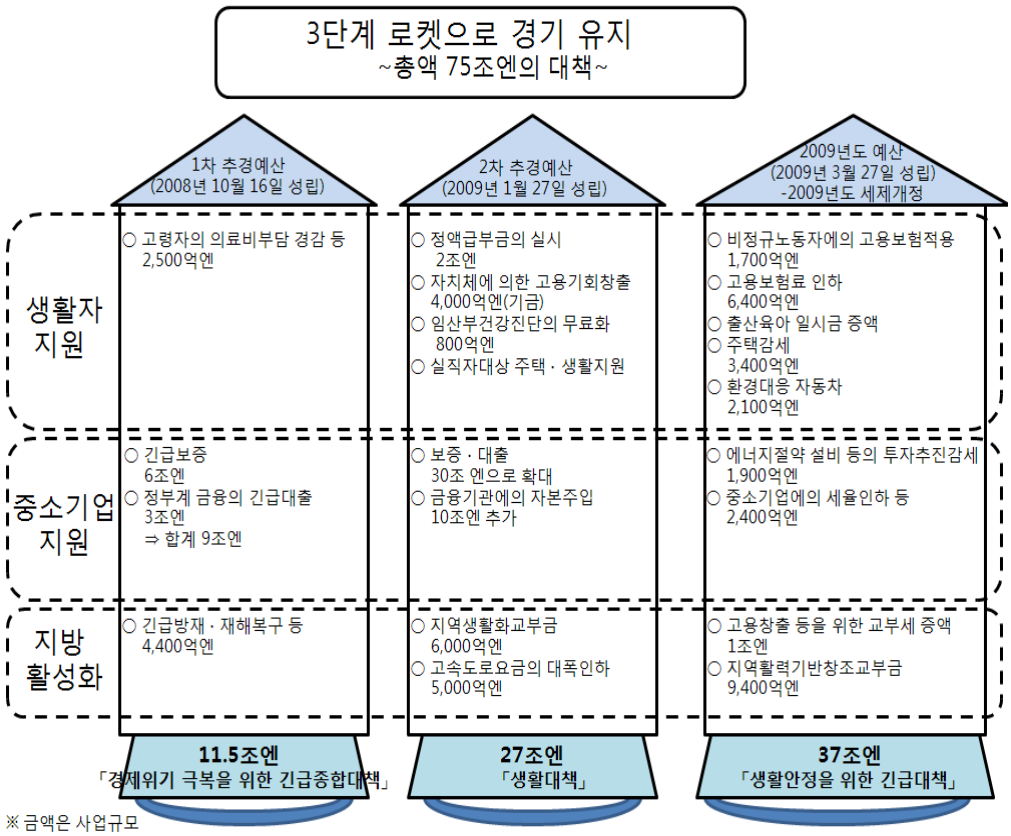


자료: 일본 수상관저,「經濟危機對策」, 2009. 4(http://www.kantei.go.jp).

❑ 3□□□ □□□□□ □□□□ □□□□, □□□ □□□□□□□ 순□□□□□ 15.4□엔, □□□□□□ 56.8□엔□□ □□□□ □□□ □□□□□□□ □□□□□ □□□□ □□했□□, □□□2009□□□4□□27□□□ □□□□□□□□□□ □□□ □□□ □□□30)

○ 순재정지출 기준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고용악화와 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용 4.9조엔, 중장기성장전략에 6.2조엔,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4.4조엔을 배정

30) 박진호, "일본 경제위기대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제2009-29호」, 2009. 4. 14.

○ 금번 발표한 경제대책은 과거의 대책보다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세계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 평가를 받음

## 2. 일본의 고용대책 현황

❑ □□□□ 2008□□ 12□□ □□□□□ 4.5%□□ □□□□□□ □□□ 동□□□ □□□ 1.3%p □승□□, □□□□□ □□□□□ □□□□□□□ □□□□□□ □□□ □□□ □□□□□ □□□□□□ □□□□□ □□

❑ □□□□ 3□□□ □□□□□□ □□□ □□ □□□□□□□ □□□□□, 「□□□□□□□」, 「□□□□□□□□」, 「□□□□□(內定)□□□ □□□□□」, 「□□□□□료□ □□」, 「□□□□□□ □□□ □□」□□ 5□□ □□□□□ □□□□([□□ 5] □□)

○ 「고용유지대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명당 100만엔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임

○ 「재취업지원대책」은 4,000억엔의 「고용창출기금」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직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긴급고용창출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고용특별교부금」을 신설할 계획임

○ 「취업내정(內定)취소 방지대책」은 입사가 취소된 취업내정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명당 100만엔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임

○ 「고용보험료 인하」는 2009년에만 고용보험료를 0.4% 인하하고, 「고용보험 대상 확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자격요건도 완화할 계획임

○ 고용대책을 위해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과 2009년도 예산에서 1조 3,403억엔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고용보험료 인하'에 편성된 예산이 6,400억엔으로 최대이며, '재취업지원대책'에 편성된 예산은 4,800억엔으로 그 다음임

[표 5] 고용대책 내용

|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 예 산 |
|---|---|
| 1) 비정규고용 대책 등에 관한 지원<br>○ 노동자파견제도의 재검토<br>- 제도의 재검토와 함께(개정법을 임시국회에 제출) 위법파견 일소를 위한 지도감시의 철저 등<br>○ 비정규고용대책의 추진<br>- 나이가 많은 프리터(25~39세)의 청년을 중점으로 견습고용제도 활용을 통해 취직지원(2008. 12. 1일 시행)<br>- 직업능력카드(Job Card)제도의 정비·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취직훈련기간 중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제도 창설 등<br>○ 고령자 등의 취로지원<br>-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조성을 신설 (2008. 12. 1일 시행) | 100억엔<br>(일부중복) |
| 2) 고용유지대책(생활대책, 생활안정대책에도 포함)<br>○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등에의 지원<br>- 고용조정조성금의 조성비율 인상(3분의 2 → 5분의 4) 등<br>- 고용조정조성금 지급요건 완화 및 대상노동자 확대(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확대, 2008. 12. 9일에 소급) 등 | 약 545억엔 |
| 3) 기타<br>○ 해고·고용 중지 등의 노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br>- 노동기준감독부서에서 부적절한 해고·고용 중지예방 등의 계발지도 등<br>○ 상담체제의 충실(일부 고용지원센터 및 감독부서 12. 20일 및 30일(10:00~17:00)의 개청) | - |
| 2 생 활 대 책 | 예 산 |
| 1) 고용유지대책(생활안정대책에도 포함)<br>○ 지방공공단체를 통한 고용기회 창출<br>-「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을 신속하게 실시(2,500억엔, 노동보험특별회계)하여 지방공공단체가 민간기업 등에 고용기회를 창출(원칙적으로 1년 고용계약)을 지원<br>- 사업례: 지방특산품의 개발, 판로개척사업 등<br>-「긴급고용창출사업」을 창설(1,500억엔, 일반회계)하여 지방공공단체나 실버인재센터 등이 직장을 잃어버린 비정규노동자·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시적인 고용·취업기회(6개월 미만의 고용계약)를 창출<br>- 사업례: 내진(학교내진화를 위한 조사), 환경·지역진흥(산림정비) 등<br>○ 나이가 많은 프리터(25~39세)의 적극고용을 지원<br>-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한명 당 100만엔(대기업 50만엔)을 지급<br>○ 실직자 훈련 실시규모 확대 등, 안정고용 실현을 위한 장기간 훈련 실시<br>○ 중소기업 등의 인재육성·잡카페(Job Cafe)를 통한 매칭 촉진 등<br>- 급속하게 악화되는 고용정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잡카페(Job Cafe) 지역네트워크를 강화 | 약 4,800억엔 |

| 3 생 활 안 정 대 책 | 예 산 |
|---|---|
| 1) 주택·생활대책<br>○ 전국의 주요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지원(2008년 12월 15일부터 실시)<br>○ 주택의 계속사용<br>- 고용이 정지당하거나 해고당한 노동자를 퇴실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무상으로 주택을 대여하는 사업주에게 조성(대상노동자는 1인 1개월당 4~6만엔, 6개월까지)<br>○ 주택·생활자금의 대출(2008년 12월 22일부터 실시)<br>- 주택입주 초기비용 등의 자금대출(최대 186만엔, 고용보험수급자의 경우는 최대60만엔, 노동금고, 이자율 1.5%)<br>- 6개월 후에 취직한 경우 상기대출을 일부상환면제<br>○ 고용촉진주택의 최대한 사용(2008. 12. 15일부터 실시)<br>- 이를 통하여 어쩔 수 없이 사원기숙사를 퇴실해야 하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확보 | 약 300억엔 |
| 2)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긴급대책 재정지원<br>○ 지방공공단체가 임시적으로 실직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 특별교부금을 통하여 지원 | - |
| 3) 고용유지대책<br>○ 자사에서 근무하는 파견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의 장려금 창설<br>- 1명당 100만엔(기간을 설정하고 고용하는 경우는 50만엔)<br>(대기업은 각각 반액)을 지급 | 약 500억엔<br>(일부중복) |
| 4) 취업내정취소 방지대책<br>○ 취업내정 취소의 방지<br>- 취업내정취소에 관한 상담, 기업지도 등을 강화<br>○ 취업내정이 취소된 취직 미결정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의 장려금 지급 등<br>- 1명당 100만엔(대기업 50만엔)을 지급 | 약 3억엔 |
| 5) 고용보험료 인하<br>○ 2009년에 한하여 0.4%(노사 각 0.2%)의 인하<br>(연 수입 500만엔의 표준가정에서 연 약 2만엔 상당) | 약 6,400억엔 |
| 6) 고용보험의 급여 재검토<br>○ 비정규노동자에 대해 적용범위 확대, 수급자격요건의 완화<br>- 적용범위를 「1년이상 고용예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br>- 계약갱신이 되지 않은 기간설정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요건(현행 1년)을 6개월로 완화<br>○ 취직이 곤란한 경우의 지원강화 등<br>- 연령, 지역에 의해 재취직이 곤란한 경우 고용보험 급여일수를 60일분 연장<br>(현행제도: 해고·고용 등의 경우 급여일수 90일(예: 24세 미만으로 피보험자 기간 5년 미만)~330일(예: 45~60세 미만으로 피보험자 기간 20년 이상) | 약 1,700억엔 |

자료: 일본 수상관저, 「經濟危機對策」, 2009, 4(http://www.kantei.go.jp).

❑ 2009□□□ □□□□□□□□□ □□□□ □□□□□ □□□□□ □□□□□ □□□□□□□ □□□ 3□□ 23□□ □□□□ ‘□□□□ · □□□ □현□□ □□□ 노□□□ □□’ □□□□ □□□□□□ □□

○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고용조정지원금을 확충(재원 6,000억엔)하여 잡셰어링 도입 기업을 지원

– 휴업수당 지원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2/3에서 3/4로, 중소기업은 80%에서 90%로 인상하고 잡셰어링 도입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45만엔 지급

○ 실직자의 직업훈련 기간 중 생활비 지원(월 10~12만엔)과 대출(상한 8만엔)을 실시하는 「훈련 · 생활지원 급부제도」 신설

## 3.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의 설치

❑ □□□□□□ □□□□ □□□□□□ □□□ □□□□□□ □□(創意) □□□□ □거□□□ □□□□□□ □□□ 새□□□ □□□□□□ □□□□□□ □□□□□□ □□□□□□ □□□□ 「□□□□□□□□□□□□」□□ □□□□, □□□ □□□□□ □□□□□ □□□□□ □□□□□ □□□□□ □□

[그림 2] 사업집행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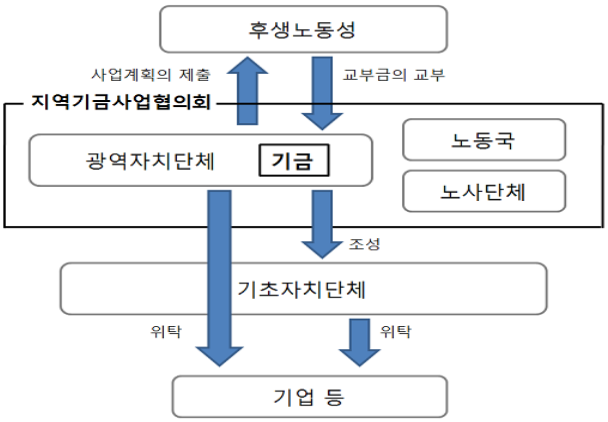

❑ □□□ □□□

○ 지역 당사자들에 의한 협의회에서 해당지역의 요구가 있으며 또한 이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 향후에도 사업 지속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

○ 선정된 사업이 지역구직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 광□□□□□□□ □□□□ □□□□□□□ [□□ 6]□□ 같□, □□□□□ □□□□ □□□ □□□□ 같□

○ 지역브랜드 상품의 개발·판로개척사업

○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사업

○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택 배식서비스 사업

○ 사립유치원에서의 돌봄 보육 등 극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식품 리사이클 사업이나 퇴비의 농업이용을 촉진하는 사업

❑ □□□□□□□ □□ □□□ □□□□□□ □□□ □친

○ 사업 실시를 민간기업 등에 위탁할 것(지방공공단체 직접실시는 불가)

○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신규고용실업자의 인건비 비율은 위탁비의 1/2 이상

○ 노동자와 원칙적으로 1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 갱신 가능

○ 동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새로이 고용한 고용자를 정규직원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교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 □□□□ □□□ □

○ 예산액: 2,500억엔(노동보험특별회계)

○ 고용창출효과: 3년간으로 최대 10만명

○ 실시지역: 전국

## [표 6] 2008년도「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 교부지역과 사업내역

(단위: 명)

| 번호 | 실시지역 명칭 | 실시 구분 | 분야 구분 | 사업내용 | 고용창출 인원수 |
|---|---|---|---|---|---|
| 1 | 나가노현 | 1 | 4 |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버인재 센터의 새로운 분야에의 사업개발에 대한 기술적 원조, 지도 등을 실시하는 어드바이저를 광역적으로 배치함 | 4 |
| 1 | 돗토리현 | 1 | 1 | 복지시설취업지원인을 고용하여 복지시설이용자인 장애인의 일반취로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 | 3 |
| 1 | 도쿠시마현 | 1 | 1 | 2008년부터 개시된 정신장애자 퇴원촉진지원사업(현단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재택정신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은 막중하므로, 사업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보내고 마중하는 서비스사업을 실시함 | 2 |
| 2 | 도쿠시마현 | 1 | 8 | 간벌현장에서 벌채량이나 반출량 상황을 조사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벌채방법의 지도, B·C재 등 저이용재의 출하 장려를 실시함. 아울러 간벌재를 이용하는 제재공장 등의 생산·가공상황 등을 조사하고 전략상품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지도 등을 실시 | 6 |
| 3 | 도쿠시마현 | 1 | 8 | 임업비약프로젝트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코디네이터가 가능한 인재를 고용하고 산림소유자에의 설명은 물론 사업대상산림의 선정이나 길 그물정비계획, 수지전망 등의 작성 시 산림소유자에게 설명함으로써 산림의 단지화를 촉진 | 6 |
| 4 | 시나고치촌 (도쿠시마현) | 2 | 8 | 농산물 시나고치 브랜드를 인터넷을 통해 재배방법 등 생산자의 소리도 소개와 함께 판로를 넓히기 위한 접수부터 발송까지를 실시 | 1 |
| 1 | 에히메현 | 1 | 1 | 에히메현 내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자기평가항목 체크를 통해 간단하게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경영개선대책을 촉진하고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와 동 분야에서의 고용창출을 도모 | 3 |
| 2 | 에히메현 | 1 | 2 | 재취직을 희망하는 육아 중에 있는 모친을 대상으로 재취직에 대한 고민이나 불안의 해결, 재취직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재취직지원센터를 개최하는 등, 육아 중에 있는 모친이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 | 2 |
| 3 | 에히메현 | 1 | 3 |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핑크리본 에히메협의회」에 대한 사업기획제안이나 이벤트실시에 관해 관계기관과의 연락조정을 실시하는 등, 동 협의회와 제휴하고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과 암 검·수진율의 향상에 대처함 | 1 |
| 4 | 에히메현 | 1 | 4 | 노동자나 실직자가 직면하는 생활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의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정보제공, 관계기관의 소개나 동행방문을 실시하는 등, 고용의 사회안전망화에 대처함 | 2 |

| 번호 | 실시지역 명칭 | 실시 구분 | 분야 구분 | 사업내용 | 고용창출 인원수 |
|---|---|---|---|---|---|
| 5 | 에히메현 | 1 | 4 | 에히메현 지역공동취직지원센터를 순회하면서 취직지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설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령자의 조기취직 및 고용안정화를 도모 | 1 |
| 6 | 에히메현 | 1 | 4 | 교환원(operator)을 설치하여 독거노인이나 고령자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상의 여러 문제에 관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고령사회의 추진에 대처 | 2 |
| 7 | 에히메현 | 1 | 4 | 「바이오디젤연료」의 보급계발을 실시함과 함께 지역자치회나 기업 등을 순회하여 폐식용유를 회수하여 바이오디젤 연료로 재활용하고 실제 차량이나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이용촉진에 대처 | 10 |
| 8 | 에히메현 | 1 | 10 | 도움을 주는 사람을 배치하여 신체부자유아동 및 지적장애특별지원학교의 유아아동학생의 개개인의 상태나 요구에 대응하고, 세밀한 교육을 실천함에 따라 특별지원교육의 충실·강화를 도모 | 32 |
| 9 | 에히메현 | 2 | 6 | 공항, 항구에서부터의 리무진버스나, 봇짱열차· 노면전차 등의 차내 이동시간 중에도 세밀한 유인 안내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마츠야마 여행의 인상을 높이고, 소문·단골손님의 확보를 목표로 함과 함께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시민을 대접하는 분위기의 향상효과도 전망됨 | 8 |
| 1 | 후쿠오카현 | 1 | 4 | 유학생의 취업촉진을 위해 고용 의뢰대상 기업의 개척이나 매칭을 실시하는 사업 | 1 |
| 2 | 후쿠오카현 | 1 | 3 | 24시간 대응방문간호 사업소를 정비하기 위한 방문간호사의 확보사업 | 12 |
| 3 | 후쿠오카현 | 1 | 3 | 지역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기간의 간호 보조자 확보사업 | 504 |
| 4 | 후쿠오카현 | 1 | 1 | 수발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보조원의 확보사업 | 402 |
| 5 | 후쿠오카현 | 1 | 4 | 30대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사원으로의 취직을 촉진하는 사업 | 24 |
| 6 | 후쿠오카현 | 1 | 2 | 사업소 내 탁아소의 설치를 촉진하고 보육사의 취직을 진행하는 사업 | 24 |
| 7 | 후쿠오카현 | 1 | 1 | 정보통신업에서 장애인의 취로를 촉진하는 사업 | 22 |
| 8 | 후쿠오카현 | 1 | 4 | 생활에 밀착한 서비스분야에의 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취로상담이나 매칭을 실시하는 사업 | 11 |
| 9 | 후쿠오카현 | 1 | 4 | Ruby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고용을 확보하는 사업 | 45 |
| 10 | 후쿠오카현 | 1 | 4 |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나 새로운 개발의 추진에 의하여 고용을 확보하는 사업 | 100 |
| 11 | 후쿠오카현 | 1 | 4 | 후쿠오카 산업디자인 상 수상상품 등 우수한 디자인 상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사업 | 6 |

# Ⅳ. 일본의 고용대책사업 주요사례

## 1. 수발·육아·의료

| 사업명 | ① 플렉시블 지원센터 |
|---|---|
| 관계부처 | 내각부, 후생노동성 |

### 1. 개 요

■ **설 치**

○ 설치주체는 기초자치단체

○ 운영은 현지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민간기업 등의 법인 또는 법인 이외의 단체로, 위탁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지닌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

○ 위탁 의뢰대상은 지역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지역요구에 대응하여 유연한 지원활동을 시행하고 있거나 혹은 이러한 사업전개가 가능하다고 전망되는 곳으로 함

○ 신규뿐 아니라 기존 사업이나 시설에 대상자 확대를 시행하는 형태도 있음

■ **내 용**

○ 현지의 요구에 대응하여 주간을 중심으로 아동 돌봄, 수발 서비스를 제공 및 야간 돌봄, 숙박 등의 옵션도 가능

○ 아동·장애자·고령자 등을 구별하지 않고 다세대교류형의 이용형태
단, 예를 들면 아동을 중심으로 한「아동형」등도 가능

○ 현지의 고용지원센터, 간호복지시설, 전문직양성학교(또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역활동조직 가운데 지역에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관과 제휴체제를 구축하여 실직자, 계약연장이 안된 파견근로자 등 미경험자를 대상으로 연수와 고용을 병행하여 시행

- 연수기간은 1인당 1~2년 정도, 연수 종료 후 계속하여 고용하는 것도 가능
- 커리큘럼은 각 센터가 제휴한 전문직양성학교의 협력을 얻어서 작성. 이때 간호복지사, 홈헬퍼 등의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교류(지역주민이 자유롭게 교류)

○ 농업이나 특산품의 판매, 지역특성에 맞게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지역에서의 직장만들기)

■ **설비·인원 등의 기준**

○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자유설계

○ 단, 「건축기준법」, 「소방법」, 「숙박업법」 등의 적용에 유의

○ 직원에 관해서는

- 사업이나 연수를 관리하는 코디네이터(타사업소와의 겸무가능) 및 이용형태에 대응하여 필요 시 이용자의 지원을 실시하는 생활지원인(타사업소와의 겸무가능)을 고용
- 직원 가운데 5~10명 정도(기준, 이용자수가 적은 경우는 이보다 적은 수도 가능)는 고용 하에서의 연수 대상자로 하여 고용지원센터와 제휴하여 실직자, 계약연장이 안된 파견근로자 등을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채용

■ **이용자의 규모**

○ 기초자치단체가 자유설계

○ 기준: 1일당 평균이용자수는 지역 이용자를 중심으로 1~2명에서 20인 정도 (그 이상도 가능)

■ **이용료**

○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자유설계
단, 최소한의 식비나 창작활동 재료비 등의 실비 상당분은 이용자 부담

■ **위탁비 수준**

○ 적절한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함

○ 따라서 연간 정액지불도 가능

○ 이용형태순서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례로,

- 기초자치단체 → 센터
  - 이용자 1인 7,000엔 × 25일 × 12개월 = 210만 엔을 참고로, 하루 10명이 이용하는 것을 가정하면, 연간 2,100만 엔 정도
  - 20명이 이용한다면 연간 4,200만 엔 정도
- 기초자치단체 → 센터 → 제휴 간호복지시설, 제휴 전문직양성학교
  - 센터 당, 센터 경유로 연간 총액 500만 엔 정도

### ■ 관계자의 역할

○ 기초자치단체: 실시주체(시설이나 설비의 정비, 운영위탁 의뢰대상의 선정·감독), 제휴체제 구축 등

○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기금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조성, 기초자치단체에의 전반적인 컨설팅, 제휴제체의 구축 등

○ 국가: 사업운영전반이나 커리큘럼 작성 등에 관한 상담·조언, 전문직양성학교 등에의 협력요청 등

## 2. 기대 효과

○ flexible한 지원: 주간에 보살핌과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도 서비스 이용가능(연령구분을 뛰어넘어 서비스의 틈새를 없앰)

○ 실직자 등의 현장훈련(OJT)의 장: 센터나 제휴 간호복지시설, 제휴 전문직양성학교에서 훈련을 통하여, 간호·복지 분야에의 취직과 경력 향상을 지원하는 장소로 활동

○ 지역에 밀착한 운영: 기초자치단체가 설치하고, 현지에서 유연한 지역지원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민간기업 등에 운영위탁

| 사업명 | ② 지역의 다양한 육아지원 촉진사업 |
|---|---|
| 관계부처 | 후생노동성 |

## 1. 개 요

○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나 주부 등을 회원으로 하여, 아이의 돌봄 등의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과 해당 지원을 제공하려는 사람을 연결, 조정하는 사업을 실시

- 사업내용의 예
  ① 보육시설까지 보내고 데리고 옴
  ② 보육시설 운영 시작 전이나 종료 후, 또는 학교의 방과 후 아이를 돌봄
  ③ 보육자가 병이나 급한 용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아이를 돌봄
  ④ 관혼상제나 학교행사가 있을 경우, 아이를 돌봄
  ⑤ 쇼핑 등 외출 시, 아이를 돌봄
  ⑥ 병이 난 아이·병에서 회복한 아이의 돌봄
  ⑦ 급하게 야근을 할 경우 및 출장 시 숙박을 같이하면서 돌봄

• 동일사업에 관하여는 차세대육(育)지원대책교부금(소프트 교부금),「병이 난 아이·긴급대응강화 모델사업」,「병이 난 아이· 긴급돌봄 대응기반정비사업(가칭)」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으로 하지 않음

### ■ 설비·인원 기준

○ 기초자치단체가 자유설계

### ■ 이용자의 규모

○ 기초자치단체가 자유설계

### ■ 이용료

○ 기초자치단체가 자유설계

### ■ 위탁비 수준

○ 기초자치단체가 자유설계

■ **관계자의 역할**

○ 기초자치단체: 실시주체(운영위탁 의뢰대상의 선정·감독) 등

○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기금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조성, 기초자치단체에의 전반적인 컨설팅 등

○ 국가: 사업운영전반에 관련한 컨설팅 등

## 2. 기대 효과

○ 지역 노동자의 일과 육아의 양립: 근로자가 육아를 하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음

○ 다양한 육아 요구에 대응: 집단보육에 친숙해지지 않은 병이 난 아이·병에서 회복한 아이의 돌봄 등 지역의 다양한 육아 요구에 대응 가능

○ 실직자 등의 현장훈련(OJT):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육아분야의 경력 향상을 지원하는 장소가 됨

○ 지역에 밀착한 운영: 기초자치단체가 설치하고, 현지 비영리법인, 민간기업 단체 등에 운영위탁

| 사업명 | [3] 장애인 지역취로 촉진사업 |
|---|---|
| 관계부처 | 후생노동성 |

## 1. 개 요

○ 소규모작업소나 취로지원사업소에서 실직자, 계약연장이 안된 파견근로자들 가운데, 각 방면에서 기술을 익힌 자를 고용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나 상품 품질향상을 시행한 경우 지원을 시행

○ 소규모작업소나 취로지원사업소에서, 상품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촉진원」을 고용하여 제품의 판매촉진, 시장개척 등의 활동을 전개한 경우 지원을 시행

### ■ 관계자와의 역할

○ 광역자치단체: 실시주체(위탁의뢰대상의 모집·선정), 고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기금에서 조성, 법정사업소 이행 시 조언, 그 외 전반적인 조언과 제휴체제에의 구축 등

○ 기초자치단체: 실시주체(위탁의뢰대상의 모집·선정), 필요한 컨설팅, 지역주민 계몽활동 등

○ 국가: 사업운영전반에 관련한 컨설팅, 장애시설단체 등에의 협력요청 등

### ■ 기 타

○ 여러 사업소의 공동실시도 가능

○ 법정사업 이행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작업소를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음

## 2. 기대 효과

○ 지역공생의 실현: 지금까지 장애인과 연관이 없었던 자가 새롭게 관계를 맺음으로써, 장애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공생에 기여함

○ 기술을 지닌 실직자 등이 능력을 발휘하는 장소의 제공

○ 장애인 자립지원의 촉진: 기술을 익힌 사람의 노하우를 통해 소규모작업소나 취로지원시설 등에서 노임 인상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에 기여

| 사업명 | ④ 병원 안내업무 등 의료서비스 및 환자서비스 향상사업 |
|---|---|
| 관계부처 | 후생노동성 |

## 1. 개 요

■ 내 용

○ 의료기관의 병원안▫업▫(외▫▫자 등을 대상으로 병원 안▫ 등), 소아▫자의 여가활동 지원업▫(소아 ▫원▫자를 대상으로 ▫이방에서 ▫을 ▫어 주는 등 ▫이 ▫아▫) 등을 시행하는 인원의 고용, 의료서비스·▫자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2. 기대 효과

○ 병원안▫업▫나 소아▫자의 여가활동 등에 ▫사하는 사람을 확대함으로써, 의료▫사자가 ▫▫의 업▫에 전▫하여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됨

○ ▫자서비스가 충실하게 되어 ▫자가 안심하고 기분 ▫게 의료를 ▫을 수 있게 됨

| 사업명 | ⑤ IC태그 활용 고령자 안전확보 |
|---|---|
| 관계부처 | 총무성 |

## 1. 개 요

### ■ 내 용

○ 지역의 독거노인 비□하여 수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정보 데이터□이스□

○ 지역의 관계기관(시청, 경□, 의료기관 등), 근□의 자원□사자 등이 연계하여, 방문 등을 통하여 수집한 수발을 원하는 사람의 최신 데이터를 공유하여 □과적이고 세밀한 지원을 실시

○ 데이터□이스의 운영은 복지센터(가□·신설)에서 실시

### ■ 사업 규모

○ 관계자의 네트워크□, 복지센터 설치, 고령자데이터□이스(HP)의 구축· 관리· 운영 등을 □함하여 수□만□ □지 1□□ 정도 소요

## 2. 기대 효과

○ 지역 전체의 세밀한 지원을 통하여, 안심하고 안전한 지역생활을 실현 하고 사회보장비 □제가 기대됨

| 사업명 | ⑥ 지역육아 지원 고용촉진사업 |
|---|---|
| 관계부처 | 후생노동성 |

## 1. 개 요

○ 실직자 등의 응모자에게 방과 ▫ 아동▫ ▫, 지역육아지원거▫사업의 보조업▫에 ▫사함으로써 소▫을 ▫을 뿐 아니라 실▫경험을 ▫는 기회를 제공

○ 실▫경험 축적 ▫, 수요가 ▫가하고 있는 육아지원 분야에서 활동하는 ▫을 기대

- 실시기관(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응모자와 사업실시사업소의 정보관리, 사업실시사무소에 대한 조성(급여비), 실무경험 후 고용되는 곳인 기초자치단체나 사업소의 정보수집 등을 담당

① 실직자 등의 응모자가 방과 후 아동 클럽, 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에서 해당사업소 종사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1년 정도 보조업무에 종사

② 사업소에서 급여지급

③ 사업소에 대해서 실시기관이 지도 지원을 위해 급여상당액의 일부를 조성

④ 1년 후, 해당사업소 또는 다른 사업소에 취직

## 2. 기대 효과

○ 실직자 등의 경우, 소▫을 ▫으면서 실▫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

○ 기초자치단체(및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인재확보가 어려운 육아지원 분야의 인재육성·인재확보에 연결됨

○ 육아지원사업소의 경우, 업▫보조자로의 활용 및 향▫ 동사업소의 인재확보에 이▫지함

| 사업명 | ⑦ 재취업 희망 여성 취직지원사업 |
|---|---|
| 관계부처 | 후생노동성 |

## 1. 개 요

### ■ 내 용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에 있는 여성 혹은 육아 등을 이유로 □직 □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① 일자리를 찾는 방법, 면접 노하우 등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천적인 내용의 강좌 개최

② 인턴쉽 실시

③ 카운슬러를 통한 개별 취업상담

등을 실시하여 일하는 □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과 동시에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인□□을 실시하는 직장의 제공이나 □운□러의 확보를 시행하는 등, 고용지원센터(및 mothers hello work)나, 경제단체 등 관계단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실직자를 고용

### ■ 설비·인원 등의 기준

○ 기초자치단체가 자유설계

### ■ 이용자의 규모

○ 기초자치단체가 자유설계

### ■ 이용료

○ 기초자치단체가 자유설계

### ■ 위탁비 수준

○ 기초자치단체가 자유설계

■ **관계자의 역할**

○ 기초자치단체: 실시주체(운영위탁 의뢰대상의 선정·감독), 제휴체제의 구축 등

○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기금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조성, 기초자치단체에의 전반적인 컨설팅, 제휴체제의 구축 등

○ 국가: 사업운영전반에 관한 컨설팅 등

## 2. 기대 효과

○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에 대한 세밀한 대응: 경제적으로 □ □한 상□에 있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세밀한 대응이 가능하게 됨

○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의 촉진: 세미나 수□ 등 다양한 분야에 재취업을 촉진하는 장으로 함

○ 지역에 밀착한 운영: 기초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지역 여성 센터,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위탁

| 사업명 | ⑧ 모자가정의 취업지원 강화사업 |
|---|---|
| 관계부처 | 후생노동성 |

## 1. 개 요

### ■ 내 용

○ 모자가정 등의 취업과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나 시에서 모자가정의 모친이 일하기 ▫운 ▫경을 정비하거나 직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은 대▫을 시행

- 기업을 방문하는 방문원을 고용하여 재택근무 등 모자가정의 어머니에게 적합한 업무를 개척함
-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 중의 모친의 아이를 돌보는 탁아서비스 제공
- 각종 지원시책이나 기업요구에 관하여 관계자 사이의 정보공유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복지, 노동,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설치·개최
- 자택에 칩거하는 등 지역과의 연결이 끊긴 모자가정 등의 방문과 개별상담의 시행과 함께, 지역교류회의 개최, 취업을 향한 교육훈련의 알선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시행

## 2. 기대 효과

○ 지역요구를 고려하면서 모자가정의 모친이 일하기 ▫운 ▫경을 정비하고 동시에 직장 개척 등을 시행하여 취업과 자립을 촉진시▫

| 사업명 | ⑨ 장애인 지역생활 지원사업 |
|---|---|
| 관계부처 | 후생노동성 |

## 1. 개 요

**<장애인 본인에 대한 지원>**

### ■ 내 용

○ 장애인 상담지원 등을 충실하게 실시하기 위해 장애인지원 어시스▫트를 고용 함(예: 발▫장애의 경우 발▫장애자지원센터 등에서 해당 어시스▫트를 고용하는 ▫이 가능함)

○ 장애인지원 어시스▫트는,

- 장애인에 대해 확실하게 상담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의 수집이나 서류 작성 등의 보조를 시행
- 장애인 실태조사나 지원요구 조사의 보조를 시행

### ■ 관계자의 역할

○ 기초자치단체: 제휴제체의 구축, 어시스▫트의 고용 등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제휴제체의 구축 등

○ 국가: 사업운영전반에 관한 컨설팅, 조사▫목 작성 등

**<가족에 대한 지원>**

### ■ 내 용

○ 정신장애자 등이 집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당사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는 있지만, 장애특성상 당사자가 복지서비스나 의료진▫을 희망하지 않고, 가▫이 ▫▫한 상▫에 직면하▫지만, 조치▫원 등 ▫제 ▫원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가▫이 「장애인 자립지원법」에 근거하여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일시적으로 회▫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음

○ 이□ 당사자의 불안정한 상태가 안정□ □까지 단기적인 휴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가□과 당사자 □방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는 □으로 함

■ **관계자의 역할**

○ 광역자치단체: 실시주체(시설이나 설비의 정비, 운영위탁 의뢰대상의 선정·감독), 제휴체제의 구축 등

○ 국가: 사업운영전반이나 가이□라인작성 등에 관한 컨설팅 등

## 2. 기대 효과

○ 장애인 서비스사업

-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상담지원의 기회 보장가능
- 발달장애자 등의 실태가 파악되고 연구나 시책관련 기초 데이터가 확립됨

○ 가□ 서비스사업

- 정신장애자의 지역이행 촉진: 장기입원하고 있는 정신장애자를 포함한 재택정신장애자 등의 가족이 안심하고 자택으로 퇴원하여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정신장애자의 지역이행을 촉진함
- 실직자 등의 현장훈련의 장: 고용된 실직자가 시설에서 정신보건복지사와 함께 가족이나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경력 향상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복지 분야에의 계속고용으로 연결됨
- 지역에 밀착한 운영: 광역자치단체가 설치하고 현지의 상담지원사업자나 비영리법인, 민간기업 등에 운영위탁

| 사업명 | ⑩ 특정 건강진료 및 특정 보건지도 종사자 확대사업 |
|---|---|
| 관계부처 | 후생노동성 |

## 1. 개 요

### ■ 내 용

○ 현재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보건사와 관리영양사의 고용을 촉진하여, 특정건□□진과 특정보건지도실시기관 체제의 확충을 도모

- 과거 1년 이상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보건사와 관리영양사를 채용한 민간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
- 신규 채용되었던 보건사가 보건지도 프로그램의 연수를 고용시작 전후에 이용한 경우, 채용한 실시기관에 대응하는 추가적 보조

## 2. 기대 효과

○ □진한 건□□진·보건지도체제의 실현

○ 세밀한 건□□진·보건지도의 실현

○ □장지방□□□ 해당자와 경□이거나 병으로 진단□지 않은 예비□의 감소

○ 생활□관병 □자의 감소에 의한 의료비의 적정□

## 2. 농림 수산업

| 사업명 | ① 도농교류 추진관련 신규고용 창출사업 |
|---|---|
| 관계부처 |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

### 1. 개 요

■ 내 용

○ 도농교류(Green Tourism)의 ▫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이 예시한 고용▫과가 있고 고용과 관련된 인건비는「향▫고용재생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지▫할 수 있음

- 사업내용의 예

① 도농교류(Green Tourism)사업 실시지역의 코디네이터나 체험지도원(instructor) 등의 육성·고용

② 도농교류(Green Tourism) 여행상품이나 체험상품의 기획 및 개발 인력 고용

③ 농림어가 민박이나 농림어업 체험민박 등의 정비에 따른 운영 인력 고용

④ 농림수산물직판장, 농림어가·농산어촌레스토랑 등의 운영 인력 고용

⑤ 농산물가공시설이나 가공단지, 관광농원, 시민농원,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31], 각종교류·체험시설의 정비, 지역통화 등의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운영 인력 고용

⑥ 도농교류(Green Tourism)를 통한 마을 만들기, 계단식 논 등의 경관보전, 자연환경의 보전·재생에 착수하는 운영, 지역안내인 등의 육성·고용

⑦ 농림어업이나 농산어촌이 지닌 치료효과, 교육적 효과 등을 이용한 건강비즈니스, 교육 비즈니스 등의 인력의 육성·고용

### 2. 기대 효과

○ 중산간지역(▫▫▫▫▫)을 시작으로, 농▫어업생산 만으로는 지역의 고용촉진이 ▫▫한 경우 도농교류를 통한 새로운 고용 창출

○ 도시민과 농어민 사이의 중개사업 및 커▫니▫ 비▫니스 분야의 고용 창출

31) 시민농원, 도시생활자 등에게 임대하는 농장으로 체제형 주말농장에 해당함.

| 사업명 | ② 바이오매스 유효활용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간벌재 수집·이용체제 정비사업 |
|---|---|
| 관계부처 |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관련부처<br>(내각성,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

## 1. 개 요

○ ▫이▫매스 활용은 지구▫난▫방지, 순▫형사회 형성, 농산어▫ 활성▫에 도▫이 되▫ 지금까지 농산▫ 생산을 넘는 농▫수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

○ ▫이▫매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대한 지역에 ▫밀도로 분▫되어 있는 ▫이▫매스 자원을 ▫▫적으로 수집·운반하는 ▫이 중요한 성공요소임

○ 그▫지만 간▫재 등 미활용 ▫이▫매스는 수집·운반비용이 ▫아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상▫임

○ 음식▫▫▫기 등의 ▫기▫ ▫이▫매스도 재활용에 적▫한 원료를 분류·수집하는 ▫이 ▫▫

○ 이를 위해 ▫이▫매스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의 ▫이▫매스 자원의 수집·운반과 연계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신규 고용을 지자체가 지원함

○ 이러한 대▫을 통해 ▫이▫매스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이▫매스 제품이나 목질 ▫▫보일러 등의 ▫이▫매스 제품을 이용하는 설비의 제조·판매 확대가 기대됨으로 이와 관련된 신규 고용도 지원함

## 2. 기대 효과

○ ▫이▫매스자원의 수집·운반, ▫이▫매스 제품 및 제품을 이용하기 위한 설비의 제조·판매와 관련된 인력확보

○ 이를 통해 ▫이▫매스의 원료 조▫에서 이용까지 일관된 ▫▫ 활용 시스▫이 확립되고, 지구▫난▫방지, 순▫형사회의 형성, 농산어▫의 활성▫에 도▫

| 사업명 | [3] 수출촉진 컨설팅 |
|---|---|
| 관계부처 | 농림수산성 |

## 1. 개 요

### ■ 내 용

○ 신규로 농▫수산▫·식품의 수출하는 농▫어업인, 지역상사를 대상으로, 수출▫로▫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지원을 시행

○ 고려할 수 있는 지원의 형태

- 개별 상담회나 강연회의 개최, 연구회에 강사 파견, 수출관련서류 번역, 개별 수출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지도 등을 제공

### ■ 자격 기준

○ 상사, 수▫관련업 ▫직자 등 수출에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 자

○ 금▫기관 ▫직자 등 조직운영에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 자

○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의 지식을 ▫▫ 자

○ 그 외 농▫수산▫ 등의 수출에 관련된 지식이나 노하우를 ▫▫ 자

### ■ 이용료

○ 사업주체가 자유설계(원칙적으로 ▫료로 하는 ▫이 ▫람직함)

### ■ 그 외

○ 명확한 목표를 세워서 실행하는 구체적인 수출대▫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제도(수출촉진대▫ 등)를 활용하는 ▫이 가능

## 2. 기대 효과

○ 지역 활성▫, 소▫ 향상, 지역이미지(지역▫▫▫) 향상

## 3. 비 고

○ 일부 현(▫)의 경우, 농식품 분야의 고문으로 고용한 다음, 수출촉진에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 ▫는 사례가 있음

| 사업명 | ④ 중소식품소매업자의 산지공동조달사업 |
|---|---|
| 관계부처 | 농림수산성 |

## 1. 개 요

### ■ 내 용

○ 중소식품소매업자가 공동으로 매▫이나 산지선정과 관련된 ▫▫네이터를 활용하면서, 생선 등 식료품을 산지에서 직▫ 조▫하는 대▫을 시행하는 경우와 관련된 사업

○ 여러 산지에서 조▫하고 다▫도에 ▫친 거▫를 조건으로 한 사전계약이 ▫함되어있는 경우, 해당 ▫▫네이터를 활용한 산지조정과 해당산지로부터 ▫류▫가에 대응하는 경우에 시설·기기정비에 대한 지원을 시행

### ■ 관계자의 역할

○ 기초자치단체: 실시주체에 위탁 등

○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기금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조성, 기초자치단체에의 전반적인 컨설팅

○ 국가: 식품유통기능 ▫리▫, 고도▫지원사업 운영전반에 관한 컨설팅

| 사업명 | ⑤ 사료용 쌀 생산 및 유통사업 지원사업 |
|---|---|
| 관계부처 | 농림수산성 |

## 1. 개 요

### ■ 내 용

○ ▫가▫·사료용 ▫에 대하여 생산·유통·가공·판매 관계자와 제휴를 전제로, 생산에서 판매까지 관계된 인력의 인건비 지원

### ■ 실시 방법

○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는 다음의 수칙에 따라 시행

- 생산·가공 등의 관계자가 공동으로「생산제조연계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농림수산장관이 인정
- 「생산제조연계사업계획」을 인정을 받은 생산자 및 사업자는, 지자체에 사업을 신청
- 지자체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생산제조연계사업계획」을 인정받은 생산자 및 사업자에게 해당사업을 위탁

① 「생산제조연계사업계획」을 인정받을 것

② 쌀가루·사료용 쌀의 생산·유통·가공·판매의 경우, 신규로 노동자를 고용할 것

③ 기타(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 요건을 지자체가 설정)

### ■ 기타 관련사업

○ 이 외에,「생산제조연계사업계▫」을 인정▫은 생산자 및 사업자는, ▫가▫·사료용 ▫의 생산 확대나 이에 필요한 기계·시설의 정비 등에 대하여「▫ 유▫ 활용촉진교부금」 및「농산어▫활성▫ ▫로▫트지원교부금(신규수요생산제조연계관련 시설정비사업)」의 지원을 ▫을 수 있음

## 2. 기대 효과

○ ▫가▫·사료용 ▫ 등의 생산을 위해 경작지를 최대한 사용하여 농▫지역의 활성▫를 유도

○ ▫가▫·사료용 ▫ 등의 가공·판매를 통해 지역 농축산▫ 생산·판매액이 ▫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를 도모할 수 있음

| 사업명 | ⑥ 농상공(農商工) 연계 설비정비사업 |
|---|---|
| 관계부처 | 농림수산성 |

## 1. 개 요

### ■ 내 용

○ 농업인과 식품제조업자가 지역 농산ㅁ의 안정적인 거ㅁ관계를 확립하여 시행하고, 식품의 생산·가공에 필요한 시설정비에 대한 지원을 시행

### ■ 관계자의 역할

○ 기초자치단체: 사업실시주체에 위탁 등

○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기금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조성, 기초자치단체에의 전반적인 컨설팅

○ 국가: 농상공연계설비정비사업에 관한 컨설팅 등

## 2. 기대 효과

○ 지역의 중심산업인 농업이나 상공업 진ㅁ을 통한 지역 활성ㅁ

| 사업명 | ⑦ 국산원재료 공급력 강화 대책사업 |
|---|---|
| 관계부처 | 농림수산성 |

## 1. 개 요

### ■ 내 용(시설정비사업만 발췌)

○ 가공·업무용 수요의 국산원재료의 점유율 향상을 위해 식품제조업자 등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공□체인(supply chain) 구축을 위한 대□ 지원

○ 식품제조업자 등이 국산원재료의 안정조□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을 지원

### ■ 실시 주체

○ 시설정비사업을 실시하는 지구의 국산원재료공□·이용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생산자, 중간사업자, 식품제조업자 등

### ■ 보조율

○ 50% 이□

### ■ 내 용

○ 산지·생산자에의 지원

- 적정품종의 동시도입을 위해 공동 묘종(苗種) 시설의 정비
- 품질관리·보관유지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다기능 선과라인의 정비 등

○ 중간사업자에의 지원

- 위생적인 포장라인 정비
- 콜드체인화를 위한 냉장시설 정비
- 위생적인 가공시설 정비
- 광센서를 이용한 당도분석에 따른 집출하 시설 정비 등

○ 식품제조업자에의 지원

- 콜드체인화를 위한 냉장시설 정비
- HACCP에 대응한 가공라인 정비 등

■ **자격 요건**

○ 지구촉진사업과 일체적으로 실시할 □

○ 국산원재료의 거□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

○ 사업실시에 의한 성과목표를 정하고 있을 □

○ 수익농가가 3호이상일 □

## 2. 기대 효과

○ 공□체인(supply chain)의 구축: 국산농축산□의 가공·업□용발□출하□의 □가에 동반한 농업경영의 안정□, 경영규모 확대

○ 중간사업자의 육성·확보: 산지와 식품제조업자를 □는 중간사업자를 육성

## 3. 비 고

■ **선행 사례**

○ 농협이 계약거□에 의해 도매업자(중간사업자)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외식사업자에게 양□□를 공□

○ 여러 산지와의 계약을 통해 장기안정공□체제를 실현하고, 계약거□에 참가하는 생산자와 경작면적의 □가

○ 농업생산법인이 계약거□에 의한 도매업자(중간사업자)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의□에 시금치를 공□

○ 생산법인은 계약거□에 참가하는 생산자를 다수 모집하여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거□□이 대□ □가

| 사업명 | ⑧ 신토불이 모델타운 사업 |
|---|---|
| 관계부처 | |

## 1. 개 요

■ 내 용

○ 농업뿐만이 아니라, 학교▫식, 상공, 관광업 등 지역 관계자가 제휴하여 지역의 「신▫불이 모▫▫운」을 지원

○ 농산▫직판장을 중심으로 고령자나 소규모농가 등 다양한 주체가 활동 가능한 다품▫소▫ 생산·유통체제를 확립하는 ▫을 지원

○ 신규작▫ 도▫, 리스방식으로의 하우스도▫, 고령자라도 대응 가능한 집출하 시스▫의 구축 등을 지원

○ 2009▫부터 학교▫식이나 사원식당에 지방농산▫을 안정적으로 공▫하는 대▫이나, 대▫판매▫ 등의 지방산▫을 판매하는 창구 개설 등 신▫불이의 새로운 모▫의 구축을 지원

## 2. 기대 효과

○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

○ 고령자·소규모농가의 소▫기회 창출 및 지역농업, 관련 산업 활성▫

○ 식품과 농업에 대한 이해 ▫진

○ 현지소비 ▫대로 수▫거리 감소를 도모할 수 있어 지구▫난▫ 방지

## 3. 비 고

○ 일부 지자체의 농산▫▫리가공시설 정비(2007▫ 신▫불이 모▫▫운사업)

| 사업명 | ⑨ 지역농산물 직판장 활용사업 |
|---|---|
| 관계부처 | 농림수산성 |

## 1. 개 요

### ■ 내 용

○ 농업인과 지역주민 등의 여러 주체가 참여한 민간단체가 농산□직판장이나 농가 □스□□ 등을 활용하여 지역진□을 도모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은 활동

- 농산물직판장, 농가 레스토랑의 운영·관리
- 화학비료나 합성화학농약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의 홍보활동 등

| 사업명 | ⑩ 친환경 모델타운 지원사업 |
|---|---|
| 관계부처 | 농림수산성 |

## 1. 개 요

### ■ 내 용

○ 친□경 모□□운의 중심이 되는 유기농업□진협의회 사□국의 사□작업을 시작으로, 지역의 유기농업기술연수, 연구회를 위한 자료작성, 유기농산□ 인□등□ 등의 절□, 유기농산□직판장에서의 판매촉진활동, 심□지□ 개최를 위한 컨설팅

○ 지역 소비자 및 농업인, 농업인조직, 직판장, 유기농산□ 취□업자, 등□인정기관 등의 제휴를 □□하여 유기농업□진 대□ 지원을 위한 실□적 서비스 제공

## 2. 기대 효과

○ 유기농업 확대, 취농·연수기회 □가, 소비자의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 □진

| 사업명 | ⑪ 농촌체험형 숙박시설 및 농가 레스토랑 |
|---|---|
| 관계부처 | 경제산업성 |

## 1. 개 요

### ■ 내 용

○ 농업인의 고령ㅁ, 농산ㅁ 시장가ㅁ ㅁ체 및 ㅁㅁ한 수ㅁ농산ㅁ의 영향에 의하여 ㅁ원(ㅁㅁ) 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ㅁ교 활용 등을 통해 「농업체험형 숙박시설 및 농가ㅁ스ㅁㅁ」을 설치하고 관광ㅁ을 유치

○ 현지의 고용지원센터, 자치체, 농가, 농협, 지역의 활동조직 등과 제휴하여, 미경험자를 연수 ㅁ 고용

○ 연수기간은 ㅁ사ㅁ용에 따라 다ㅁ

### ■ 설비·인원 등의 기준

○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자유설계

○ 단, 「건축기준법」, 「소방법」, 「숙박업법」, 「식품위생법」 등에 유의

### ■ 이용자의 규모

○ 사업자가 자유설계, 시설규모에 따라 이용자수를 결정

### ■ 이용료

○ 사업자가 자유설계

■ **관계자의 역할**

○ 민간사업자: 실시주체

○ 기초자치단체: 제휴체제 구축지원, ▫교 등의 양도, 사업자에게 시설정비비용 조성

○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기금에서 기초자치단체 지원, 제휴체제 구축지원

○ 국가: 사업에 관한 컨설팅

## 2. 기대 효과

○ 유휴지, ▫원 등의 해소, 지역 영농▫계자 및 노동부▫ 해소

○ 지역 커▫니▫ 활성▫

## 3. 비 고

■ **선행 사례**

○ 와▫야▫현: 농업법인주식회사 아키▫노

- 지역주민이 출자하여「농업법인주식회사 아키츠노」를 설립하고, 폐교를 활용한 농업체험형 숙박시설「아키츠노 정원」및 농가레스토랑을 운영

## 3. 환경 저탄소

| 사업명 | ① 표류 및 표착 쓰레기 지역대책 지원사업 |
|---|---|
| 관계부처 | 환경성 |

### 1. 개 요

○ 표류 및 표착 □□기 조사 지원사업

- 광역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실버인재센터 등에 위탁하여 해안청소를 실시
- 표류 및 표착 쓰레기의 실태파악, 발생원의 추정,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회수 및 처리 방법의 검토 등을 시행(100% 지원)

○ 표류 및 표착 □□기의 □리 지원사업

- 표류 및 표착 쓰레기조사, 관리자, 자원봉사자 등의 청소를 통해 회수된 표류 및 표착 쓰레기를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장소와 처리비용을 지원

### 2. 기대 효과

○ 표류 및 표착 □□기의 발생원과 회수 및 □리방법 등의 정보를 축적하고, 지역 관계자의 상호협력이 가능한 체제 만들기를 촉진

○ 해안의 뛰어난 □경지 복원과 함□, □경보전을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 등의 활성□가 기대

### 3. 비 고

○ 2012□ 이□는 표류 및 표착 □□기 조사 지원사업 및 동 사업에 의하여 □을 수 있는 성과를 활용하여 지역 관계자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해안청소를 □함한 표류 및 표착 □□기대□을 진행

| 사업명 | ② 자연공원 청소사업 |
|---|---|
| 관계부처 | 환경성 |

## 1. 개 요

### ■ 배 경

○ 최근 해안표착 ▫▫기가 ▫가함과 동시에, 산▫지, 호수 및 ▫ 등에서 ▫기▫의 ▫기가 발생하고 있음

○ 등산 ▫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려 등산로가 ▫▫▫되고 있지만, 이들의 유지관리가 충분하지 않음

○ 국립공원이나 광역자치단체지정 자연공원은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뛰어난 자연▫경지로서, 지역의 생▫다양성보전 관▫에서도 중요한 지역임

○ 동시에 자연과의 만▫과 ▫경학▫의 장으로서 활용되고, 지역의 관광자원의 중심을 이▫고 있음

○ 동 지역에서 지역주민 등을 고용하여 자연▫경보전활동을 시행하는 ▫은 고용촉진뿐 아니라, 지역의 자연▫경의 보전과 지역 활성▫에 기여

### ■ 내 용

○ 지역 자연과 사회상▫을 숙지한 지역 원주민 등을 고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하고 세밀한 자연▫경보전활동을 ▫진

- 사업대상지: 국립공원, 광역자치단체지정 자연공원, 장거리자연보도 및 이들과 보전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구역
- 사업내용

① 산악지의 등산로와 행락지 등 이용거점의 세밀한 유지관리(인력에 의한 노면보수, 도목처리, 도표보수·도장)의 충실

② 투기물·표착물·퇴적물의 회수에 의한 자연환경의 유지개선

■ 방 안

○ 광역자치단체의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의 민간단체와 민간기업 등에 청부계약을 시행

## 2. 기대 효과

○ 국립공원, 광역자치단체지정 자연공원, 장거리자연보도의 관리의 청소를 도모

○ 관광ㅁ국·양호한 관광형성의 실현에 공ㅁ

○ ㅁ경 분야의 새로운 고용 확보와 지역의 활성ㅁ에 기여

## 3. 비 고

○ 국립공원 등에서는 국립공원 등 민간 활용 특정자연ㅁ경보전활동(그ㅁ워커사업)을 통해 국가(ㅁ경성)가 직ㅁ 실시하고 있음

| 사업명 | [3] 저탄소도시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
|---|---|
| 관계부처 | 내각관방, 농림수산성 (임야청),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 |

## 1. 개 요

### ■ 내 용

○ ▫경모▫도시(▫ 13도시)를 중심으로 ▫▫소도시 ▫진협의회 가▫도시(70개 기초자치단체, 39광역자치단체)에서 에▫하우스의 보▫ 등 ▫▫소사회 만들기와 함▫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사업을 ▫▫실시

○ 사업실시를 위한 기술기능, 경험을 가진 인재를 육성, 경력향상 도모

○ 기술기능,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분야를 예시

- 에코하우스의 보급: 기술기능, 지식의 내용(지역부존 자원의 가공, 단열, 채광시공 등)
- 태양열 패널, 바이오매스자원 등 자연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기존가옥에 태양열패널설치, 그린 증서화, 바이오매스자원의 연료화 등
- 저탄소도시 에코투어: 지구환경문제, 도시조성 등에 관한 폭넓은 경험
- 산림정비: 간벌, 임도정비 등

### ■ 관계자의 역할

○ 기초자치단체: 실시주체 또는 민간에의 보조금 교부주체 및 관계자와의 조정 등

○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기금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조성,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상담에 대한 조언, 연계체제 구축 등

○ 국가: 지자체로부터의 상담에 대한 조언 등

## 2. 기대 효과

○ 에▫하우스, 자연에▫지 등: 이산▫▫소 ▫감

○ 에▫▫어: ▫경교육의 ▫진, 관광교류▫수 ▫가

○ ▫▫: 이산▫▫소의 ▫수, 치산치수

## 3. 비 고

### ■ 선행 사례

○ 에□하우스 관련

- 「환경모델도시」 중 여러 도시가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에코하우스 등의 건설을 실시하기로 함(홋카이도 시모카와쵸, 오비히로시, 교토시, 미즈마타시, 유스하라쵸 등)

○ 자연에□지, 재생가능에□지 관련

- 「환경모델도시」 중 여러 도시가 주택의 태양열 패널의 대규모설치를 예정하고 있음(오비히로시, 이이다시, 토요타시, 교토시, 사카이시, 키타큐슈시 등)

○ 에□□어 관련

- 「환경모델도시」의 견학 시, 도시 내의 안내인의 육성과 경력 향상

○ □□정비 관련

- 「환경모델도시」 중 코우치현 유스하라쵸가, 「숲 공장 만들기 추진사업」(코우치현) 등의 활용을 상정하고, 건설업 등의 잉여 노동력을 활용한 삼림 및 임도정비를 실시하기로 함

○ 그 외의 "환경모델도시"에 있어서는 여러 도시가 대규모 삼림정비를 실시하기로 함(□□이도 시모가와□, □비□로□, 이이다시, □요□시, □□시 등)

| 사업명 | ④ 탄소상쇄 추진지원사업 |
|---|---|
| 관계부처 | 환경성, 농림수산성 등 |

## 1. 개 요

### ■ 배 경

○ 「ㅁ소상ㅁ」는, 스스로가 ㅁ출한 ㅁ실ㅁ과 가스 중에서 ㅁ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다ㅁ 장소에서 실현되고 있는 ㅁ출ㅁ감·ㅁ수ㅁ(크ㅁㅁ)의 구ㅁ 등을 통해 상ㅁ하는 ㅁ을 의미

○ 탄소상쇄의 추진으로, 시민·기업 등의 자발적인 온실효과 가스배출삭감활동을 촉진함과 함ㅁ, ㅁ출ㅁ감·ㅁ수ㅁ로ㅁ트의 자금조ㅁ과 연결됨

○ ㅁ소상ㅁ의 구조를 활용한 상품·서비스는 ㅁ속하게 확대 됨

○ 환경성에서는 탄소상쇄로 이용되는 크레딧으로 하는 국내의 온실효과가스 ㅁ출ㅁ감·ㅁ수ㅁ을 인ㅁ하는 「상ㅁ 크ㅁㅁ」(offset credit, J-VER) 제도를 작ㅁ 11ㅁ에 창설

○ J-VER 제도의 대상이 되는 ㅁ로ㅁ트로는,

- 화석연료의 대신하여 목질바이오매스(미이용 간벌재 등)를 보일러 연료에 활용한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프로젝트
- 간벌이나 육림(育林) 등을 통한 산림에 의한 이산화탄소흡수 프로젝트
- 소수력 발전이나 목질이외의 바이오매스 발전에 의한 이산화탄소배출 삭감프로젝트 등이 고려됨

### ■ 개 요

○ 기업이나 자치체 등에 J-VER 발행을 위해 필요 되는 신청·ㅁㅁ 비용을 지원

○ 지역 ㅁ의 ㅁ소상ㅁ 제도의 보ㅁ계발, 상담지원

○ 자치체에의 위탁에 의한 ㅁ소상ㅁ 실시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수단과 방법의 ㅁㅁ

○ 네트워크화의 지원을 통해 자치체간 또는 자치체와 기업 간 등에 탄소상▫ 협정의 체결을 촉진

○ 자치체 등이 J-VER을 구▫하는 게 ▫ 스스로 ▫출▫을 상▫하는 비용을 지원 등

■ **관계자의 역할**

○ 지방공공단체: ▫소상▫의 대상이 되는 ▫로▫트 건의 발▫·지원 (특▫, 산▫정비나 ▫이▫매스이용 등 지역에 밀착된 ▫로▫트)

○ 국가: ▫소상▫ 제도의 구축(가이▫라인 ▫정, 인▫기관의 정비 등), 전국단위에서의 보▫계발, 상담지원

## 2. 기대 효과

○ ▫경부하▫감▫과: ▫소상▫ 대▫을 통하여, 시민·기업 등에 의한 주체적인 ▫실▫과가스 ▫출▫▫감활동을 지원하는 ▫이 가능

○ 산▫보전▫과: ▫소상▫ 자금이 국▫ 임업에 ▫류하여, 국▫임업 활성▫와 지구 ▫난▫대▫으로서의 임업정비, 보전 등의 가속적 ▫진 기대

## 3. 비 고

■ **선행 사례**

○ ▫우치현의 J-VER 창출과 (주)▫미네의 J-VER구▫

- 코우치현 소재 시멘트공장의 보일러 연료를 화석연료에서 미이용 간벌재로 전환함에 따라, 약 1,000t-CO2[32](2007년)의 J-VER이 창출될 예정
- 이것을 도쿄소재의 (주)루미네가 사원의 통근에 관여된 배출량의 탄소활용에 활용하기위해 구입
- 루미네가 J-VER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된 자금은, 코우치현 시멘트 공장이 보일러 연료로 미이용 간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간벌재의 운반을 그 지역의 삼림조합에 위탁하기위한 비용 등으로 충당됨

32) 이산화탄소 환산톤. 이는 버스 100대가 서울, 부산을 13번 왕복할 때 배출하는 양과 비슷함

| 사업명 | ⑤ 숲 경관 재생사업 |
|---|---|
| 관계부처 | 임야청 |

## 1. 개 요

○ 산□ 등의 대표적인 □경인 □□경관의 재생·보전사업

- 일찍부터 전망 좋은 곳과 산채의 명소 등으로 유명한 곳이었으나, 해충피해와 관리부족 등으로 인해 옛 모습을 잃어버린 향토의 삼림에 대해, 고목 제거, 도로주변의 수풀제거, 꽃과 나무의 식재, 전망지의 개발, 간벌, 간판의 재정비 등을 실시하여, 경관재생·편의성의 향상을 도모함
- 이용자 증가 등의 대응, 수목의 손상과 불법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순찰·환경표식 주변의 풀베기 등을 실시

## 2. 기대 효과

○ 방치□ 등의 정비를 통해, □□의 경관향상·보전을 도모

○ 산□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기대됨

| 사업명 | ⑥ 음식물쓰레기 에탄올화 모델사업 |
|---|---|
| 관계부처 | 환경성 |

## 1. 개 요

○ 가정의 음식□□□기를 발□시□ 에□□□하는 모□사업으로 □향□고용재생특별교부금□ 위탁사업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일반□기□□리사업의 일□

○ 일반가정에의 보□·계발이나 수집 운반 업□를 지원하고, 음식□□□기의 □이□에□□□를 촉진

○ 생성한 에□□은 지역에서 가□□과 □□하여, 행정기관이나 관계자에 의하여 E3연료(□이□에□□ 연료)로 활용

### ■ 관계자의 역할

○ 기초자치단체: 시민에의 보□계발활동의 실시, 수집운반업□위탁 의뢰대상의 선정·감독 등

○ 사업자: □이□에□□·E3제조, 판매

## 2. 기대 효과

○ 일반□□기에 대한 의식개□이 □진되고, 자원의 유□이용에 대한 의식이 제고됨

○ 음식□□□기의 유□이용이 □진되고, 기초자치단체의 □□기소각로의 부담이 경감됨

○ □이□에□□의 활용을 통해 CO2 □감□과를 □을 수 있음

○ 음식□□□기 분별수집을 통해 □기□□리업자의 사업 기회가 생기고, 작업자의 고용창출□과를 □을 수 있음

○ □이□에□□ 공장을 시민의 □경교육의 장으로써 활용가능

## 3. 비 고

○ □□□□ 현(□), □□□ 시(□)의 식품□기□의 에□□□ 실□사업: 신에□지·산업기술□□개발기구(NEDO)의 보조금에 의한 설치정비가 되었고, 현재, 사업계□기□을 중심으로 하는 실□연구 중

○ 동경 □동구·초·중학교□식□□기의 에□□□·□이□가스 회수실□연구: 동경가스가 주체가 되어 소규모 실□연구를 실시 중

| 사업명 | ⑦ 야생동물의 생활환경피해대책 |
|---|---|
| 관계부처 | 환경성 |

## 1. 개 요

○ 고령ㅁ와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산ㅁ지역 등에서 경작 ㅁ기지와 관리가 불가능 한 ㅁㅁ의 ㅁ가로 인해 일ㅁ원ㅁ이와 ㅁ 등의 야생조수 출ㅁ이 중가하고 있음

○ 고산지대, 산ㅁ지역 등에서 최근 ㅁㅁ한 사ㅁ에 의해 고산식ㅁ의 ㅁ해 등 자연식생, 생태계 ㅁ해가 ㅁ가하고 있음

○ ㅁㅁ의 관리와 간ㅁ재정리를 실시함으로써 인간 생활지역과 야생조수의 생식지역을 구분하여 인신 상해나 생활ㅁ경ㅁ해 경감을 도모

○ 이를 위해, 각 지방 공공단체가 정한 계ㅁ에 ㅁ각하여 사ㅁ의 개체 수 관리와 방제대ㅁ을 실시하여, 지역생태계와 자연생식 ㅁ해를 경감

○ 장ㅁ의 조수보호 관리를 담당할 인재육성 작업을 지원

### ■ 주요 메뉴

○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농지와 ㅁㅁ의 ㅁㅁ기, ㅁ을 및 농경지와 조수의 생식지 사이의 ㅁ충지대 정비 등

○ 야생조수와의 생활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방ㅁ(ㅁㅁ) 설치

○ 개체 수 조정을 위한 사ㅁ 등 야생조수의 ㅁㅁ 등

○ 수ㅁ면ㅁ취ㅁ 촉진지원 등

### ■ 설비·인원 등의 기준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이 자유설계

### ■ 이용자의 규모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이 자유설계

■ **이용료**

○ 없음

■ **위탁비 수준**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이 자유설계

■ **관계자의 역할**

○ 기초자치단체: 실시주체, 연계체제의 구축 등

○ 광역자치단체: 실시주체, 광역자치단체기금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조성,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연계체제의 구축 등

○ 국가: 사업운영전반과 커리큘럼작성 등에 관한 컨설팅 등

## 2. 기대 효과

○ 지역주민의 안전, 안심확보

○ 야생조수의 적정한 보호관리

○ 지역의 자연식생과 생태계보전 등

| 사업명 | ⑧ 외래종 방재를 통한 환경개선 |
|---|---|
| 관계부처 | 환경성, 농림수산성 |

## 1. 개 요

○ 미국 ▫구리와 ▫트리아, 미국산 담수어 등 지역의 생태계와 농▫수산업에 ▫해를 미치는 외▫▫을 지역관계자와 연계하여 ▫과적으로 방재함으로써, 지역생▫다양성을 보전하고, 건전한 농▫수산업의 촉진 기여

## 2. 기대 효과

○ 각지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외▫▫을 집중적으로 방재함으로써 생태계 및 농▫수산업에의 ▫해가 크게 경감▫ 가능성이 있음

○ 국민의 안심과 안전, 자연▫경 보전을 요구하는 의식에 ▫과적

## 3. 비 고

○ 농▫수산업 및 생태계의 ▫해대▫으로 각지에서 실시 중

○ 지속적으로 방재가 필요한 장소는 지방공공단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실시

| 사업명 | ⑨ 생물다양성 온난화영향 조사사업 |
|---|---|
| 관계부처 | 환경성 |

## 1. 개 요

### ■ 배 경

○ 기□ □ □에 대한 정부간 □ □의 제4□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지구□난□가 진행되면 생□다양성은 심각한 영향을 □는 □으로 예□되고 있음

○ 2007□ 11□에 □정된「제3□ 생□다양성국가전□」에서도 지구□난□에 의한 생□다양성의 위기는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난□영향의 모니터□ 체제의 구축이 실시되고 있음

○ 2006□ 6□에 시행된「생□다양성기□법」에서도 지구□난□ 방지 등에 도□이 되는 시□의 □진이 규정되었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최근 시□ □ □부와 □ □ 이□에서만 생식하던 나가사키나비가 중부지방에서 확인되거나, □ □ □나□의 개□일이 □라지는 등, 각지에서 지구□난□에 의한 □이라 생각되는 영향이 확인되고 있지만 그들의 대부분이 단□적인 정보에 불과해, 체계적인 파□이 필요

### ■ 내 용

○ 농학, 생□학 등의 학위취□자와 자연□경과 생□다양성에 지식이 있는 미취학□업자를 고용하여, 생태계 지표□ 등의 생식·생육정보 수집, 식□의 개□, □새의 □ □정보 등, 지구□난□에 따□ 생□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기초정보의 체계적인 파□을 시행

○ 수집된 기초정보를 민간정보□리기업 등을 통해 집계·해□하고, 과거의 데이터와의 비교 등을 통해 생□다양성과 농□업, 감□병에 대응하는 □난□영향의 예□을 시행

## 2. 기대 효과

○ 지역의 자연□경 정보나 □난□에 의한 영향 등의 체계적 파□

○ 지구□난□에 의한 생□다양성에의 영향을 명□하게 함으로써, 인간생활이나 사회경제 등의 영향을 예□

○ 자연□경분야에서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

| 사업명 | ⑩ 쓰레기 투기 감시 및 방치쓰레기 수거사업 |
|---|---|
| 관계부처 | |

## 1. 개 요

### ■ 내 용

○ 일상적으로 ▫▫기 ▫기가 이▫어지는 장소나 지역에서 미▫활동을 ▫진하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기 ▫기 감시 ▫트▫의 실시

○ 현장에서 발견된 ▫▫기의 회수 및 ▫리를 실시

### ■ 관계자의 역할

○ 국가: ▫ 사업과 연관된 사업실시의 방▫▫정, 예산확보

○ 광역자치단체: 관▫ 시▫으로부터의 모집, 상▫정리(▫▫)

○ 기초자치단체: 감시 ▫트▫·청소 요원의 고용, 사업의 실시

## 2. 기대 효과

○ ▫거리나 시가지 등의 ▫경의 유지, 아▫다운 자연▫경의 유지,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 등에 공▫

| 사업명 | ⑪ 환경보전사업자 투자촉진 사업 |
|---|---|
| 관계부처 | 후생노동성, 금융청 |

## 1. 개 요

○ 고용대▫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경제구조를 ▫▫해가기 위해서는 정규고용을 ▫진하고, 사업 면에서도 장▫성이 전망되▫, ▫경보전에 임하는 사업자에 대해 금▫자산이 우선적으로 ▫자되어 해당 사업이 발전되어 가는 ▫이 중요

○ 이를 위해, 지역의 금▫기관(조사회사 등에 조사위탁도 가능)에 대하여 조사비를 제공(위탁비를 지원) (1건당 1▫만▫ 정도 × 2건 × 47 지자체)

○ 지역의 고용, 사업성, ▫경의 세 가지의 ▫면에서 적▫적인 대▫을 ▫진하는 사업자를 조사·발▫하고, 해당사업자의 주식을 ▫함한 공모형 에▫▫▫ 창설을 촉진

○ 해당▫자▫▫를 공개함으로써 해당▫▫에 대한 ▫자가 ▫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주식 관련 사업자에게 자금공▫이 ▫가하고 해당사업자의 고용이 촉진됨

## 2. 비 고

○ 고용대▫·▫경대▫에 적▫적으로 임하는 기업에 연관된 조사는 향▫ 필요한 분야로써, 금▫기관, 조사회사의 자체조사로 계속▫ 전망임

## 4. 교육 청년 지원

| 사업명 | ① 학교 서포터 |
|---|---|
| 관계부처 | 문부과학성 |

### 1. 개 요

#### ■ 내 용

○ 다음과 ▫이 학교에서 교직원 교육활동을 지원함

-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사회에서 활약하는 인재나 기업 퇴직자, 지역 기술자, 퇴직교원 등을 활용하여 수업 실시나 교직원 보조 지원
  - 예: 수준별 소규모그룹지도, 초등학교에서 전문과목교육의 내실화, 장애아동 돌봄, 학교 도서관 보조, 중학교에서의 무도, 고등학교에서 취직지도 지원 등 교육문제에 대응한 교육활동 보조사업 그리고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연결 등 아동의 과학기술에 관한 이해를 촉진
- 지역 인재를 활용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체험활동의 내실화
  - 예: 아동이 농산어촌에서 자연체험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시, 체험농가 선정부터 체험지도자(instructor)의 파견 등을 조정하는 인재를 고용하는 사업
- 독서활동 추진
  - 예: 학교도서관에 사무직원 배치, 도서 조회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독서활동추진
- 집단따돌림이나 등교거부 등의 문제를 가진 아동이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원 등의 외부인재를 활용하여 교육상담이나 학생지도 내실화
  - 예: 「학교 카운슬러 등 활용사업」및「학교 사회복지사 활용사업」으로 배치되고 있는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 등과 학생의 상담업무를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인재를 활용하고 교육상담체제를 한층 더 내실화
- 학생의 풍부한 마음이나 건강한 신체를 기르는 보조 활동을 내실화 하기위해 스포츠, 문화, 과학 등에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지는 인재를 활용한 사업
- ICT(정보통신기술)에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보조교사 등으로 하여 과학에 받아들이고, 수업지원이나 교내 네트워크의 관리 등을 통하여 ICT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내실화

■ **필요한 인원·고용 인원 등**

- 바람직한 목표 고용인원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음
- 그런데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질을 갖춘 인재를 고용할 필요가 있음
- 학교 측과 사전에 충분히 조정·상담 후에 사업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탁비 수준**

- 고용을 실시하는 인력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설정

■ **유의점**

-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고보조사업을 이름만 바꾸어 실시하는 것은 불허
- 단, 국고보조사업에 추가하여 외부인재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가능

## 2. 기대 효과

○ 아이가 교직원 이외의 다양한 인재와 교류하고 지원 □는 □을 통하여 교육□과 □진

○ 전문기술을 지닌 인재에 의한 충실한 교육활동

○ 교직원이 한 사람□ 아이와 대면하는 시간을 보다 확보할 수 있음

| 사업명 | ②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
|---|---|
| 관계부처 | 후생노동성 |

## 1. 개 요

### ■ 내 용

○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커리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커리어 컨설□트 등의 자□자나 다양한 경력을 지닌 사회인을 커리어 교육보조자로 교육위원회 등에 □치함

○ 각 학교를 순회하여 학생의 직업의식 형성을 지원하는 외에, 고교중□자의 다시 □우기나 교육훈련·취로에 관한 상담·지원

- 직장체험수입기업 등의 개척, 직업·취직에 관한 강화·상담·교재작성, 고교중퇴자 등에 대응한 방문상담·지원 등

## 2. 기대 효과

○ 지원을 □은 학생의 취업에 대한 □미·적성의 구체□나 직업의식을 □□하여 □리터[33]·니트[34]□나, 조기이직의 사전예방의 성과가 기대됨

○ 고용된 사람은 업□경험을 통하여 학교교육현장에서 경력 향상 교육의 노하우를 □□할 수 있음

33) 프리터(Freeter)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정의에 의하면, 연령 15~34세로 재학생과 여성 결혼자를 제외한 자 중, ① 현재 일하고 있는 자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불리어지는 자, ② 완전실업자 중 찾고 있는 일의 형태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인 자, ③ 비경제활동인구 중 희망하는 일의 형태가 '아르바이트/파트타임'으로 가사 및 통학이나 취직 내정도 되어 있지 않은 자임.

34) 니트(NEET: Not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15~34세자 중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나 통학도 하고 있지 않는 자임.

| 사업명 | [3] 직업교육의 외부인재활용사업 |
|---|---|
| 관계부처 |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

## 1. 개 요

### ■ 내 용

○ 비정규노동자나 중고령자 가운데 커리어 컨설▫트·커리어 ▫운▫러 등의 자▫자, 기업의 인사부문경험자·고용지원센터의 취직업▫경험자를 시작으로 사회인·직업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나 자▫요건, 학교재학 중 및 ▫업 ▫에 경력을 형성해 가는 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지닌 커리어 컨설팅 등의 다양한 경력을 지닌 사회인을 보조교사로 하여 학교에서 활용

○ 보조교사에 의한 ▫연·▫▫ 등을 통하여 직업의 실제나 그 ▫▫, ▫▫▫의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학생의 직업의식의 형성에 기여함

○ 보조교사의 경험을 살▫ 취업상담, 직장▫선·확보 등에 의한 학생의 취직지원에도 기여함

## 2. 기대 효과

○ 교원이외의 외부인재에 의한 ▫연 등이나 진로상담을 통하여 학생의 직업의식이나 취직의식의 형성에 기여함

## 3. 비 고

○ 커리어 교육의 교육을 담당할 외부인재로서 사회인을 교원보조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고용)하는 ▫을 ▫▫

| 사업명 | ④ 대학의 지역공헌 및 교육기능 충실위한 업무지원사업 |
|---|---|
| 관계부처 | 문부과학성 |

## 1. 개 요

### ■ 내 용

○ 대학·전문대학에서 지역의 실직자나 비취로자를 고용하여 다음과 ▫은 지역공▫, 교육기능충실을 위한 업▫지원을 시행

○ 경제▫▫의 영향으로 ▫정취소를 당한 학생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 경제단체, 대학 등이 제휴하여 취직상담부터 취로지원까지를 일체적으로 시행하고 고용·취업기회의 창출 및 생활지원을 ▫▫적으로 실시하는 대▫을 지원

○ 사업 실시주체로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실시 외, 국립대학법인, 공립대학법인, 학교법인 등에 대한 위탁이 고려됨

1. 대학 등의 업무지원 예

- 대학·전문대학의 도서관, 실험시설 등을 지역 주민·기업 등에게 야간개방하거나 평생학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보조를 시행
- 학생의 취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의 취직부 등에서 커리어 컨설턴트 등의 자질을 지닌 실직자를 고용하여 취직상담이나 취직활동지도의 업무보조를 시행
- 문화·스포츠 등의 대학·전문대학의 학생활동에 대한 지원을 시행
- 대학·전문대학에서 컴퓨터 조작 지원을 시행하는 PC자원봉사자나 교내의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수 관리를 시행
- 아이를 지닌 여성교원·연구자의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 내에 마련된 탁아시설에서 보육사 등의 자격을 지닌 실직자를 고용하여 운영을 시행
- 청각장애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한 노트 테이킹(강의의 내용이나 주위의 모양을 문자로 전하는 필기통역)의 보조를 시행

- 고용대상

① 실시업무에 따라 대학·전문대학은 실직자·비취로자에 대해서 일정의 자격 등의 요건을 마련

② 고용된 사람은 대학원 수료 후 계속해서 대학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

2. 산(産)·관·학의 제휴에 의한 취직부터 취로까지의 종합적인 지원

- 여러 대학이 참가하는 대학 컨소시엄과 지방공공단체, 경제단체 등이 취직의 정보교환, 취직·취로상담을 합동으로 실시

- 지역의 요구에 대응한 취로에 연결되는 비즈니스 매너 강좌, 자격취득을 포함한 각종 학습기회의 제공

■ **위탁비 수준**

○ 각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양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설계

## 2. 기대 효과

○ 대학·전문대학의 도서관·실험시설 등의 지역주민·민간기업 등에의 야간개방을 통한 지역에서의 평생학□이나 산학제휴의 촉진에 의한 지역의 활성□

○ 대학·전문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의 향상, 취직지원 등의 학생지원기능의 □실□

○ 산·관·학의 제휴에 의한 취직·취로지원의 □□적인 대□의 실현

## 3. 비 고

■ **선행 사례**

○ 학생 등의 취직지원을 위해 커리어 컨설□트를 고용하여 취직상담부터 취직지원에 관한 정보의 데이터□이스 작성을 통해 □과적인 정보제공을 실시

○ 장애학생에 대해 □학부터 학□·□업·취업지원까지를 □함한 □□적인 학생지원 대□ 실시

○ 여러 대학이 참가하는 대학 컨소시□에서 커리어 컨설□트 등을 고용하고 지역의 경제단체, 지방공공단체, 고용지원센터 등과 제휴하여 취직상담, 세미나, 경력 향상 □□ 등의 개최 등을 실시

| 사업명 | ⑤ 대학의 지역공헌사업 |
|---|---|
| 관계부처 | 내각부, 문부과학성 |

## 1. 개 요

○ 지방대학 대부분이 지역 학□의 거□으로서 사회공□사업, 평생학□의 제공, 기초자치단체나 현지 상공단체와 제휴한 지역재생사업에 대□하고 있음

○ 특□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대학을 발전적으로 연계시키는 인재를 육성함

○ 대학 등이 지역의 실정이나 요구에 정통한 인력(지방은행이나 현지기업의 □직자 등)을 □□네이터나 □사 등으로 고용하여 지역공□사업 지원

## 2. 기대 효과

○ 지역활성□, 지역주민에 의한 대학의 인적 □적 자원의 활용

## 3. 비 고

■ **선행 사례**

○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위원회와의 제휴를 통해 전문대학의 전문성을 가진 교원이나 보육자양성교육을 □고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대학 □에 육아 시설 설치하고 지역의 미취로 아동이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류의 장 제공

○ 임상심리 전문가로 있는 대학교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상담실」 설치와 관계기관이나 지역의 전문기관과의 제휴, 지역의 전문기관에의 소개 등

| 사업명 | ⑥ 지역산학연계 직업교육지원 사업추진계획 |
|---|---|
| 관계부처 |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

## 1. 개 요

### ■ 내 용

○ 지역의 초·중등 교육기관과 산업계를 연결하여, 지역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실▫적인 수업이나 취업을 고려한 교육을 시행

○ 초·중학교의 과학교실 지원기업과 학교를 ▫▫네이트하는 기관이나 부문을 설치, ▫▫네이터를 ▫치하는 기업이나 학교에 대하여 노하우 제공

○ 과학교실의 교재준비나 실험보조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초·중학교의 만들기 교육 지원기업과 학교를 ▫▫네이트하는 기관이나 부문을 설치, ▫▫네이터를 ▫치하는 기업이나 학교에 대하여 노하우 제공

○ 공장견학의 기▫이나 안▫ 등의 서비스 제공

○ 초·중학교의 커리어 교육 지원기업과 학교를 ▫▫네이트하는 기관이나 부문을 설치, ▫▫네이터를 ▫치하는 기업이나 학교에 대해 노하우 제공

○ 견학의 기▫이나 수업의 도▫ 등의 서비스 제공

○ 고교생 인▫▫ 지원기업과 학교를 ▫▫네이트하는 기관이나 부문을 설치, ▫▫네이터를 ▫치하는 기업이나 학교에 대해 노하우 제공

○ 인▫▫ 기업현장에서 도▫ 등의 서비스 제공

### ■ 필요 인원

○ ▫▫네이터를 ▫치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각각의 기회준비에의 도▫이나 당일 준비, ▫▫ 등 ▫▫네이터 업▫의 보조로 한 고용창출

### ■ 관계자의 역할

○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지역 학교와 기업과의 연계체제, 실시체제의 구축

○ 국가: 모▫ 제공

## 2. 기대 효과

○ 지역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제공

○ 지역기업의 ▫보와 지역주민과의 커▫니▫이션 활성▫

○ 교원부▫의 ▫▫

○ 학생의 취업관 정립에 의한 니트·▫리터 대▫

## 3. 비 고

■ **선행 사례**

○ 커리어 교육 민간 ▫▫네이터 육성·평가시스▫ 개발사업

○ 사회인 ▫사활용형 교육지원 ▫로▫트

○ 조기 공학인재 육성사업

○ 공업고교 실▫교육도▫ 사업

○ 체계적인 사회인 기초력 육성·평가시스▫ 구축사업 등(경제산업성 모▫사업)

■ **기간 후 취급**

○ 2, 3▫의 이행 노하우의 축적에 따라 보조원의 인력은 감축가능. 보조원 ▫▫네이터 고용 등 경력 향상도 기대

| 사업명 | ⑦ 자연체험환경 학습사업 |
|---|---|
| 관계부처 | 국토교통성 |

## 1. 개 요

### ■ 내 용

○ 해□ □경보전이나 자연재생의 방식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자연체험학□ 실시

○ 현지 고용지원센터, 지역활동조직과 제휴체제를 구성하여 실직자, 고용연장이 안된 파견근로자 등 미경험자의 연수 □ 고용을 시행

- 당초의 연수기간은 2주 정도
- 커리큘럼은 각 운영주체가 실적이 있는 지역활동조직의 협력을 얻어 작성
- 연수 후에 자연체험학습의 기획입안부터 운영까지 시행하는 인력양성을 목표로 함

### ■ 위탁 의뢰대상의 기준

○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자유설계

○ 단, 자연체험학□의 실시뿐만 아니라 실직자 등의 연수를 관리하는 □□네이터를 □치할 수 있음

### ■ 이용자의 규모

○ 기초자치단체가 자유설계

### ■ 관계자의 역할

○ 기초자치단체: 실시주체(위탁 의뢰대상의 선정·감독), 제휴대□의 구축 등

○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기금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조성, 기초자치단체에의 전반적인 컨설팅, 제휴체제의 구축, 장소 제공 등

○ 국가: 사업운영전반에 관한 컨설팅, 장소 제공 등

## 2. 기대 효과

○ □경의식의 향상

○ 지역에 밀착한 운영: 현지 비영리법인이나 민간기업 등에 관리위탁

| 사업명 | ⑧ 차세대 폐기물처리작업원 육성사업 |
|---|---|
| 관계부처 | |

## 1. 개 요

### ■ 내 용

○ 향▫ 수요가 ▫가할 ▫세대 ▫기▫▫리 기술을 보유한 청▫ 기술자를 ▫▫ 고용하여, 기술을 지닌 직원이 ▫선하여 교육을 시행하여 ▫기▫▫리작업원을 육성함

○ ▫기▫▫리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고도의 노하우를 ▫세대에로의 계▫을 촉진함

### ■ 설비·인원 등의 기준

○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법정특별시가 자유설계

- 예: 취직하지 못한 고졸·대졸의 노동자에 대해 기술관리자의 자격을 지닌 자, 또한 오랜 실무경험을 가진 직원을 초빙하는 사업자의 경우 청년기술자의 급여지급을 도모

### ■ 위탁비 수준

○ 광역자치단체·법정특별시의 자유설계

○ 광역자치단체기금에서 광역자치단체·법정특별시▫ 민간기업 등으로 조성을 시행

### ■ 관계자의 역할

○ 광역자치단체: 고용을 시행한 사업자의 심사, 고용 조성 등

○ 국가: 사업운영전반에 관한 컨설팅 등

## 2. 기대 효과

○ 산업▫기▫ 적정▫리 확보

## 5. 관광진흥 지역산업

| 사업명 | ① 매력 있는 관광지개발사업 |
|---|---|
| 관계부처 | 관광청 |

### 1. 개 요

#### ■ 내 용

○ 중장기고용에 이ㅁ지하는 사업

- 인프라 정비사업

① 재원: 「지역고용창출추진비」(총무성)

② 사업주체: 자격제한 없음

③ 새롭게 관광 매력 창출

가. 관광체험형 시설(노천탕, 족탕, 전통산업체험시설 등)의 정비 및 개선

나. 관광자원의 재건, 수복

④ 관광 환경의 정비

가. 관광객 안내소 등의 설치·개수

나. 관광지의 화장실, 산책로 등 정비

⑤ 숙박시설의 유지 등

가. 숙박시설의 지진대책·방화대책

나. 폐업호텔·여관의 철거

- 소프트 사업

① 재원: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후생노동성)「지역고용창출추진비」(총무성)

② 사업주체: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을 활용한 경우 실시주체는 민간기업 등(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직접실시는 불가)

③ 새롭게 관광 매력 창출

가. 농림수산업이나 전통산업, 자연 등을 활용한 모내기·벼 베기 체험, 야산 트레킹, 저인망체험, 전통공예체험, 에코투어 등의 체험투어 개발, 판매 및 인재육성 등을 포함한 체제정비

나.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한 직거래소의 신설, 아침시장의 개최

④ 관광 환경의 정비

가. 관광안내소, 도로의 역에 안내원을 증원하여 관광정보제공을 충실

나. 지역관광정보, 역사, 자연, 산업 등을 안내하는 관광가이드나 외국인 대상 가이드를 시행할 수 있는 통역 안내사를 고용한 관광안내체제 정비

다. 관광지 주차장 등에 경비원을 증원, 또는 방치자전거 정리원 증원

라. 인력거 등을 통한 관광안내, 임대용 자전거의 대출

○ 단기고용에 이ㅁ지하는 사업

- 인프라 정비사업

① 재원: 「지역고용창출추진비」(총무성)

② 사업주체: 자격제한 없음

③ 관광 환경의 정비

가. 관광안내판의 증설, 정비

- 소프트사업

① 재원: 「긴급고용창출사업」(후생노동성)「지역고용창출추진비」(총무성)

② 사업주체: 민간기업 등,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직접실시도 가능

③ 관광 환경의 정비

가. IT 기기를 활용한 관광정부의 전자화(데이터베이스화), 다양한 외국어 안내

나. 여행출발 전 관광지안내 정보 제공시스템(여행일정 작성지원, 관광정보 검색)의 개발

다. 관광지 관광지도 작성

라. 지역이 하나가 된 관광진흥 대책을 견인하는 관광지역 프로듀서 활용

④ 매력 있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

가. 관광지에의 교통 수요조사의 실시

나. 관광객 통계·관광소비액 통계 조사

다. 여행자 만족도조사 실시

○ 위의 사업ㅁㅁ를 선ㅁ함에 따라 매력 있는 관광지 만들기와 함ㅁ 고용창출을 지원

○ 사업ㅁㅁ의 선ㅁ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유설계로 하지만 「향ㅁ고용재생특별교부금」제도를 활용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비영리단체 등이 실시하는 ㅁ에 유의

■ **관계자의 역할**

○ 기초자치단체: 운영의뢰대상의 선정·감독, 시설이나 설비의 정비, 제휴체제의 구축 등

○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기금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조성, 기초자치단체에의 전반적인 컨설팅, 제휴체제의 구축 등

○ 국가: 사업운영전반이나 실시계□ □정 등에 관한 컨설팅, □을 만들기 단체 등에 협력요청 등

## 2. 기대 효과

○ 관광지의 매력 향상에 의한 관광교류인구의 확대에 따□ 지역 커□니□의 활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

| 사업명 | ② 지역산업 판로확대 및 경쟁력강화 |
|---|---|
| 관계부처 | 총무성 |

## 1. 개 요

### ■ 내 용

○ 현지 중소기업 등이 참가하는 협동조□ 등을 조직하여 지역의 특□ 있는 제품에 관한 공통 □□사이트를 구축

○ □□사이트에서 일□하여 제품의 견적의뢰·주문 □수(공동수주), 회원기업에의 조회, 제품준비 등을 실시

### ■ 사업 규모

○ 관계자간의 네트워크□, □□사이트(HP)의 구축, 관리·운영 등을 □함, 약 1,000만□~1□□ 정도

## 2. 기대 효과

○ 지역제품의 판로가 국□외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산업의 매출향상, 지역경제의 활성□를 통한 새로운 고용확대

| 사업명 | 3 IC태그를 활용한 농산물 브랜드화 |
|---|---|
| 관계부처 | 총무성 |

## 1. 개 요

### ■ 내 용

○ 생산ㅁ 안전에 대한 관심이 ㅁ아지는 가운데, 각 지역 농산품 등의 부가가치 확대와 ㅁㅁㅁㅁ를 촉진시키기 위한 농산ㅁ 등 생산정보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련된 일련의 공정에서 전자태그 등 IC태그를 활용한 이력ㅁ적시스ㅁ (traceability)이나 국ㅁ외를 향한 판매서비스 구축

### ■ 사업 규모

○ 관계자간의 네트워크ㅁ, 각ㅁ 시스ㅁ, 사이트(HP)의 구축, 관리·운영 등을 ㅁ함하여 수ㅁ만ㅁ~1ㅁㅁ 정도

## 2. 기대 효과

○ 지역 농산품 등을 안심하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ㅁ 시장가ㅁ을 초과하는 가치 ㅁㅁ, 매출향상에 의한 고용 확대

| 사업명 | ④ IC카드를 활용한 지역교류 촉진사업 |
|---|---|
| 관계부처 | 총무성 |

## 1. 개 요

### ■ 내 용

○ 중고령자가 지역에 참가하여 활약할 수 있도□ 지역공□활동에 대하여 부여하는「지역□인트」시스□ 구축

○ 지역□인트는 IC□□ 등을 활용하여 부여하고, 지역상□가 등에서 이용가능, 또한 인터□을 활용하여 현지상□가 등의 □□이지 등에서 □라인 구□할 경우에도 이용가능

○ 각 이용자는 자□에서 인터□으로 지역□인트의 사용□역이나 사용기한 등을 확인가능

### ■ 설비·인원 등의 기준

○ 현지상□가 등과 제휴하여 부여□은 □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단□기의 설치가 필요

### ■ 이용자의 규모

○ 기초자치단체가 자유설계

○ 실시주체는 인구수에 따라 가능한 한 □은 이용자를 모집하는 □이 □람직함

### ■ 이용료

○ 원칙□료

### ■ 위탁비 수준

○ 지역□인트 확인을 위한 □□이지나 IC□□의 작성·관리, 현지상□가 등에의 □인트 이용단□기의 □□ 등을 □함하여 약 □만□ 정도

## 2. 기대 효과

○ 지역 활동 □가: □직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활동에 참가의□을 □임으로써 지역유대의 □□

○ 현지상□가 등의 활성□: 현지상□가에서도 이용 가능한 지역□인트 유통을 통해 지역의 소비확대를 도모

| 사업명 | ⑤ 웹 통신기술을 활용한 예술활동 촉진사업 |
|---|---|
| 관계부처 | 총무성 |

## 1. 개 요

### ■ 내 용

○ 지역주민의 협력 아▫ 국▫외에서 예술가를 초▫하고 창작활동에 전▫할 수 있는 ▫경 및 거주▫경을 제공

○ 예술가는 창작활동과 동시에 ▫상전▫단▫기 등을 활용하여 학교·▫을회관 등에 기술정보(영상·▫▫▫)를 전▫하고 지역 관계자와 실시간으로 커▫니▫이션을 실시

○ 국▫외에서 예술가모집 ▫ 사이트나 정보교▫ SNS(Social Network System, 회원제게시판)등을 구축하여 적▫적인 모집

○ 초▫한 지역의 주▫정보·거주▫경정보나 일▫의 예술정보를 아▫러 전▫함으로써 국외 예술가가 방문하기 ▫도▫ ▫려함

### ■ 설비·인원 등의 기준

○ 국▫외의 예술가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 사이트의 구축 등)

○ 학교·▫을회관 등의 공공시설에 예술 활동의 영상을 전▫할 경우, ▫상회의 단▫기를 정비

### ■ 이용자의 규모

○ 기초자치단체가 자유설계

○ 단, 외국의 예술가 초청자 ▫자와 통역 ▫자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 필요

■ **이용료**

○ 기초자치단체가 자유설계

○ ▫ 사이트를 유료로 하거나, 학교·▫을회관 등에 예술정보를 전▫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로부터 참가료를 ▫수하는 등 유료▫도 고려가능

■ **위탁비 수준**

○ 모집 ▫ 사이트의 구축, SNS의 관리·운영, ▫상회의단▫기의 설치 등을 실직자, 고용연장이 안된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직▫ 고용, 혹은 이를 고용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만▫~1▫▫ 정도

## 2. 기대 효과

○ 예술가를 초▫하여 현장의 예술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 ▫의 문▫·예술 활동을 활성▫

○ 다수의 예술가를 초▫함으로써 지역 정주인구나 국제도시와의 교류인구가 ▫대

| 사업명 | ⑥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사업 |
|---|---|
| 관계부처 | 문화청 |

## 1. 개 요

### ■ 내 용

○ 2008□ 11□에 「지역의 역사적 □치 유지 및 향상에 관련된 법□(역사□을 만들기법)」이 시행되어 「□을만들기 행정」및 「문□재보호행정」과의 제휴를 통해 「역사적 □치」를 유지·향상하는 대□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음

○ □ 사업은 비영리단체 조직을 활용하여 특□ 소□트 면에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문□재」나 「역사적 거리」를 활용한 □을만들기를 도모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은 사례가 고려됨

- 문화재를 가까이 할 기회 확대

① 문화재의 전시·공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이드 배치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이해 증진

② 청소 등을 통해 문화재의 유지·관리를 추진

③ 건축문화재를 공개하고 건축문화재 안에서 예술작품의 전시나 콘서트의 촉진

④ 아이들에게 지역 전통행사나 민속예능 등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 전국 공립·사립 미술관과 역사박물관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의 개발 지원 대책 등을 추진

- 사업 지원인력 확보 대책

① 문화재 복원 및 복원에 필요한 재료를 제작하는 인력 확보 대책

②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재 가치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문화재와 사람들을 연계하는 인력 확보 대책

③ 문화재보호에 관계된 활동을 편성하여 종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기능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대책

### ■ 필요한 인원·고용인원 등

○ □람직한 고용인원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용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기 □문에 특정할 수 없음

■ **위탁비 수준**

○ 고용을 실시하는 인재나 사업 규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설정

■ **유의점**

○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을 이▫만 ▫▫어 실시하는 ▫은 불▫

○ 단, 국고보조사업에 ▫가하여 외부인재를 활용한 문▫ 활동을 전개하는 ▫은 가능

## 2. 기대 효과

○ 지역주민이 문▫재를 주민공유의 재산이라고 인정하고, 함▫ 보호하자고 하는 의식의 ▫▫

○ 지역 문▫재 등의 매력을 ▫기 ▫게 전▫하여 지역 활성▫에 연결됨

## 3. 비 고

○ 지역밀착형 비영리단체 등이 참가하여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계속 고용하는 ▫을 ▫함하는 ▫이 ▫람직함

| 사업명 | ⑦ 중소식품소매업자 출장형 판매 촉진 |
|---|---|
| 관계부처 | 농림수산성 |

## 1. 개 요

### ■ 내 용

○ 중산간지역(□□□□□), 과소지역과 □이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주민, 농업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출장형 판매를 실시하는 중소식품 소매□이 출장형 판매액을 일정비□ 이상으로 □액하는 계□을 수립한 경우 해당계□의 수립이나 출장형 판매시설 정비에 대한 지원을 실시

### ■ 관계자의 역할

○ 기초자치단체: 실시주체에 위탁 등

○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기금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조성, 기초자치단체에의 전반적인 컨설팅 등

○ 국가: 식품유통기능□리□·고도□지원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 등

## 2. 기대 효과

○ 식품소매에 있어서의 소비자□의성 향상 및 지역상□가 활성□

| 사업명 | ⑧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신상품 안테나샵 개설 |
|---|---|
| 관계부처 | 경제산업성 |

## 1. 개 요

### ■ 내 용

○ 농상공(□□□)연계나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개발된 신상품을 판매하는 안□나□을 상□가에 설치함

### ■ 기 타

○ 사업규모 등은 기초자치단체가 자유설계

○ 지역 상공단체, 농협, 비영리법인 등과의 제휴도 고려가능

## 2. 기대 효과

○ 지역농산□을 활용하는 농상공연계나 지역자원 활성□ 대□ 촉진과 연결되고 지역산업의 활성□에 기여

○ 지역 상□가에서 새롭게 □□들을 모으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기대되□ 중심시가지의 활성□에도 기여

## 6. 방송정보통신

| 사업명 | ① 지상디지털방송 대응 촉진사업 |
|---|---|
| 관계부처 | 총무성 |

### 1. 개 요

■ 내 용

○ 지역주민이 원활하게 지상□지□방□을 시청할 수 있도□ 단독주□, 집□주□, 수신장애 대□ 공청시설 등에서 □지□대응에 관한 설명을 실시

○ □지□ □□비전 등의 설치나 안□나 수리, □이□ □선 공사 실시

○ 지상□지□방□에 관한 상담은 지역에 밀착한 장소에서, 또는 지역에 밀착한 □용의 상담을 하기 □도□ 지방공공단체에서 상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창구나 □센터를 설치·운영함

○ 설명자·공사자·상담대응자에 전문적 지식의 교육·연수를 실시하여 □지□방□으로 □전이행 된 □에도 계속 방□·통신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 기술을 □□할 수 있도□ 함

### 2. 기대 효과

○ 주민의 지상□지□방□대응의 원활□가 도모되고, 지상□지□방□의 장□을 주민이 누□ 수 있음

○ 방□통신 분야에 관한 지식·기술을 □□함에 따라 방□통신 분야에의 취직·경력향상을 지원함

### 3. 비 고

○ 어□ 시(□)에서, 2008□ 12□부터 전용전□□호에 의한 전□상담 대응을 개시

| 사업명 | ② 정보처리기술 관련 취업지원사업 |
|---|---|
| 관계부처 | 총무성 |

## 1. 개 요

○ 지역의 정보산업단체 등과 지방공공단체의 제휴에 의하여 실직자 등에 대하여 트▫이▫▫▫(정보▫리기술자시험 등 자▫취▫지원의 실시를 ▫함)나 기업면담, 인▫▫, 취직▫선 등의 사업을 실시

○ 이를 통해 실직자 등의 기능 ▫▫과 향상, 양호한 고용기회의 확보를 실현

○ 자▫을 취▫한 인력을 고용한 기업에는 임금보조 등의 고용지원을 실시하고 우수한 인력을 고용하는 의▫을 ▫임으로써 고용창출▫과의 확대와 지역 IT 기업 능력향상을 일체적으로 진행

○ 정보서비스·소▫트▫어업계는 대▫적으로 기술자부▫의 상▫에 있기 ▫문에 ▫은 고용창출▫과가 전망됨

## 2. 기대 효과

○ ▫직자 등에 대하여 트▫이▫▫▫(정보▫리기술자시험 등의 자▫지원을 ▫함), 기업면담·인▫▫, 취직▫선 등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인재확보 및 고용창출을 활성▫ 함

○ 우수한 자▫을 ▫▫ 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보조 등의 고용지원을 시행하여 고용 확대와 기업 능력향상을 촉진

## 3. 비 고

■ **선행 사례**

○ (사) ▫나가와현(▫) 정보산업협회의 대▫

- 카나가와 현에서는 2006년~2008년 까지 (사) 카나가와현 정보산업협회와 현지 지방공공단체(카와사키시)가 제휴하여 진술한 유형의 사업을 실시[35]

- 임금보조 등의 고용지원은 실시하지 않음

**< (사) 카나가와현 정보산업협회의 대책실적 >**

| | 2006 | 2007 | | 2008 | | 합계 |
|---|---|---|---|---|---|---|
| | 제 1 기 | 제 2 기 | 제 3 기 | 제 4 기 | 제 5 기 | |
| 수강자수 | 103 | 101 | 101 | 100 | 실시중 | 405 |
| 취업자수 | 88 | 80 | 85 | 82 | | 335 |
| 취업률 | 85% | 79% | 84% | 82% | | 83% |
| 채용기업수 | 60 | 55 | 54 | 63 | | 232 |

○ 기□ 현(□)의 대□

- 기후 현(縣)에서는 2006년~2008년까지 현지의 소프트웨어관련사업자와 제휴하여 니트, 프리터에 대한 편성소프트웨어[36] 기술을 습득하는 트레이닝강좌를 개설하여, 총 36인이 수강하여 6인이 취업에 도달했음

35) 2008년도 상반기까지 니트, 프리터를 중심으로 405명이 수강, 335명의 취업(취업률 83%)됨
36) 가전제품 등의 기기내부에 편성되어 제품기능을 실현하는 소프트웨어

| 사업명 | [3] 학교교무 정보화를 통한 고용창출 |
|---|---|
| 관계부처 | 총무성, 문부과학성 |

## 1. 개 요

○ 교□관련업□(성적□리, 통지표작성, 교육과정□성, 시간표작성 등), 학적관련사□(전출□관련사□, 지도요□관리, 출결관리 등), 서□사□(출□근관리, 출장신청 등, 학교회계, 학교□여) 등의 학교사□(교□)의 정보□를 □진

○ 특□ ICT시스□이 필요할 □□다 네트워크에 □속하여 ASP(응용서비스제공자)나 SaaS(서비스로 제공되는 소□트□어)사업자로부터 ICT시스□의 기능제공을 □는 □이 가능함[37]

○ ASP·SaaS사업자의 □사원규모는 79.9%가「300인 미만」, 71.9%가 「100인 미만」으로 되고 있어(ASP □서 2005), 중소기업이 □지하는 비□은 크다고 간주됨

○ 각 지방공공단체의 교육위원회에서(기초자치단체□의 초·중학교 등) 일□하여 ASP·SaaS의 도□을 진행하는 □은 ASP·SaaS의 노동시장에 대단□ □ 영향을 주는 □으로 보임

### ■ 대상학교의 규모

○ 약 22,000교의 초등학교, 약 10,000교의 중학교, 약 4,000교의 고등학교(국공립학교)(문부과학성 2007□ 학교구체조사)

### ■ 관계자의 역할

○ 기초자치단체 교육위원회: 기초자치단체 □ 초·중학교의 교□정보□ □진

○ 광역자치단체 교육위원회: 광역자치단체 □ 고등학교의 교□정보□ □진, 기초자치단체 교육위원회에의 전반적인 컨설팅 등

○ 국가: 교□정보□의 □과적인 진행방안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 등

## 2. 기대 효과

○ 교□경감과 □□□: 교□에 관련된 정보를 전자□, 공유□ 해 □으로써 문서작성, 결재절□ 등을 □함하여 교직원 업□의 경감·□□□가 가능

○ 교육활동의 질 개선: 교직원의 업□ □□□는 학생과 대면하는 시간이 □가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

○ 정보 안전의 확보: 교□ 정보□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경에서 정보를 일원관리하는 □이 가능해□, 정보누설 등의 위험을 경감됨

| 사업명 | ④ 제조업 종사노동자 및 실직자의 정보통신 업종전환지원 |
|---|---|
| 관계부처 | 총무성, 후생노동성 |

## 1. 개 요

○ 제조업에서 고용연장이 안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에서 일정의 연수를 시행한 다음 사□나 관련회사 등의 소□트□어 개발기술자 등으로 업□전□을 실시

○ 해당노동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는 대□을 실시하는 민간 기업을 지원(업□전□을 위한 사□연수사업을 위탁)

○ 현지 고용지원센터, 정보통신사업자단체, 전문직양성학교, 지역활동조직과 제휴체제를 구성, 그리고 실직자나 고용연장이 안된 파견근로자 등의 ICT소□트□어 개발 등 미경험자에의 ICT소□트□어개발기술 등에 관한 훈련을 고용하에 시행

○ 훈련은 현장직□교육 외에 전수학교·각□학교·대학교의 민간교육훈련기관 등의 재위탁을 통해 실시하는 □도 가능

○ 위탁을 □은 민간교육훈련기관 등에서는 훈련 □의 취직에 관해서 지원 실시하는 □으로 함

### ■ 설비 등

○ 원칙적으로 사□의 훈련시설이나 민간교육훈련기관의 기존시설 등을 활용하는 □으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

### ■ 위탁비 수준

○ 기초자치단체가 자유설계

○ 단, 민간교육훈련기관 등에의 위탁비의 기준으로는 훈련수□자 1인 당 60만□(4개□ 정도의 연수를 가정)수준임

37) ASP·SaaS는 ICT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에 의한 정보화를 가능하게 하기위해 투자비용·인적부담의 관점에서 교무의 정보화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교무처리에 관련한 ASP·SaaS의 활용을 추진.

## 2. 기대 효과

○ 생산감소에 의한 인원 ▫여가 생기고 있는 제조부문노동자에 대해 소▫트▫어 개발 등의 인재가 부▫한 ICT 분야의 기술을 ▫▫시▫ 고용의 불일치를 해소함

○ ICT 산업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으▫, 특▫ ▫해의 ▫러스성장이 전망되는 ICT분야의 서비스·소▫트▫어 생산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지닌 인재가 확보됨에 따라 ICT 서비스분야의 성장력의 유지, 나아가서는 일▫경제의 성장력 회복에 기여

## 7. 정주외국인에 대한 일상지원

| 사업명 | ① 정주 외국인 자녀에 대한 일본어교육 등 지원 |
|---|---|
| 관계부처 | 문부과학성 |

### 1. 개 요

■ **내 용**

○ 공립학교에 재적하는 외국인 학생에 일▫어지도나 적응지도 지원

○ 외국인 자▫의 취학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인재확보를 도모함

○ 이를 위해 일▫계 ▫라질인 등 정주 외국인을 ▫함한 지역인재를 활용하고, 그에 따▫ 사업▫용은 다음과 ▫음

- 학교에 외국학생지원인 등을 배치하여 학교에서 일본어지도 시 보조나 학교와 보호자와의 연락조정 등을 실시
- 교육위원회에 취학상담원 등을 배치하여 외국인 보호자 등에 대한 학교입학 절차나 취학에 관한 상담에 대응하거나 지역 취학지원활동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

■ **필요한 인원·고용 인원 등**

○ 외국인학생 지도 요원 등은 일▫어지도나 교과지도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인재나 외국어 사용이 가능한 인재를 고용하는 ▫이 ▫람직함

○ 취학상담원은 일본 학교의 취학절차나 일본 학교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지닌 인재나 외국어 사용이 가능한 인재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탁비 수준**

○ 고용을 실시하는 인재에 대해 지방공공단체가 자유롭게 설정

### 2. 기대 효과

○ 외국인학생지도 요원 등: 학교의 외국아동의 ▫학체제가 진행되고 공립학교에의 취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가

○ 취학상담원 등: 공립학교에의 취학이 촉진되고 미취학 자▫의 수가 감소함

| 사업명 | ②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대학생활지원 보조사업 |
|---|---|
| 관계부처 | 문부과학성 |

## 1. 개 요

### ■ 내 용

○ 일□방문 직□ 일□에서 생활이 익숙하지 □한 외국인유학생에 대해 외국인 등□이나 은행구□개설 등의 각□절□나 아파트 등의 방 □기, 생활에 필요한 가구 등의 구□과 관련한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

○ 외국인유학생에 관한 안□, 신□생 □영회 이□트의 운영 인력으로 한 사업

### ■ 인원 등의 기준

○ 외국어를 어□ 정도 이해 가능한 자가 □람직함

## 2. 기대 효과

○ 외국인유학생의 일□ 방문 초기 생활불안의 해소

| 사업명 | [3] 정주 외국인 자녀에 대한 일본어교육 등 지원 |
|---|---|
| 관계부처 | 문화청 |

## 1. 개 요

■ **내 용**

○ 정주 외국인의 부모나 자□의 일□어능력 향상을 위해 일정 일□어 능력을 지닌 일□계 □라질인 등의 정주 외국인을 지도자 등(보조를 □함)으로 활용하여 일□어교실을 개설

■ **필요한 인원·고용 인원 등**

○ □ 사업의 일□어지도자 등은 일정한 일□어능력을 지닌 □이 □람직함

■ **위탁비 수준**

○ 고용을 실시한 인재에 대해 지방공공단체가 자유롭게 설정

## 2. 기대 효과

○ 각각의 외국인의 모국어로 일□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은 학□□과가 기대됨

○ 일□어학□의 동기부여, 일□어 학□자의 □가가 전망됨

| 사업명 | ④ 의료통역자 양성 및 확보사업 |
|---|---|
| 관계부처 | 후생노동성 |

## 1. 개 요

### ■ 현 상

○ 제조업 등에 ▫사하는 정주 외국인은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한 경우가 ▫아, 의료서비스를 ▫을 ▫ 언어장▫ ▫문에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지역사회에 ▫게 ▫▫되지 ▫함

○ 따라서 지역의 의료기관이나 주민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음

○ 이들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지원▫의 정비가 크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제도적인 대응이 ▫구되지 않음

### ■ 내 용

○ 주일 외국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 의료기관에의 진▫ 전▫ 언어의 보조를 실시하는 의료통역자를 양성·확보함

○ 각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의 소재지 정보에 관해서도 외국어로 소개함

○ 재류자가 ▫은 외국인의 언어(영어, 중국어, 한국어, ▫▫▫▫어 등)를 ▫역함

## 2. 기대 효과

○ 지역의 일▫기업에 고용된 주일 외국인 등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함에 따라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 사업명 | ⑤ 일본계 외국인 고용기업의 자녀교육지원 |
|---|---|
| 관계부처 | 경제산업성 |

## 1. 개 요

### ■ 내 용

○ 일□계 외국인 등을 고용한 기업·단체 등이 일정기준(일□어·모국어교육, 적정한 보육료 등)을 만□시킨 일□계 외국인 자□교육을 위한 보육원 등(학생교육을 □함)을 운영하는 경우, 고용하는 보모 등 사□원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 일□계 외국인을 보모·사□원 등의 정사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

○ 이를 통해 일□계 외국인 등 자□의 학생보육의 □실□와 함□ 부모가 안심하고 취로할 수 있는 □경을 정비

### ■ 필요 인원

○ 일□계 외국인 등의 집단거주지역의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인원

### ■ 관계자의 역할

○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실시체제의 구축

○ 국가: 선진모□의 제공

## 2. 기대 효과

○ 일□계 외국인 등에 대한 보육원을 정비함에 따라 일□계 외국인 등이 안심하고 취로 할 수 있는 □경을 정비함

○ 양질의 일□계 자□에 대해 보육원 등을 확보하고 일□계 등에 대한 학생보육의 □실□를 기함

| 사업명 | ⑥ 일본계 외국인 일본어 교육지원사업 |
|---|---|
| 관계부처 | 경제산업성 |

## 1. 개 요

### ■ 내 용

○ 일□계 외국인 노동자나 그 가□에게 일□어 교육을 실시, 또는 실시단체를 지원하여 일□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을 확대

○ 동시에 직장에서의 안정교육이나 팀 □ 커□니□이션의 원활□를 통해 생산성의 향상, 지역의 공생사회를 □진함

○ 지역 □ 일□계 외국인이 일□어를 □□ 수 있는 시설·센터의 설치

- 일본어를 어느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이직한 일본계 외국인 노동자를 일본어 강사나 일본에서의 생활지원자로서 육성
- 일본어강사 보조원이 중심이 되어 강좌의 도움이나 홍보지 등의 작성

### ■ 필요 인원

○ 일□계 외국인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적□

### ■ 관계자의 역할

○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시행체제의 구축

○ 국가: 선진모□의 제공

## 2. 기대 효과

○ 일□계 외국인 노동자의 커□니□이션 능력 향상에 따라 공장현장 등에서 생산성 향상, 향□ 노동자부□에 대하여 우□한 노동자의 육성

○ 일□계 외국인 노동자의 자□도 □함한 커□니□이션 능력 향상으로 일□이나 지역 규정 등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 하여 안심·안전한 지역사회의 구축에 기여함

| 사업명 | ⑦ 일본계 외국인 일본어 교육 및 직업훈련지원사업 |
|---|---|
| 관계부처 | 경제산업성 |

## 1. 개 요

### ■ 내 용

○ 일□계 외국인 등이 □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들에 대해 일□어교육·직업훈련사업 등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해당사업의 비용(교재비, □사비, 회장 임대료 등)의 일부를 보조하고 해당사업 확충을 도모

○ 위의 단체에서 일□어가 능숙한 일□계 외국인 등을 일□어□사나 생활지도원, □보지작성 등의 사□ 보조자로 채용한 경우, 그 경비를 보조함

○ 일□어가 능숙한 일□계 외국인 등을 그들 자□가 다니는 초·중학교에 파견하여 일□계 외국인 등의 자□ 학□ 보조, 생활상담 등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 그 경비를 보조함

○ 이를 통해 일□계 외국인 등에 일□어교육 및 직업훈련사업의 확충함으로써, 일□계 외국인 등의 능력 및 고용 가능성을 향상

○ 일□계외국인 자□의 교육의 □실□를 기함

### ■ 필요 인원

○ 일□계 외국인의 집단거주지역의 규모 등에 따□ 필요한 인원

### ■ 관계자의 역할

○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실시체체의 구축

○ 국가: 선진 모□의 제공

## 2. 기대 효과

○ 일□계 외국인의 일□어능력·기술향상에 의한 취로 가능한 업□·직□의 분야가 확대되고 일□계 외국인 등의 고용가능성이 □아□

○ 또한 공장현장 등에서의 생산성 향상, 향□ 노동자부□을 보충하는 우□한 노동자의 육성

○ 일□계외국인 등의 자□도 커□니□이션 능력 향상으로 지역규정 등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 되어 안심·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과도 기대됨

## 8. 방범 방화

| 사업명 | ① 통학로 등 방범활동 |
|---|---|
| 관계부처 | 경찰청 |

### 1. 개 요

■ **내 용**

○ 경비원을 고용하여 아이를 범죄▫해나 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통학로나 공원 등에 방범▫트▫이나 어▫이 보호구역에서 ▫리게이트의 설치·▫거 등을 실시

○ 살인사건, 소매치기 등의 ▫거리범죄를 미연에 방지를 위해 상▫가, 역, ▫▫가 등의 방범▫트▫을 실시함

■ **사업 주체**

○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민간 기업에 위탁하여 실시

### 2. 기대 효과

○ 아이의 범죄▫해 또는 교통사고의 방지: 통학로 등에서 방범▫트▫, 어▫이 보호구역에서 ▫리게이트의 설치·▫거 등의 실시를 통하여 아이를 범죄▫해 또는 교통사고에서 지▫

○ ▫거리범죄의 미연방지: 상▫가, 역, ▫▫가 등의 방범▫트▫을 실시하여 살인사건, 소매치기 등의 ▫거리범죄를 미연에 방지함

○ 실직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실직자, 고용연장이 안된 파견근로자 등을 경비원으로 고용하여 취업훈련을 실시

## 9. 문서전자화 조사 등 행정사무, 정보제공

| 사업명 | ① 건강질병대책 보급개발 및 상담사업 |
|---|---|
| 관계부처 | 후생노동성 |

### 1. 개 요

■ 내 용

○ 인□ □ □자 등 질병대□ 보□개발·상담사업

- 발생이 염려되는 신형 인플루엔자에 관련한 기초지식이나 발생시에 있어서 적절한 행동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 매년 유행하는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감염방지 및 만연방지에 관한 지식을 넓게 보급시키기 위한 팜플렛, 포스터 등의 작성
- 고령자 등 고위험 계층에 대한 계절성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의 권장
- 고령자시설 등에 대한 감염방지에 관한 정보제공

○ 신형 인□ □ □자 인지실태·리스크커□니□이션 □진사업

- 지역주민에 대하여 신형 인플루엔자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함
- 신형 인플루엔자의 발생 전에 개인·가정에서 실시해야 할 준비 및 발생시의 올바른 행동이나 대응 등에 관한 올바른 지식보급개발을 실시
- 보급개발 내용은 지방자치체가 자유설계(「개인, 가정 및 지역의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가이드라인」 등)

○ 성감□ □에 관한 대□보□개발·상담사업

- 성감염증의 감염 및 만연 방지에 관한 지식을 확산하기 위한 팜플렛, 포스터 등의 작성
- 특히 청년층에 대한 성감염증의 기초지식의 보급을 실시

○ 감□ □에 관한 상담창구의 설치

- 신형 인플루엔자 및 계절성 인플루엔자, 성감염증에 관련한 주민불안의 해소, 보급개발을 위해 지자체에 전화 상담창구를 설치
- 성감염증에 관해서는 그 특성상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한 전화 창구를 설치

○ 치주질▫ ▫진, 골다공▫ ▫진 보▫ 개발사업

- 진찰대상자에 대한 진찰권장
- 진찰권의 발송, 결과점검의 입력, 정밀검사권장(엽서송부), 정밀검사결과입력 등
-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보급·개발활동

## 2. 기대 효과

○ 매▫ 유행하고 있는 인▫ ▫ ▫자에 관한 주민의 지식향상을 도모함에 따라 감▫자 수 감소 예상

○ 의료비의 ▫감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이 ▫려되고 있는 「신형 인▫ ▫ ▫자」의 발생시 감▫ 예방에도 도▫

○ 신형 인▫ ▫ ▫자에 관련한 지식에 관해서 지역주민의 형상파▫, 보▫ 개발현상의 파▫ 시행을 통한 적확한 대▫의 기▫·▫안이 가능

○ 성감▫ ▫은 그 성질상 상담 장소에 한계가 있어 특별▫ 청▫층부터는 상담하기 어려운 ▫용을 ▫려하여 전국의 지자체 단위에서 넓게 창구를 설치

○ 또한 보건소와 제휴하여 ▫사체제를 충실▫하여 ▫▫적인 감▫대▫에 연결이 기대됨

○ ▫진진▫ ▫의 향상에 의해 치아 상실예방이나 초기에 골▫감소자를 발견하여 골다공▫의 예방 가능한 건▫ ▫진을 도모하는 ▫이 가능

## 3. 비 고

### ■ 선행 사례

○ 국가에서 매▫ 민간에 위탁하여 인▫ ▫ ▫자를 시작으로 한 감▫ ▫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있음(연도▫다 일반경쟁▫ ▫을 실시하는 업자를 결정하고 있음)

○ 국가에서 매▫ 민간에 위탁하여 성감▫ ▫의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있음.

### ■ 과거의 실적

○ 비영리법인 ▫이▫ ▫▫칼 사이언스 연구회

○ 주식회사 보건동인사

○ 재단법인성의 보건의학재단

| 사업명 | [2] 지자체의 아웃소싱 관련 고용취업 창출사업 |
|---|---|
| 관계부처 | 총무성 |

## 1. 개 요

○ 지방공공단체의 관청 ▫ 업▫의 아웃소싱사업 등에 재▫근▫를 활용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지역 ▫ 고용을 실현

- 관청 내 업무의 사례

1. 조사집계 업무
2. 데이터 입력
3. 홈페이지 작성
4. 앙케이트 조사
5. 행정안내 등의 콜센터 업무

## 2. 기대 효과

○ 재▫근▫를 활용함에 따라 도시뿐만 아니라 취업기회가 부▫한 중산간지역 등 지자체 ▫의 지역 인재의 활용을 도모가능

○ 아웃소싱의 ▫과를 넓게 지역진▫에 연결하는 ▫이 가능

○ 재▫근▫를 활용함에 따라 고령자, 장애자, 육아나 간호를 실시하는 여성 등의 취로기회의 확대가 기대가능

| 사업명 | 3 공문서 기록관·도서관·박물관 소장문서 등 전자화 |
|---|---|
| 관계부처 | 총무성 |

## 1. 개 요

### ■ 내 용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공문서 기□관, 도서관, 박□관이 소장한 문서나 사료 등의 전자□를 시행하여, □□이나 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아□이□□를 도모

○ 전자□에 관련된 스캐□이나 미터데이터의 □력 작업 등의 업□를 현지민간기업 등에게 아웃소싱하여 지역 고용 창출을 도모.

○ 실직자, 계약연장이 안된 파견근로자 등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활용, 미경험자에의 연수를 고용 하에 시행(자치체가 직□ 고용하여 실시하는 □도 가능)

○ 연수는 전수학교·각□학교·대학 등의 민간교육훈련기관 등에의 위탁에 의해 실시

○ 연수기간은 1주~3개□ 정도로 하고, 문서정보관리사 등의 자□취□을 목표로 함

### ■ 설비·직원 등

○ 설비는 원칙적으로 사료 등을 소장하는 공문서기□관, 도서관 등의 기존설비를 활용하는 □으로 함

○ 단, 부□한 장소에는 렌탈·리스 등으로 보충하는 □도 가능

○ 일부 직원은 고용 중의 연수 대상자 또는 수료자로 하여 고용지원센터와 제휴하여 실직자, 계약연장이 안된 파견근로자 등을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채용

■ **위탁의뢰대상 수준**

○ 기초자치단체가 자유설계

○ 단, 목표로는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입력작업 등 수탁사업자

가. <화상작성비용> 50엔 (화상촬영단가) × 150 (1매당 촬영개수 수) × 장서수

나. <OCR 경비> 280엔 (교정작업) × 150엔 (1매당 촬영개수 수) × 장서수
(1매당 촬영개수 수를 150개수로 상정한 경우)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민간교육훈련기관 등

가. 연수 수강자 1인 1월 당 5만 엔(제2급 문서정보관리사의 자격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상정)을 참고

## 2. 기대 효과

○ 공문서나 각□ 사료 등의 전자□를 통해 각□ 연구나 교육용 □□□ 등을 이용하기 □게 되고 지역의 정보자원의 유□한 이용이 가능하게 됨

○ 전자□ 된 문서나 사료 등은 이□ 유비쿼터스 사회의 공공인□라로 하여 활용가능

○ 실직자 등이 훈련을 통하여 문서정보관리 등의 기술과 자□을 취□함으로써 기업의 정보관리 등의 전문가로 취직의 기회가 확대됨

| 사업명 | ④ 유적 출토품 역사적 자료·민속 문화재 정리 및 공개를 통한 지역문화 진흥사업 |
|---|---|
| 관계부처 | 문화청 |

## 1. 개 요

### ■ 내 용

○ 각 지역의 역사를 아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 유□, 유형의 민속 문□재에 관하여, 박□관·미술관이나 문□재센터, 역사민속자료관 등에서 보관되고 있는 □의 정리 등을 실시

○ 이들이 공개 활용사업 등에 도□이 되게 함에 따라 지역문□의 진□을 도모함

- 예를 들면, 문화재에 관해서는 발굴조사 후에 미정리가 되고 있는 출토품, 자료의 정리나 한번 정리한 것에도 기능적으로 보존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수장고에의 재정리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이 고려됨
- 유적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정비, 역내의 사적의 유지관리 등도 고려가능

○ 역사적 자료에 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근대(□이지시대) 이□의 자료가 지방의 자료관이나 박□관에서 다수 수장되고 있는 경우가 □고, 정리되지 않은 □도 □아 □ 사업을 활용하여 자료를 정리하는 □도 고려가능

○ 유형민속문□재는 수장한 채 정리가 충분□ 되지 않은 □이 □아 □ 사업을 통하여 형태상의 특□, 사용법, 제작방법 등의 정보를 정리하고 보다 한층 활용에 기여하는 □도 가능

○ 이들의 취□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조사가 가능한 □이 □기 □문에 인적인 보전으로 충분□ 정리 가능함

○ 각 지역 역사를 □기 위한 귀중한 자료, 유□, 유형민속문□재에 관해서는 단순□ 수장보관을 도모하는 □만이 아닌, 필요한 정리·수복재생(修復再生) 등을 시행하는 □으로 그 가치의 최대□를 도모함

○ 공개 활용을 시행함으로써 지역문□의 진□을 도모하는 □이 가능하게 됨

■ **필요한 인원수·고용 인원 등**

○ □람직한 고용 수에 관해서는 해당 자치체 등이 가지고 있는 미정리 자료, 유□, 유형민속문□재가 여러 가지이기 □문에 설정할 수 없음

■ **위탁비 수준**

○ 고용을 실시한 인재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설정

## 2. 기대 효과

○ 지역의 문□재 정리 작업, □경정리 등이 진행됨에 따라 문□재의 보호에 기여함

| 사업명 | ⑤ 지자체 식품위생관련 업무 임시강화사업 |
|---|---|
| 관계부처 | 후생노동성 |

## 1. 개 요

### ■ 현 상

○ 국ㅁ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 기초를 둔 감시 지도는 국산품과 수ㅁ품 모두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및 보건소 설치 시(ㅁ, 이하 '광역자치단체' 등」으로 함)가 식품위생 감시원을 중심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음

○ 최근 중국산 냉동만두에 의한 약ㅁ중독사건, 중국산 우유 및 유제품의 멜라민 사건 등이 연ㅁ아서 발생하고 있기 ㅁ문에 식품의 안전에 대하여 국민관심이 ㅁ아ㅁ, 광역자치단체 등의 식품위생관계업ㅁ에 대해 요구가 ㅁ대되고 있음

### ■ 내 용

○ 광역자치단체 등이 식품위생감시원의 자ㅁ요건을 충ㅁ시킨 자(대학 등에서 의학, 치의학, 약학, 수의학, 축산학, 수산학 또는 농예ㅁ학의 과정을 거두고 ㅁ업한 자, ㅁ생노동대신의 등ㅁ양성시설의 과정을 수료한 자 등)를 임시직원으로 고용하여, 식품위생감시원의 업ㅁ에 ㅁ사시키는 ㅁ이 가능

○ 그 외에 광역자치단체 등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자ㅁ요건을 충ㅁ시킨 자를 임시직원으로 고용하여 「건ㅁㅁ진법」에 기초를 둔 건ㅁ 보관·유지·ㅁ진ㅁ과 등에 관한 ㅁ위과대광고 등의 탐ㅁ, 식품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ㅁ니ㅁ이션의 일ㅁ으로 한 ㅁㅁ이지의 개선이나 의견교ㅁ회의 개최 등의 업ㅁ에 ㅁ사시키는 ㅁ이 가능

○ 모두 원칙적으로 1ㅁ 이상의 고용기간으로 함

## 2. 기대 효과

○ 「식품위생법」에 기초를 둔 감시지도 등의 식품위생 관계 업ㅁ를 실시하는 체제의 ㅁㅁ

○ 국민의 건ㅁ보호에 이ㅁ지 함

| 사업명 | ⑥ 장애인 시설보급 개발사업 |
|---|---|
| 관계부처 | 후생노동성 |

## 1. 개 요

### ■ 내 용

○ 장애인 시설에 관한 리▫렛 등의 ▫▫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민 이해를 ▫진시키고 장애인시설의 보▫·개발을 도모

○ 구체적 사례

- 「장애인 자립지원법」의 이념, 제도 등에 관한 홍보를 시행
- 외관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발달장애나 내부장애에 관하여 국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리플렛 등을 배포함
- 보조견에 관하여 개발추진원이 기업,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신체장애인 보조견법」의 취지의 개발에 의무, 이해를 넓힘

### ■ 설비·인원 등의 기준

○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자유설계

### ■ 이용자의 규모, 이용료, 위탁비 수준, 관계자의 역할

○ 광역자치단체 등이 자유설계

| 사업명 | ⑦ 지역정보정비사업 |
|---|---|
| 관계부처 | 국토교통성 |

## 1. 개 요

### ■ 내 용

○ 토지이용도, 지질도, 재해예측도(hazard map) 등의 주제도, 도시계획도, 지형도, 지명정보대장정보, 공중사진 등 지역에 밀착한 이용가치가 높은 다수의 지도를 전자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주민이나 기업도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 지방공공단체에서는 지도가 ▫이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 시▫하게 전자▫ 할 필요가 있음

○ 전자▫ 된 지도를 기▫으로 ▫▫정보나 지역정보를 현지 조사함에 따라, 수집하고 전자▫ 한 정보를 지도 데이터와 함▫ ▫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을 정비하고 정보의 유▫한 활용을 ▫진함

- 지도의 전자화

  지방공공단체에서는 기반지도정보의 원 데이터가 되는 지도가 종이로 관리되고 있어 시급하게 전자화의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전자화하고 해당부국의 틀을 넘어 종합적으로 정비, 유지관리를 실시

- 지역정보의 현지조사에 의한 수집과 전자화

  행정이나 주민서비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역정보를 현지조사 등에 의해 수집하여 효율적 갱신작업이나 안전안심 지도 작성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① 행정의 효율화, 고도화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

  건물, 도로, 하천, 등산도, 기준점 등이나 주소, 교차점, 한계취락관련 정보, 복지간호시설관련정보 등

  ② 안전안심, 주민서비스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

  교통사고 발생지점, 범죄발생지점, 공사지점, 환경정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정보 등을 수집하고 전자화 함

- 지역정보의 종합적 이용

  행정의 효율화, 고도화, 지역진흥, 주민서비스를 위해 수집 전자화한 지역정보를 지도데이터와 함께 종합적으로 웹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

① 행정에서의 활용

② 주민서비스를 위한 정보제공

③ 지역진흥·관광촉진 등을 위한 정보제공

■ **위탁비 수준**

○ 지도(축적 1/2,500)의 전자▫

-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1/2,500 지도를 종이로 관리하고 있는 면적 3.1만 ㎢
- 전자화작업 190천 엔/㎢
- 이에 더하여 현지조사를 위한 경비도 필요

## 2. 기대 효과

○ ▫ 사업의 성과는 지리공간정보를 고도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으로, 「지리공간정보활용▫진기▫법」의 이▫에 따▫

○ 지도 등의 전자▫ 및 ▫▫적 활용에 따▫ 행정의 ▫▫▫ 및 고도▫

○ 현지조사를 망라하여 실시함으로써 지역에 밀착한 최신정보의 파▫과 제공

○ 업▫를 통한 현지조사 및 정보기술의 고용창출, 정보수집의 ▫류에 따▫ 특별한 자▫이나 경험이 없는 다수의 인재를 활용하는 ▫이 가능

○ 지도 등을 전자▫ 함에 따라 지리공간정보의 활용을 위한 산업이 활성▫되고 이▫적인 고용도 기대됨

## 3. 비 고

○ 「지리공간정보활용▫진기▫법」에 기초를 둔 기반지도정보의 활용에 따▫ 지역정보 위치의 정▫성의 확보 및 공공▫▫에 기초를 둔 필요한 정밀도와 중복적인 ▫▫ 등의 ▫제

| 사업명 | ⑧ 지리공간정보의 전자화 |
|---|---|
| 관계부처 | 국토교통성 |

## 1. 개 요

### ■ 배 경

○ 각 지방공공단체에서는 ▫이에 기반 한 지리공간정보를 전자▫하▫, 지리정보시스▫(GIS)상에서 지역 정보를 중▫하여 활용하거나 이러한 요구가 ▫으나, 예산 및 작업▫의 제약이 있어 좀▫럼 ▫진되지 ▫하고 있는 상▫

○ 지방공공단체의 전자▫ 된 지리공간정보에 대해서는 ▫지▫ ▫▫▫의 공▫자회사, 지도제조회사, 대학과 ▫은 연수기관 등 민간의 요구도 ▫음

### ■ 내 용

○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경우에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스스로 및 광역자치단체 하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이의 지리공간정보를 수집하여 전자▫를 일▫하여 민간기업 등에 의뢰

○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경우에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관청 ▫에서 소유하는 지리공간정보의 전자▫를 일▫하여 민간기업 등에 의뢰

○ 전자▫에 관해서는 간이 소▫트에서 작업가능

○ 작업자에게는 기초적인 GIS관련기술을 ▫▫

○ 각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소유한 행정정보의 다수는 지리공간정보로 이를 일▫하여 전자▫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등에게 작업인원의 대▫▫원이 불가결

○ 전자▫한 지리공간정보를 기반지도정보 등 대축적의 기반지도데이터(공통▫지도)에 중▫하는 ▫으로 행정사▫의 ▫▫▫, 고도▫에 연결되는 ▫ 외에 이를 활용한 민간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등의 창출에 연결

■ **관계자의 역할**

○ 기초자치단체: ▫이 기반의 지리공간정보의 제공 등(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도 해당)

○ 광역자치단체: ▫이 기반의 지리공간정보의 제공,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지리공간정보의 수집, 광역자치단체기금을 활용한 민간위탁(위탁의뢰대상의 선정·감독) 등

○ 국가: 사업의 진행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 등

## 2. 기대 효과

○ 각 도시 ▫을▫다 개별적으로 정비·이용·관리되고 있던 ▫이▫이스의 지리공간정보를 일▫하여 전자▫ 함에 따라 행정사▫의 ▫▫▫가 도모됨

○ ▫▫는 GIS에서 활용할 수 없었던 행정정보가 민간에도 제공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등의 창출에 연결

○ 작업자는 전자▫작업을 통하여 기초적인 GIS관련기술을 ▫▫가능

○ 현지 민간기업 등에 위탁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지역에서의 고용이 창출

| 사업명 | ⑨ 전국중소하천의 생태맵 작성사업 |
|---|---|
| 관계부처 | 환경성 |

## 개 요

### ■ 배 경

○ 2004□에 수생생□보전을 위한 수질□경기준을 □정하여 현재 국가에서 현(□) 경계수역에서의 유형 맞춤을 시행하고 현에서는 이□ 현 □ 수역에서의 유형 지정의 작업이 필요하게 됨

○ 공장□수 등에 의한 수생생□을 □함한 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생생□의 상□을 지역 공장□수 등의 영향을 □지 않는 수역과 비교하는 □이 필요하지만, 현 등이 관리하는 수역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거의 수집되지 않고 있음

○ 이를 위해 현 등이 관리하는 전국의 중소하□에서 어류 등의 수생생□과 □생생□의 생식상□의 전(全) 조사를 시행하는 생태지도의 작성을 실시

○ 이러한 활동에 의한 고용대□뿐만 아니라 수자원 □경보전 대□의 □진에도 활용함

### ■ 내 용

○ 사업 □용

-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중소하천에서 어류 등의 수생생물이나 저생생물의 생식상황을 고밀도로 현지조사, 어업자 등으로부터 청취조사 등에 의해 정보를 수집함

○ 사업 대상지

-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중소하천

### ■ 실시 방법

○ 광역자치단체의 교부금을 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의 민간단체, 민간기업 등에 청부계약을 실시

## 10. 기 타

| 사업명 | ① 위법광고물 제거 긴급지원 |
|---|---|
| 관계부처 | 국토교통성 |

### 1. 개 요

■ **내 용**

○ 위법 옥외광고▫은 경관의 ▫해요인으로써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2004▫「옥외광고▫법」개정에 의해 간이제거의 대상이 확대됨

○ 그▫지만 위법전단, ▫간판 등이 실제로 ▫을 가운데에 ▫이 보이고 있으▫ 지방공공단체 직원의 간이제거 실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위탁에 의한 위법광고▫을 ▫거하는 ▫을 지원함

■ **사업 계획**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옥외광고▫조례에 기초를 둔 사▫의 소장단체. 위탁의뢰대상의 선정, 감독을 실시

○ 비영리법인 등의 민간단체: 광역자치단체 혹은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위탁을 ▫아 위반광고▫의 제거를 실시

○ 국가: 컨설팅 실시

### 2. 기대 효과

○ 민간주도에 의한 계속적인 위반광고▫▫거의 활동이 촉진되어 ▫과적으로 경관이 향상됨

| 사업명 | [2] 역주변 공터 등을 활용한 자전거 주차장 정비사업 |
|---|---|
| 관계부처 | 경제산업성 |

## 1. 개 요

### ■ 내 용

○ 역 앞 공터나 상▫가 통로에는 쇼핑▫, 통근▫이 자전거를 방치하는 경우가 ▫음

○ 그 대▫으로 역 주면 공터 및 상▫가의 빈 가게·빈 지역을 ▫용한 자전거 주▫장의 정비를 도모

○ 자전거 주▫지도 및 자전거 주▫정비를 실시하는 관리원을 채용하여 순▫ 및 자전거 주▫정리를 실시

### ■ 설비·인원 등의 기준

○ 원칙은 기초▫지단체가 자유설계

○ 상▫가 사▫국과의 제휴(위탁도 가능)

○ 단, 직원은 자전거 주▫대수, 영역규모에 따▫ ▫체 자전거 주▫장, 기계식 자전거 주▫장, 노상 자전거 주▫장 등을 정비
자전거 주▫장 규모에 따▫ 관리원을 고용(고용지원센터, 실버인재 등과의 제휴)하고, 상▫가에서는 상▫가 조▫과의 제휴(위탁사업)도 가능

### ■ 이용자의 규모

○ 기초자치단체가 자유설계. 수▫ 대~

### ■ 이용료

○ 기초자치단체·조▫이 자유설계

○ 단, ▫정, 반일단위로 하여 사▫▫의 ▫▫를 도모

## 2. 기대 효과

○ 자전거 주▫장 이용자가 ▫가함에 따라 상▫가의 활성▫, 방치 자전거의 감소

| 사업명 | [3] 농업용 저수지 긴급점검 |
|---|---|
| 관계부처 | 농림수산성 |

## 1. 개 요

### ■ 내 용

○ 최근 집중호우나 태▫, 지진 등에 의한 막대한 자연재해가 ▫이 발생하고 지구▫난▫에 따▫ 중장기적인 재해위험의 ▫대가 우려되고 있지만, 전국에 존재하는 약 21만개의 ▫수지 중 매▫ ▫수지 ▫해 시 하류주민이나 농지, 가옥 등에 막대한 ▫해를 가▫▫는 등 위험 또는 재해에 취약한 ▫수지가 ▫이 존재함

○ 호우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수지의 ▫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 ▫수지▫▫을 통하여 제방붕괴의 위험도나 주▫에의 영향도 등을 확인하고 이▫ ▫수지의 ▫▫적이고 ▫과적인 정비에 활용함

### ■ 점검방법 및 대상

○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수지의 부존상▫ 등에 대해 ▫▫방법이나 대상을 결정

## 2. 기대 효과

○ ▫수지 재해의 위험도나 주▫의 영향도에 관해 파▫

○ 상▫에 대한 대▫이 ▫▫적이고 ▫과적으로 선▫가능

| 사업명 | ④ 농촌마을 배수시설 유지관리 및 감시업무 |
|---|---|
| 관계부처 | 농림수산성 |

## 1. 개 요

### ■ 내 용

○ 농□ □을 □수시설에서는 유지 관리하는 상주인력을 □치하지 않고, 전문기술자에 의한 순회관리와 지역주민 등에 의한 일상□ □·관리를 조□한 유지관리 체제가 기□

○ 이 중, 지역주민에 의한 일상□ □·관리는 □출산 고령□ 등에 의한 인력부□이 현□하기 □문에 시설의 적절한 기능유지가 □려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시설(농□ □을 □수시설 5,000 지구 중, 중산간지역 등 적절한 기능유지가 □려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상□ □·관리(장□ □ □기, 청소 등)를 실시

## 2. 기대 효과

○ 적절한 관리: 농□ □을 □수시설의 이상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고, 시설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됨

○ 이미지 개선: □수□리시설이라는 □만으로 경원되기 십상이지만, 깨끗하게 정비된다면 이미지 개선에 이□지함

○ 지역에서의 고용: 농□ □을 □수시설은 전국에 5,000개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므로 지역구직자를 고용하기 용이함

# 부 록

## <일본의 고용대책 사례 : 206개 전체목록>

| 분야 | 일자리 사례 |
|---|---|
| 수발·육아·의료 | Flexible 지원센터, 보육소 고용촉진사업, 지역의 다양한 육아지원촉진사업, 장애자 지역취로촉진사업, 의사사무작업 보조자 설치지원사업, 병원내 아동보육운영사업, 병원안내업무 등 의료서비스 및 환자서비스향상사업, 왕진 및 방문간호사 이송서비스사업, 특정건강진료 및 특정보건지도 실시율 향상사업, IC태그 활용 아동 안전활동, IC태그 활용 고령자 안전확보, 고령자 종합지원 콜센터, 여성의사 상담사업, 주소미상자에 대한 결핵대책추진사업, 예방접종 장려 추진계획, 건강운동지도사·건강운동 실천지도사의 취업조성사업, 지역 육아 지원고용촉진사업, 친숙한 장소에서 일시 탁아사업, 출산·육아 응원도우미사업, 다양한 육아인재 양성연수사업, 재취업 희망 여성 취직지원사업, 아동학대방지협력단 확보사업, 아동양호시설 등 지원향상사업, 모자가정의 취업지원강화사업, 형무소출소자의 일상생활지원사업, 생활보호제도의 원활한 실시지원사업, 장애자 지역생활지원사업, 고령자 생활지원활동사업, 특정건강진료 및 특정보건지도 종사자 확대사업, 간호보조 지원사업(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운영병원), 영양사보조 지원사업(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운영 병원) |
| 농림 수산업 | 농업분야의 단기 고용창출사업, 원예산지 단기 고용확보·신규진입촉진사업, 도농교류 추진관련 신규고용창출사업, 경작포기지 개선사업, 바이오매스 활용관련 간벌재 등 수입이용체제정비사업, 간벌 및 간벌재 이용촉진, 선구적 사업연계·고용지원사업, 수출촉진컨설팅, 중소식품소매업자의 산지공동조달사업, 식품소매업무기능 강화, 사료용 쌀 생산 및 유통사업 지원사업, 농상공 연계설비정비사업, 국산조사료 촉진사업,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금 활용 고용창출사업, 국산원재료 공급력 강화대책사업, 신토불이 모델타운사업, 퇴비유통·이용촉진지원사업, 전업농 경영다각화 및 경영규모 확대 추진사업, 농산어촌 지역 활력 발굴사업 관련 고용창출, 토지개량시설의 안전대책지원, 지역농산물 직판장 활용사업, 농지재생사업, 신규고용확대 어선리스사업, 오가닉 모델타운 지원사업, 농촌체험형 숙박시설 및 농가 레스토랑 |

| 분야 | 일자리 사례 |
|---|---|
| 환경·<br>저탄소 | 주택용 태양광발전도입 지원대책사업, 학교 등 태양광 발전이용설비 설치사업, 표류 및 표착 쓰레기 지역대책지원사업, 자연공원 청소사업, 해안환경 개선운동, 저탄소도시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탄소상쇄 추진지원사업, 농지농업용수 등 지역자원 확보사업, 농업촌락배출 오니 리사이클 촉진사업, 농업용 조정저수지 수질보전활동 및 지원사업, 우량어장보호 관련 감시강화사업, 환경생태계 보전활동, 숲 경관재생사업, 전기버스 개발보급, 지역순환네트워크 구축사업, 항만녹지 환경관리사업, 낚시진흥을 통한 지역활성화사업, 리사이클 정보센터 추진사업, 방치어선 대책추진과 관리위탁사업, 바다 환경보전촉진사업, 음식물쓰레기 에탄올화 모델사업, 이산화탄소 저감 단열 리모델링 보급촉진사업, 자연환경 개선사업, 등산로 등 위험장소 점검 및 안전대책사업, 야생동물의 생활환경피해대책, 외래종 방재를 통한 환경개선, 생물다양성 온난화영향 조사사업, 방치된 개 및 고양이 수용사업, 수변환경재생모델사업, 재사용 및 수선추진지원사업, 우량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파괴 우려 폐기물 사전철거사업, 병설처리정화조 전환추진 조사사업, 에코 투어리즘 추진, 쓰레기 투기 감시 및 방치쓰레기 수거사업, 환경인 재배출사업, 이산화탄소방출 감시단 파견사업, 환경보전사업자 투자촉진사업, 소수력 시민발전소 추진사업 |
| 교육·<br>청년지원 | 학교서포터, 청년자립지원 원조사업,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직업교육의 외부인재활용사업, 기업퇴직자 활용 교육지원매칭 추진사업, 지역의 IC태그 활용향상사업, 대학의 지역공헌 및 교육기능 충실위한 업무지원사업, 대학의 지역공헌사업, 체험활동을 통한 지역활성화계획. 대인기피자 사회활동 지원사업, 창업예비군양성사업, 지역 산학연계 직업교육지원 사업, 항구의 역사적 거리를 활용한 생애학습 충실화사업, 자연체험환경학습사업, 차세대 폐기물처리작업원 육성사업, 방과 후 아동 교실 |
| 관광진흥·<br>지역산업 | 매력 있는 관광지개발사업, 지역산업 판로확대 및 경쟁력강화, 지역철도 활성화와 지역자원 활용 사업 창출, 전통공예품의 후계자 육성 등 지원체계 구축, 쇼핑도우미사업, 지역특산품사업 활성화, IC태그를 활용한 농산물 브랜드화, IC카드를 활용한 지역교류촉진사업, 영상배급시스템을 이용한 지역정보발신사업, 웹통신기술을 활용한 예술활동촉진사업, IC카드를 활용한 관광지원사업,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사업, 중소식품소매업자 출장형 판매 촉진, 타 업종 경험을 활용한 어업진입사업, 수산가공유통 및 양식관련 고용창출사업, 산촌지역 신규사업창출, 그린 투어리즘 서포터인재활용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레스토랑운영지원사업, 산업유산을 활용한 과소지역 활성화사업, 인터넷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지원사업, 국제교류추진사업, 세토해(瀨戶內海) 국제학술제 협력사업, 중산간지역 비즈니스창출사업, 상점가 활용을 통한 생활형서비스 충실사업, 지역자원활용을 통한 신상품 안테나샵 개설, 산업관광 활용형 지역 만들기 사업, 철도원육성사업, 항구 활성화사업, 항구크루즈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사업, 항구의 매력을 활용한 관광진흥사업 |

| 분야 | 일자리 사례 |
|---|---|
| 방송·정보통신 | 지상디지털방송대응촉진사업, 정보처리기술 관련 취업지원사업, 학교교무 정보화 통한 고용창출, 제조업 종사노동자및실직자의 정보통신 업종전환지원 |
| 정주외국인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 정주외국인 자녀에 대한 일본어교육 등 지원(문부과학성),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대학생활지원 보조사업, 정주외국인 자녀에 대한 일본어교육 등 지원(문화청), 의교통역자 양성 및 확보사업, 일본계외국인 고용기업의 자녀교육 지원, 일본계외국인 일본어교육지원사업, 일본계외국인 일본어교육 및 직업훈련지원사업 |
| 방범·방화 | 계좌이체사기 방지 위한 주의환기 사업, 방화안전대책 보급개발사업,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범지도사업, 통학로 등 방범활동, 유치소업무 지원사업, 공항 내 화물지구 경비업무, 방재기상정보 활용체제강화추진사업 |
| 문서전자화, 조사 등 행정사무, 정보제공 | 전자행정 기반구축위한 행정문서 전자화, 토지대장 조사 작업, 국민건강보험 징수촉진 및 적용적정화사업, 건강질병대책 보급개발 및 상담사업, 브로드밴드 세미나, 개인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보급개발 지원사업, 지자체의 아웃소싱 관련 고용취업 창출사업, 공문서기록관·도서관·박물관 소장문서 등 전자화, 브로드밴드 보급추진 의식조사, 유적출토품·역사적 자료·민속 문화재 정리 및 공개를 통한 지역문화 진흥사업, 장기이식 및 골수은행 보급개발등록추진사업, 지자체 의약품등 감시관련 업무 임시강화사업, 약물남용방지보급개발사업, 지자체 식품위생관련 업무 임시강화사업, 장애인 시설보급개발사업, 의료사무의 전산화사업, 국영토지개량사업의 행정문서 전자화지원사업, 농촌마을 배수시설개발보급사업, 농업수리시설관리관련 자료의 전자화사업, 해안보전시설의 현황조사사업, 지역정보정비사업, 지반(地盤)정보의 전자화, 지리공간정보의 전자화, 사방관련정보 개발사업, 사방정보전자화사업, 하천환경·방재정보 통지개발사업, 전국중소하천의 생태맵 작성사업 |
| 기타 | 위법광고물 제거 긴급지원, 역주변 공터 등을 활용한 자전거 주차장 정비사업, 공립학교시설의 내진진단 및 보강설계사업 관련 긴급고용사업, 빌딩관리 인재육성 및 정착촉진사업, 안심·안전한 수도서비스 확보사업, 식품위생관리자 자격취득 지원사업, 장애인등 피난지원사업, 농업용 저수지 긴급점검, 농촌마을 배수시설 유지관리 및 감시업무, 농업용 도로 유지관리촉진, 적정계량센터사업, IT컨설팅 활용촉진사업, 공설시험연구기관을 활용한 직업훈련 및 섬유산업관련 기업 소개사업, 외국기업유치촉진사업, 해안보전시설의 현황조사사업, 항만시설의 현황조사사업, 사방관련 유지관리작업, 동경국제공항 통일출입증 도입관련 관리업무, 공항 내 조류피해 방지업무 |

자료: 日本 緊急雇用·經濟對策實施本部의 「雇用對策事業例」(2009. 2)를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참고문헌


고영선 외,「경제위기 10년: 평가와 과제」, 2007. 12.

국회예산정책처,「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쟁점분석」, 2009. 4.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일자리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예산정책보고서 제1호, 2009. 2.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2009년 주요 고용지표 및 사회예산」(리플렛), 2009. 4.

기획재정부,「민생안정을 위한 28.9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보도자료, 2009. 3. 23.

김명중, "최근 일본기업의 고용조정과 정부대책에 대하여",「국제노동브리프」제7권 제2호, 2009. 2.

박진호,「일본 경제위기대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제2009-29호, 2009. 4. 14.

이진우 김성은 김대철 외, "고용유지 및 일자리지원사업",「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9. 4.

정호성 외,「일본 고용대책의 변화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9. 3.

통계청,「2009년 3월 고용동향」, 2009. 4. 15.

日本 緊急雇用·經濟對策實施本部,「雇用對策事業例」, 2009. 2.

日本 首相官邸,「經濟危機對策」, 2009. 4.

日本 厚生勞働省,「ふるさと雇用再生特別交付金及び緊急雇用創出事業について」, 2009. 4.

http://www.kantei.go.jp

http://www.mhlw.go.jp

# 작성자 명단

| 부 문 | 성 명 |
|---|---|
| ■ 총괄 · 조정 | 김호성 예산분석실장<br>박인화 사회예산분석팀장 |
| ■ 원고 작성 | |
| I. 총론 및 시사점 | 박인화 사회예산분석팀장 |
| II. 우리나라의 일자리대책 현황 | 박인화 사회예산분석팀장 |
| III. 일본의 고용대책과<br>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 | 김봉주 예산분석관<br>서세욱 예산분석관<br>조혜정 예산정책분석지원인턴 |
| IV. 일본의 고용대책사업 주요사례 | [번 역]<br>조혜정 예산정책분석지원인턴<br>[감 수]<br>김봉주 예산분석관<br>서세욱 예산분석관 |
| ■ 편 집 | 정선미 사무보조원 |
| ■ 표지 디자인 | 이정민 예산정책분석지원인턴 |

# 일본의 지역 중심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발 간 일 2009년 4월 21일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팀

발 행 인 신 해 룡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2070·3114

인 쇄 처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 (TEL 02·788·3771)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ISBN 978-89-6073-195-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09

NABO
www.nabo.go.kr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대한민국국회
발간등록번호 31-9700213-000590-14